

2016. 12.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미 복 (연구 위 원)

연구참여자 : 황 의 식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 준 기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전 영 현 (연구 원)

요 약

□ 농업부문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요구

-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농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4.4배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신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신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농신보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도출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부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농신보 여건 변화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농업의 전업화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금융환경은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정체기며, 저금리의 기조가 지속되는 추세임. 나아가 농업부문의 기술금융기반 구축과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어 있으며 융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농업인의 유동성 제약이 문제임. 따라서 융자지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신용보증의 일반적인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현재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하면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의 효율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 확대,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농업인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과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검토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를 통해 부분보증비율을 5% 확대하고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증액한 결과,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상권 회수,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부분보증비율을 90:10, 우대보증비율을 95: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액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 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대상자금 확대 필요

-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3차산업부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보증대상자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 필요

-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총액한도 확대가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농가고령화로 새로운 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어, 농고·농대 졸업생 등이 농림어업부문에 후계인력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 변화 시나리오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농신보의 총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증료율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편성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면, 농업경영체의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할 것임.

□ 기술금융 기반구축

-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을 개발하거나 평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가 필요함.

□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 농어가의 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계약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1
- 2. 연구방법 3
- 3. 연구내용 4

제2장 농신보 현황

- 1. 농신보 제도 현황 5
- 2. 농신보 보증 현황 20

제3장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 1. 농신보 여건 변화 33
- 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42

제4장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

- 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61
-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74
- 3. 보증료율 체계 87
- 4. 보증심사 103
- 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120

제5장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1. 개선방향 129
- 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133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45
2. 농업정책금융 수요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표	153
3. 농신보 보증료율 체계 변화	161
4. 신용조사 세부내용	163
5. 해외사례 조사	171
6. 타기관 우대보증 사례	189
참고 문헌	197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6
표 2-2. 기금운용계획 현황	7
표 2-3.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	8
표 2-4. 연도별 기금 결산 현황	8
표 2-5. 우대보증 종류와 내용	13
표 2-6. 특례보증 종류와 내용	15
표 2-7. 부분보증 적용 비율	17
표 2-8. 부분보증 현황	17
표 2-9. 보증료율 체계	19
표 2-10. 전체 농신보 보증 규모	20
표 2-11.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21
표 2-12. 연간 보증대상자별 신규보증금액	22
표 2-13. 연간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22
표 2-14.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23
표 2-15. 자금용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24
표 2-16. 자금 종류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25
표 2-17. 연간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25
표 2-18. 보증기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26
표 2-19. 연간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26
표 2-20.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27
표 2-21.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보증종류구분)	28
표 2-22. 연도별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31
표 2-23.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 금액	31
표 2-24. 구상채권 회수율	32

제3장

표 3-1.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 내역	45
표 3-2.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별 용자 현황	48
표 3-3. 연도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50
표 3-4. 신용보증기관별 운용배수 한도	50
표 3-5. 신용보증기관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추이	50
표 3-6. 타신용보증기관과의 보증거부 현황 비교	51
표 3-7. 2015년도 보증거절 사유	52
표 3-8. 농신보 신용보증 거절(설문)	53
표 3-9. 신규보증 내 보증신청금액보다 심사 후 낮게 결정된 사례	53
표 3-10. 연도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금 추이	54

제4장

표 4-1. 연간 부분보증 운용 현황	61
표 4-2.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63
표 4-3.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64
표 4-4. 정책자금 여부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64
표 4-5. 보증종류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65
표 4-6. 기준보증비율(신보)	66
표 4-7. 부분보증 금액 및 비율	67
표 4-8.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	70
표 4-9.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기금 추가손실액 시뮬레이션	71
표 4-10.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운용배수 변화	72
표 4-11. 부분보증비율 제도개선에 따른 기금건전성 변화	73
표 4-12.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74
표 4-13. 개인과 법인의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75
표 4-14. 보증금액 구간별 산업	76

표 4-15. 보증금액 구간별 자금용도	77
표 4-16. 정책자금 중 우대보증	78
표 4-17. 귀농귀어 우대보증 자금용도	79
표 4-18. 보증료율 체계	87
표 4-19. 보증료율 체계 변화 추이	88
표 4-20. 보증유형별 보증료 부담 현황	89
표 4-21. 보증금액 구간별 보증료 부담 현황	90
표 4-22. 산업별 보증료 부담 현황	90
표 4-23. 용도별 보증료 부담 현황	90
표 4-24. 보증료율 운용체계	91
표 4-25. 보증료율 감면 대상	92
표 4-26. 보증료율 가산 대상	93
표 4-27.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A	95
표 4-28.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B	95
표 4-29.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C	95
표 4-30. 보증료율 체계 변화에 따른 보증료 수입 변화	97
표 4-31. 시나리오별 보증이용자 후생변화	100
표 4-32. 일반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103
표 4-33. 특례·우대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103
표 4-34. 표준평가모형	107
표 4-35. 창업평가모형	107
표 4-36. 표준평가모형	108
표 4-37. 창업평가모형	108
표 4-38. 신용평가 모형 개요	108
표 4-39. 일반 금융기관의 업종별 순수 비재무 항목	111
표 4-40. 농가의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설문)	119

부록

부표 1-1. 권역센터별 응답자 현황	145
부표 1-2. 조사 응답자의 영농경력	148
부표 1-3. 조사 응답자의 영농형태	148
부표 1-4. 권역센터별 조사 응답자 영농형태	149
부표 1-5. 조사 응답자의 부채규모별 영농 특성	152
부표 5-1. 독일 보증제도의 공적 지원방식 및 지원효과	172
부표 5-2. 독일 보증협회의 업종에 따른 업체 수 및 보증잔액	173
부표 5-3. 독일보증협회 산하 총보증기업수 및 총보증액	174
부표 5-4. 지역보증은행별 보증업체 및 잔액분포(2010년말 기준)	175
부표 5-5.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	179
부표 5-6. 신용보증협회의 보증기간	179
부표 5-7. 일본 52개 신용보증협회의 운용실적	180
부표 5-8. 정회원을 위한 농업·생활자금	184
부표 5-9. JA의 준 조합원의 생활 관련 자금	184
부표 5-10. 농업인 등 농업경영자금·생활자금·농외사업자금	185
부표 5-11. 제도 자금	186
부표 5-12. 제도 자금 이외	186
부표 5-13. 농외 사업 자금	186
부표 5-14. 주택 관련 자금	187
부표 5-15. 생활 관련 자금	187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조직도	9
그림 2-2. 신용보증 당사자 관계	10
그림 2-3.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21
그림 2-4. 대손판정 업무 처리절차	29
그림 2-5. 구상권 관리 업무 처리절차	30

제3장

그림 3-1.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34
그림 3-2. 자본수익률 추이	35
그림 3-3.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	36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37
그림 3-5. 전·겸업별 농가수 및 농가소득 변화	38
그림 3-6.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40
그림 3-7. 중앙은행 금리 추이	41
그림 3-8. 국내정책금융 및 농업정책금융 추이	42
그림 3-9. 부채액 및 부채비율 추이	43
그림 3-10. 차입처별 농가부채 추이	44
그림 3-11. 농가유형별 사채비중 추이	45
그림 3-12.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46
그림 3-13. 부분보증비율 만족도(설문)	56

제4장

그림 4-1. 우대보증 연령별 지원 현황	80
------------------------------	----

그림 4-2. 6차산업 전국 인증사업자 현황	82
그림 4-3. 개인모형 구조도	109
그림 4-4. 소호모형 구조도	110
그림 4-5. 법인모형 구조도	110
그림 4-6. 중진공 기업평가 구조도	112
그림 4-7. 기보 기술평가모형 구조도	114
그림 4-8. 기보 기업평가모형 구조도	115
그림 4-9. 신보 CCRS 결합구조	116
그림 4-10. 신보 SBSS 결합구조	117
그림 4-11. 산업분야 기술금융 관련주체	122

제5장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130
그림 5-2. 부분보증비율 개선방안	134
그림 5-3. 부분보증제도 예외한도 개선방안	135
그림 5-4. 창업관련 보증지원 개선방안	140
그림 5-5. 보증료율 개선방안	141
그림 5-6. 매출채권보험구조	144

부록

부그림 1-1. 조사 응답자의 연령	146
부그림 1-2. 응답자의 자산규모	147
부그림 1-3. 조사 응답자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	150
부그림 1-4. 조사 응답자의 부채 규모	151
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177
부그림 5-2. 신용기금의 역할	183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 농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증개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하지만, 농업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의 내적·외적 제한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의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 농업투자는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 역시 길어서 민간투자가 저조한 부문임.
 - 또한 농업부문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수익성이 과소하여 사적 투자 수준이 낮음.
 - 이러한 내·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 자금 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금융수요 측면에서 정체된 것이 사실임.

- 수익성 악화로 농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면서 다시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를 끊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차입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담보력·신용력 부족으로 차입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농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신용평가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농신보는 보수적인 운용배수율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으로 농업법인 비중의 확대, 식품 및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영역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농신보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의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농신보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간 미흡한 점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계산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함.
 -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자료분석
 - 농가경제조사, 정책금융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농신보 내부현황자료를 통해 농신보 제도와 보증 현황 파악
 - 농신보 보증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운용배수 분석, 보증료율 체계 변화 시뮬레이션

- 농신보 보증실적자료
 - 2016년 4월 기준 보증실적자료의 잔액이 아닌 초기 보증정보(나이, 법인격, 종사업무, 자금용도, 보증종류, 보증금액 등)를 활용

- 문헌조사: 국내사례 조사, 해외사례 조사
 - 신보, 기보, 미국, 일본 사례 문헌조사 후 각 쟁점에 사례로 추가

- 설문조사
 - 농업경영체 농신보 이용실태조사

3. 연구내용

1. 농신보 현황

- 1.1. 농신보 제도 현황
 - 농신보 기금 운용 및 조직
 - 보증제도 현황
- 1.2. 농신보 보증 현황
 - 보증규모, 유형별 보증현황, 대위변제

2.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 2.1. 농신보 여건 변화
 - 농업환경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
- 2.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 농업경영체 유동성 제약 완화
 - 농신보 제도의 효율성 제고

3.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

- 3.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 3.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 3.3. 보증료율 체계
- 3.4. 보증심사
- 3.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4.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 4.1. 개선방향
- 4.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제2장

농신보 현황

1. 농신보 제도 현황

1.1. 농신보 기금 운용 및 조직

□ 설립의의 및 기금조성

- 농신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하였음.
 - 농신보는 2015년까지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110조 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의 부채경감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신보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나 주로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 2016년 3월까지 총 10조 2,662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정부는 농신보법에 의거해 현재 약 45.8%를 출연하였음. 정부출연금의 최대는 2009년으로 약 9,095억 원

표 2-1.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2년 이전	13년	14년	15년	16년 3월	누 계	구성비
출연금	정부	54,196	-	△5,000	△1,000	△1,150	47,046	45.8
	금융기관	13,326	2,010	2,129	1,237	298	19,000	18.5
	소계	67,522	2,010	△2,871	237	△852	66,046	64.3
보증료		7,059	371	403	450	118	8,401	8.2
기타		23,394	2,216	1,690	723	192	28,215	27.5
계		97,975	4,597	△778	1,410	△542	102,662	100.0

주: 기타 = 수입이자+수입손해금+영업외손익 등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기금 운용

- 1972년 이후 2015년까지 총 110조 8,619억 원의 농어업자금을 지원
- 1999~2015년에 걸쳐 약 21조 원의 부채대책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부채경감
 - 2015년 말 부채대책잔액은 1조 4,604억 원(총 보증잔액의 13.3%)
-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자체수입은 3,067억 원인데 이 중 수입보증료는 528억 원이고, 대위변제 1,50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1,741억 원, 농특회계 반환 3천억 원을 포함하여 지출은 1조 160억 원

표 2-2.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5년 예산(A)	16년 예산(B)	증 감		
			(B-A)	%	
수입	- 자체수입	3,116	3,067	△49	△1.6
	• 이자수입	415	227	△188	△45.3
	• 금융기관출연금	1,118	1,215	97	8.7
	• 구상채권회수 등	946	1,095	149	15.8
	• 수입보증료	506	528	22	4.3
	• 기타수입	131	2	△129	△98.5
	- 공자기금예탁이자	268	276	8	3.0
	- 여유자금회수	11,750	6,817	△4,933	△42.0
	합 계	15,134	10,160	△4,974	△32.9
	지출	- 사업비	1,854	1,741	△113
• 대위변제		1,625	1,502	△123	△7.6
• 보증료환급		59	54	△5	△8.5
• 구상권관리비		137	123	△14	△10.2
• 위탁사업비		32	32	0	0.0
• 농신보IT유지비		0	30	30	신설
- 기금운영비		543	531	△12	△2.2
• 인건비		434	447	13	3.0
• 기타운영비		109	84	△25	△22.9
- 여유자금운용		6,737	4,888	△1,849	△27.4
- 농특회계반환		1,000	3,000	2,000	200.0
- 공자기금예탁		5,000	0	△5,000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2011년부터 대위변제 감소로 기금운용배수는 안정화 되었으며,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출연금만 받고 있음.
 - 정부출연금은 2014년 5천억 원, 2015년 1천억 원 반환되었음.
 -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출연금이 농협은행·수협중앙회는 0.38% →0.2%, 농·수·산림조합은 0.027%→0.013%로 인하되었음.
 - 비출연 금융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2-3. 연도별 정부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 원)

	72~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정부출연금(A)	54,196	-	-	-	△5,000	△1,000	48,196
금융기관출연금(B)	9,671	1,742	1,913	2,010	2,129	1,237	18,702
대위변제금(C)	65,717	1,797	1,255	1,354	1,303	1,544	72,970
과부족(A+B-C)	△1,850	△55	658	656	△4,174	△1,307	△6,07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농신보 기금의 법정운용배수는 20배임.
- 2015년 말 운용배수는 4.4배임.¹
- 2010년부터 대위변제 감소 등 기금안정화에 따라 2013년 말 운용배수 3.6배로 낮아졌으며, 2014년 제도개선 효과와 금융기관출연금 인하, 정부출연금 반환으로 4.1배로 소폭 상승하였음.

표 2-4. 연도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보증잔액(A)	91,446	85,615	86,895	94,275	101,471	110,122
기본재산(B)	21,157	17,633	22,504	26,132	24,513	25,252
운용배수(A/B)	4.3	4.9	3.9	3.6	4.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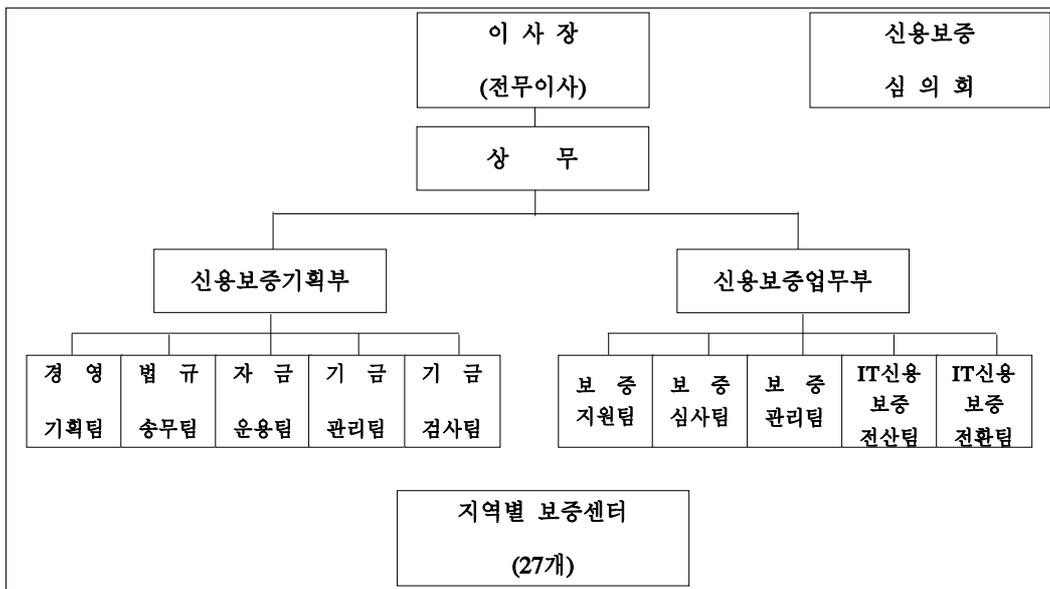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¹ 보증잔액은 11조 122억 원, 자산 2조 5,252억 원 적용

□ 조직

-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중앙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의 권역보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및 신용보증금액 등에 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직원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총원 381명
 -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는 15억 원 이하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이하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본부는 15억 원 초과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초과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구상권 관리업무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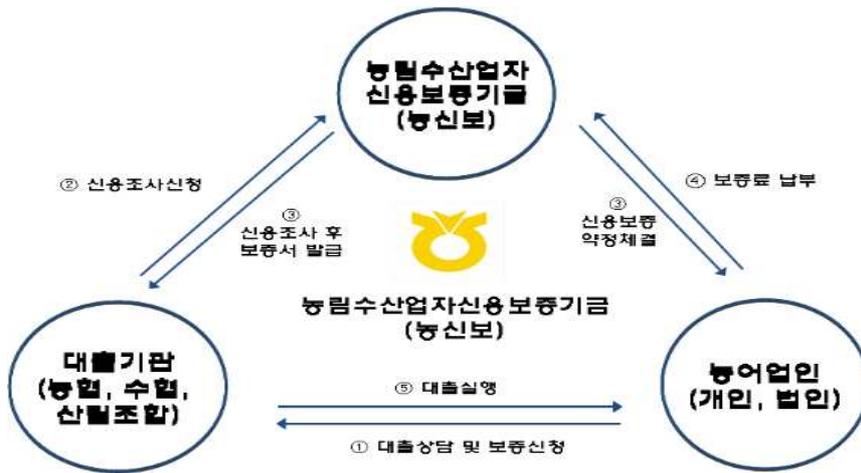
그림 2-1. 조직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는 농업인 등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농신보 관리기관에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농신보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그림 2-2. 신용보증 당사자 관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1.2. 보증제도 현황

□ 신용보증 대상

- 보증대상자는 농신보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
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음.
 -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 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등임.
- 보증대상자금은 농어업용 자금으로 가계, 생활자금은 제외

□ 보증한도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

- 개인 : 10억 원
- 법인 : 15억 원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 및 기술신보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예외보증한도

- 신용보증심의회가 농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신보, 기술신보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예외보증한도를 최고 50억 원을 부여할 수 있음.

예외보증한도 30억 원	예외보증한도 50억 원 부여 대상 (개인 30억 원)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설치·보완의 시설자금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원료매취 자금을 대한 신용보증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 • 농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 •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국적선사 경영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대상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사업」 중 대형선망어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민간RPC) 사업자의 원료곡 매입 정책자금

²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예외보증
 - 예외보증한도를 부여하여 최고 50억 원까지 보증지원
- 우대보증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신용보증
- 특례보증
 -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농어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세월호 침몰사고 신용보증, 농어가부채대책 신용보증

표 2-5. 우대보증 종류와 내용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신용보증	농어업중사다문화가족 신용보증
보증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어업인등 - 농업인후계지(취농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포함, 농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독립가 등) - 선도농어가(농업종합자금 지원 선정 농가, 선도어업영체 육성 선정 어가) - 신지식 농어업인 - 전통식품명인 - 농정등 포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새농어업인 수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p>청·장년귀농(어)창업 신용보증</p> <p>정부의 귀농·귀어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선정된 자 중 만45세 이하의 자</p>	<p>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신용보증</p> <p>농어업계 고졸·대졸자로서 동종업계에 3년 이상 종사한 만35세 이하의 자</p>	<p>농어업중사다문화가족 신용보증</p> <p>외국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농림수산업 종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보증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농어업인 지정중서 또는 확인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단,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가는 당해 농업종합자금에 한함) - 지정분야 및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지정 당시 경영하고 있던 분야에 소요 		<p>신용보증규정 제5조에서 정한 일반자금 및 정책자금</p>	<p>신용보증규정 제5조에서 정한 일반자금 및 정책자금</p>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신용보증	청·장년귀농(여)창업 신용보증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신용보증	농어업중소다문화가족 신용보증
우대 사항	<p>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p> <p>동인당 보증한도 이내에서 기 보증부 대 출금에 불구하고 2억원 이내(위탁보증 1억 원 이내)</p> <p>단, 청·장년 귀농(여)창업 신용보증 및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과 합산하여 최고 2억원 이내</p>	<p>최고 1억원 이내</p> <p>(1억원 초과액은 일반보증 심사기준 적용으로 지원가능)</p> <p>단,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및 농어업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과 합산하여 최고 2억원 이내</p>	<p>최고 1억5천만원 이내 (국가지격증 보유 시 1억5천만원 이내, 미보유시 1억 원 이내)</p> <p>단,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및 청·장년귀농(여)창업 신용보증과 합산하여 최고 2억원 이내</p>	<p>최고 1억원 이내</p>
신용 조사 방법	<p>위탁보증(1억원 이내), 간이신용조사</p>	<p>1억 원까지 간이신용조사·위탁보증 적용</p> <p>기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적용배제</p>	<p>1억5천만원까지 간이신용조사, 1억원까지 위탁보증 적용 (국가지격증 미보유시 1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p> <p>기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적용배제</p>	<p>간이신용조사 → 50백만원 이하 (위탁보증) ※ 5천만원 초과시 직접 보증</p> <p>기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적용</p>
보증 비율	<p>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선도농우대 보증지원 시 부분보증비율 5%⁰우대 (관리기관:90%, 금융기관:10%)</p>	<p>관리기관 90%, 금융기관10%</p>	<p>관리기관90%, 금융기관10%</p>	<p>관리기관95%, 금융기관5%</p>
보증 료율		<p>기준보증료율0.1% 단일요율적용</p>	<p>기준보증료율0.1% 단일요율적용</p>	<p>기준보증료율0.1% 단일요율적용</p>

표 2-6. 특례보증 종류와 내용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농어기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보증대상자	신용보증규정 제4조의 신용보증대상자 중 재해 대책관련법령 및 기축전염병예방법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업체로 선정된 자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에서 정한 자금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원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업 주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보증대상 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업체에 지원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 -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업체에 지원되는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자금	사업지원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금 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자금	사업지원에서 정한 대상 자금
보증 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이내에서 기 보증부 대출 금액 불구하고 3억원 이내 - 1억원까지 위탁보증가능	신용보증규정 제14조에서 정한 보증한도 범위 내 금액 (개인10억원, 법인15억원) ※ 위탁보증 한도 : 5천만 원	최대 2억원(1억원까지는 위탁보증, 1억원 초과 시 직접보증)
우대 사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농어기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신용 조사 방법 요령	간이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간이신용조사 - 보증금액 1억원 이하: 간이신용조사 (관리기관직접보증) -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일반신용조사 - 보증금액 3억원 초과: 정식신용조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적용배제
보증 비용			관리기관85%, 금융기관15%
기타		심사평점 산출 특례 - 사업성평가시 가점 20점 부여 (평가모형에 지동 부여) - 정식신용조사 심사평가등급 산출시 재무·비재무 필더링 평가등급하향 조정항목 중 안정성, 외부 정보, 보증사고 항목은 생략 가능	

□ 부분보증

- 부분보증이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을 말함.
- 농신보는 대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자금에 대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2011.4.27. 일부개정), 기금부실화에 따라 농신보 부분보증비율을 낮추었다가 최근 일부 상향조정하였음. 2003년에 비농업인의 정책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2004년에 농업인의 정책자금 중 직접보증분에 대하여 부분보증제도를 시행
- 부분보증 적용 제외 대상은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과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임.

표 2-7. 부분보증 적용 비율

구 분		보증비율
신규 보증	자연인인 농어업인	85:15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85:15
	그 외의 자	80:20
갱신 보증	기 전액보증의 갱신보증	90:10
	기 부분보증의 갱신보증	당초보증비율

주: 1. 비출연 금융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상기 비율에 5%p를 추가 차등 적용
 2. 우대보증, 부채대책특례보증 등 부분보증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표 2-8 부분보증 현황

(단위: 건, 억 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수	130,006	131,860	136,288	146,434	135,024	133,753
금액	24,532	26,253	30,426	39,173	43,954	50,917
비율	90.6	83.1	85.9	91.0	93.2	94.8

주: 신규승낙 기준 부분보증 현황으로, 여기서 비율은 신규보증공급금액 대비 부분보증금액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위탁보증

- 농신보의 보증은 직접보증과 위탁보증으로 구분되는데, 위탁보증이란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사이에 업무위탁 방법으로 대출기관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임. 즉, 직접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중앙본부와 27개 센터)이 신용조사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위탁보증은 대출기관(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서의 발급기능을 담당함.
 - 2015년 기준 위탁보증 점유비는 51.5%로 감소하는 추세
- 위탁보증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등이 포함됨.
-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위탁보증의 범위
 - 자연인에 대한 다음의 신규보증
 1. 일반보증 : 부채대책 및 경영회생 특례보증 잔액을 합산하여 50백만원 이하
 2.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3. 청·장년 귀농(어) 창업자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4.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 1억 원 이하
 5.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 : 50백만 원 이하
 6. 부채대책 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7. 재해대책 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8. 경영회생 특례보증 : 50백만 원 이하
 9.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 : 1억 원 이하
 -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직접보증으로 취급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우대보증은 합산하여 2억 원 이하로 제한

□ 보증료

- 보증료란 채무자가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보증료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분할 납입 가능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함.
 - 기 보증잔액을 포함한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 방법을 차등 적용
 - 2015년 기준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5억 원 이하 23.6%, 5억 원 초과 6.4%

표 2-9. 보증료율 체계

구 분	보증금액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1억 원 초과	연율 0.4%	연율 0.6%
	5억 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 인	1억 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1억 원 초과	연율 0.7%	연율 1.0%
	5억 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주: 1. 보증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pm 0.2\%p$ 가감

2.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평가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적용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2. 농신보 보증 현황

2.1. 보증규모

- 2015년 보증잔액은 약 11조 122억 원 수준이고, 이 중 갱신보증을 포함한 신규보증금액은 5조 3,731억 원임.
- 농신보의 보증규모는 설립 이후 총 110조 8,619억 원을 지원하였음(2015년말 기준).
- 신규보증금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건수는 줄고 있어 보증규모화를 나타냄.

표 2-10. 전체 농신보 보증규모

(단위: 건, 억 원)

구 분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 규 보 증	순 신 규	건수	50,215	54,575	67,430	54,948	56,379
		금액	14,810	16,608	23,907	26,158	30,118
	갱신보증 (대환, 연장)	건수	112,346	116,915	107,624	104,720	98,504
		금액	16,790	18,796	19,118	21,024	23,613
	계	건수	162,561	171,490	175,054	159,668	154,883
		금액	31,600	35,404	43,025	47,182	53,731
보 증 잔 액	건수	608,889	587,616	575,845	515,161	500,379	
	금액	85,615	86,895	94,275	101,471	110,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농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계획대비 실적이 높았음.
 - 16년 11월 기준 농신보의 보증규모 계획은 5.3조 원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다른 보증기관도 비슷한 추세임.
- 계획대비 실적이 매년 높은 추세로 농업(법)인의 농신보의 적극적 활용을 보여줌.
 - 16년 11월 기준 전체 보증공급금액 계획은 5.3조원, 계획대비 실적은 5.8조 원임.

그림 2-3.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이 중에서 일반보증이 4조 원을 차지하고 우대보증은 1.2조 원, 특례보증은 6,407억 원을 보증지원함.

표 2-11.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계획 및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계획	실적		
		일반	우대	특례
2014년	39,530	29,124	10,624	7,435
2015년	47,500	35,695	12,170	5,866
2016년 11월	52,900	40,566	11,735	6,40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2.2. 유형별 보증현황

- 개인/법인에 따른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보증금액에 있어 개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법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아도 법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6년 11월 기준 개인은 84.4%, 법인은 15.6%를 차지함.

표 2-12. 연간 보증대상자별 신규보증금액

(단위: 억 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신규 보증금액	27,062 (100)	31,600 (100)	35,404 (100)	43,025 (100)	47,182 (100)	53,731 (100)	58,708 (100)
개인	24,917 (92.1)	28,435 (90.9)	31,133 (87.9)	37,431 (87.0)	38,781 (82.2)	43,540 (81.0)	46,122 (78.6)
법인	2,145 (7.9)	3,165 (10.0)	4,271 (12.1)	5,594 (13.0)	8,401 (17.8)	10,191 (19.0)	12,586 (21.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2-13. 연간 보증대상자별 보증잔액

(단위: 억 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보증잔액	91,446 (100)	85,615 (100)	86,895 (100)	94,275 (100)	101,471 (100)	110,122 (100)	121,659 (100)
개인	88,221 (96.5)	81,362 (95.0)	80,985 (93.2)	86,242 (91.5)	90,206 (88.9)	95,549 (86.8)	102,630 (84.4)
법인	3,225 (3.5)	4,253 (5.0)	5,910 (6.8)	8,033 (8.5)	11,264 (11.1)	14,572 (13.2)	19,029 (15.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개인/법인 즉,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를 산업별 분류로 구분하였을 때, 2016년 11월 현재 개인은 농업부문 종사 비중이 64.4%였으나 법인은 농업부문 종사가 12.7%에 불과함.

- 금액으로 보면 농업종사자 비중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규모가 큰 건이 농업 이외, 즉 제조가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표 2-14. 보증대상자의 종사업무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종사업무	2016년 11월	
		건수	금액
개인	농업	305,907 (64.4)	45,172 (44.0)
	임업	14,828 (3.1)	3,450 (3.4)
	수산업	53,340 (11.2)	22,711 (22.1)
	축산업	95,827 (20.2)	27,112 (26.4)
	유통업	288 (0.0)	243 (0.2)
	제조가공업	2,950 (0.6)	3,429 (3.3)
	기계 및 기자재	180 (0.0)	183 (0.1)
	기타	1,528 (0.3)	330 (0.3)
	소 계	474,848 (100)	102,630 (100)
법인	농업	1,048 (12.7)	1,631 (8.6)
	임업	81 (1.0)	129 (0.7)
	수산업	382 (4.6)	551 (2.9)
	축산업	788 (9.5)	1,964 (10.3)
	유통업	1,727 (20.9)	3,900 (20.5)
	제조가공업	3,985 (48.2)	10,289 (54.1)
	기계 및 기자재	159 (1.9)	363 (1.9)
	기타	101 (1.2)	202 (1.0)
	소 계	8,271 (100)	19,029 (100)
합 계	483,119	121,659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보증자금의 용도별로 보면, 개인일 경우 건수 기준으로 농업부문은 약 39%, 법인일 경우 농업부문은 약 33%에 불과함. 자금용도로 보면 부채관련자금이 아직 비중이 높고 유통, 가공업은 법인에서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자금용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자금용도	2016년 11월	
		건수	금액
개인	농업	183,628 (38.7)	37,450 (36.5)
	임업	44,739 (9.4)	21,588 (21.0)
	수산업	61,945 (13.0)	21,394 (20.8)
	축산업	12,673 (2.7)	3,993 (3.9)
	유통/가공업	375 (0.1)	414 (0.4)
	일반재해자금	9,152 (1.9)	1,979 (1.9)
	부채관련자금	153,100 (32.2)	12,543 (12.2)
	피해복구자금	5,839 (1.2)	1,044 (1.0)
	기타	3,397 (0.7)	2,225 (2.2)
	소 계	474,848 (100)	102,630 (100)
법인	농업	2,741 (33.1)	7,419 (39.0)
	임업	705 (8.5)	1,384 (7.3)
	수산업	1,068 (12.9)	2,470 (13.0)
	축산업	123 (1.5)	221 (1.2)
	유통/가공업	1,066 (12.9)	2,506 (13.2)
	일반재해자금	62 (0.7)	52 (0.3)
	부채관련자금	262 (3.2)	199 (1.0)
	피해복구자금	44 (0.5)	25 (0.1)
	기타	2,200 (26.6)	4,753 (25.0)
	소 계	8,271 (100)	19,029 (100)
합 계		483,119	121,659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정책자금 보증은 개인일 경우 금액 기준으로 67.7%이고, 법인일 경우 44.1%임. 즉, 개인은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반면 법인은 일반자금 비중이 높음.

표 2-16. 자금 종류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6년 11월	
		건수	금액
개인	정책	336,295 (99.1)	69,498 (67.7)
	일반	138,553 (40.9)	33,132 (32.3)
	계	339,459 (100)	102,630 (100)
법인	정책	3,164 (38.3)	8,392 (44.1)
	일반	5,107 (61.7)	10,637 (55.9)
	계	8,271 (100)	19,029 (100)
전체	정책	339,459 (70.3)	77,890 (64.0)
	일반	143,660 (29.7)	43,769 (36.0)
	계	483,119 (100)	121,659 (1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농신보 보증기간별로 살펴보면, 잔액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1년 이하는 현재 5%이고, 1~3년 사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44.6%임. 10년 초과인 장기보증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신규로 발생하는 장기보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7. 연간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단위: 조 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2016년 11월
1년 이하	0.4 (4.4)	0.4 (4.7)	0.4 (4.6)	0.5 (5.7)	0.6 (5.0)
1년 초과~3년 이하	2.5 (27.5)	2.4 (27.9)	2.5 (28.7)	2.5 (28.7)	5.4 (44.6)
3년 초과~5년 이하	1.9 (20.9)	1.6 (18.6)	1.7 (19.5)	1.7 (19.5)	1.5 (12.4)
5년 초과~10년 이하	1.3 (14.3)	1.4 (16.3)	1.6 (18.4)	1.6 (18.4)	2.5 (20.7)
10년 초과	3 (33.0)	2.8 (32.6)	2.5 (28.7)	2.5 (28.7)	2.1 (17.3)
계	9.1 (100)	8.6 (100)	8.7 (100)	8.7 (100)	12.1 (1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2-18. 보증기간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2016년 11월	
	건수	금액
1년 이하	9,615 (2.0)	5,599 (4.6)
1년 초과~3년 이하	138,770 (28.7)	53,871 (44.3)
3년 초과~5년 이하	58,572 (12.1)	15,337 (12.6)
5년 초과~10년 이하	112,995 (23.4)	25,420 (20.9)
10년 초과	163,167 (33.8)	21,433 (17.6)
계	483,119 (100.0)	121,659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보증금액별로 살펴보면, 현재 3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이 2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책자금 한도 기준이 포함된 5천만 원~1억 원 구간 비중은 18.5%임.
- 5억 원 초과 보증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1~5억 원 구간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일인 한도를 살펴보고 한도가 부족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19. 연간 보증금액별 보증잔액

(단위: 억 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11월
3천만원 이하	63,012 (68.9)	54,433 (63.6)	51,260 (59.0)	43,766 (46.4)	35,697 (29.3)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4,785 (16.2)	14,696 (17.2)	14,766 (17.0)	19,030 (20.2)	20,827 (17.1)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789 (8.5)	8,004 (9.3)	8,981 (10.3)	14,405 (15.3)	22,547 (18.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4,290 (4.7)	6,494 (7.6)	9,184 (10.6)	13,250 (14.1)	33,204 (27.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31 (0.9)	1,168 (1.4)	1,742 (2.0)	2,536 (2.7)	6,221 (5.1)
10억원 초과	739 (0.8)	821 (1.0)	962 (1.1)	1,288 (1.4)	3,162 (2.7)
계	91,446 (100.0)	85,616 (100.0)	86,895 (100.0)	94,275 (100.0)	121,659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2-20.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보증금액	2016년 11월	
	건수	금액
2천만원 이하	278,153 (57.6)	21,392 (17.6)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45,569 (30.1)	35,132 (28.9)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8,327 (3.8)	8,888 (7.3)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8,818 (3.9)	13,659 (11.2)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808 (4.3)	33,204 (27.3)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703 (0.1)	3,223 (2.6)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76 (0.1)	2,999 (2.5)
10억원 초과	265 (0.1)	3,162 (2.6)
계	483,119 (100)	121,659 (1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2-21. 보증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보증종류구분)

(단위: 건,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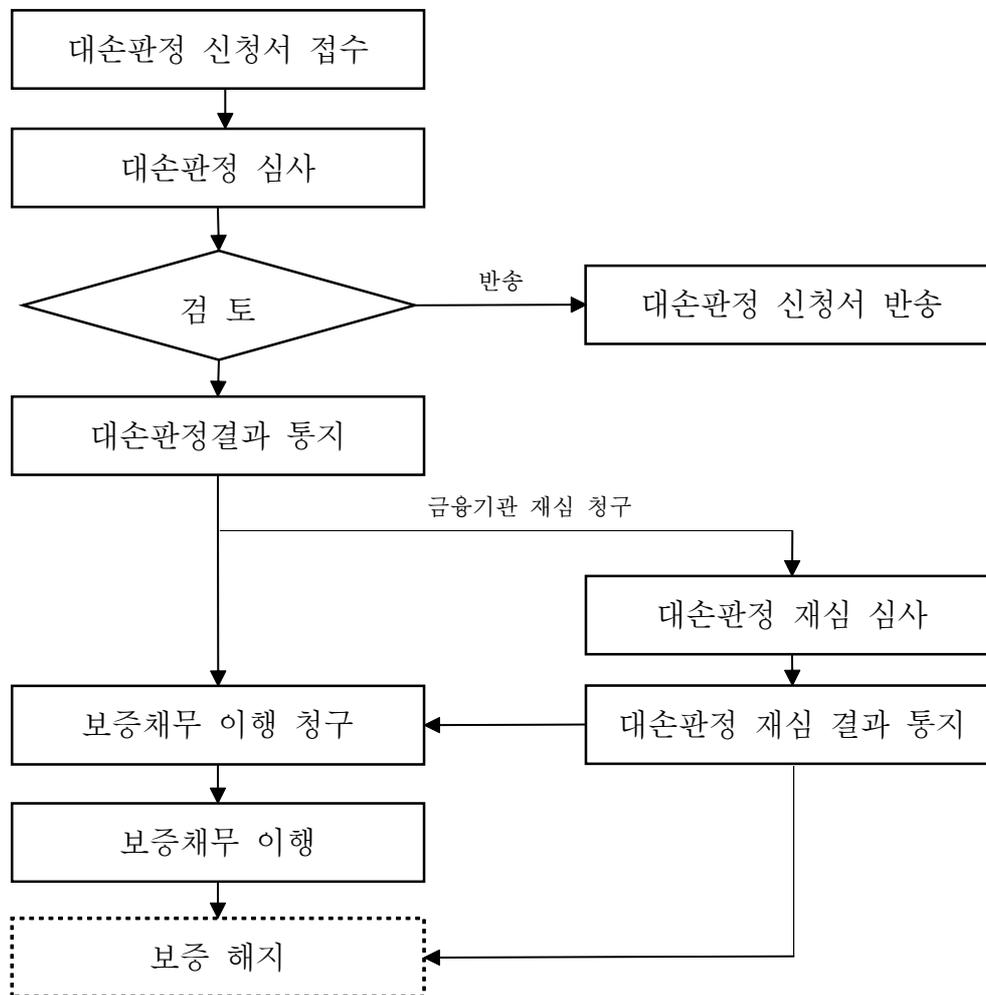
구분	보증금액	2016년 11월	
		건수	금액
일반	2천만원 이하	78,974 (16.3)	7,965 (6.5)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377 (7.5)	10,162 (8.4)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6,478 (1.3)	3,446 (2.8)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367 (1.7)	6,543 (5.4)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6,235 (3.4)	27,952 (23.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693 (0.1)	3,190 (2.6)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75 (0.1)	2,993 (2.5)
	10억원 초과	262 (0.1)	3,137 (2.6)
	소 계	147,861 (30.6)	65,388 (53.7)
특례	2천만원 이하	144,138 (29.8)	8,125 (6.7)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5,504 (9.4)	9,279 (7.6)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5,049 (1.0)	2,156 (1.8)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36 (0.8)	2,511 (2.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212 (0.5)	2,517 (2.1)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10 (0.0)	33 (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 (0.0)	6 (0.0)
	10억원 초과	3 (0.0)	25 (0.0)
	소 계	200,853 (41.6)	24,652 (20.3)
우대	2천만원 이하	55,041 (11.4)	5,302 (4.4)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3,688 (13.2)	15,691 (12.9)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6,800 (1.4)	3,285 (2.7)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515 (1.3)	4,605 (3.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361 (0.5)	2,735 (2.2)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 (0.0)	0 (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 (0.0)	0 (0.0)
	10억원 초과	0 (0.0)	0 (0.0)
	소 계	134,405 (27.8)	31,618 (26.0)
합 계		496,845 (100.0)	121,659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2.3. 대위변제

- 대손판정이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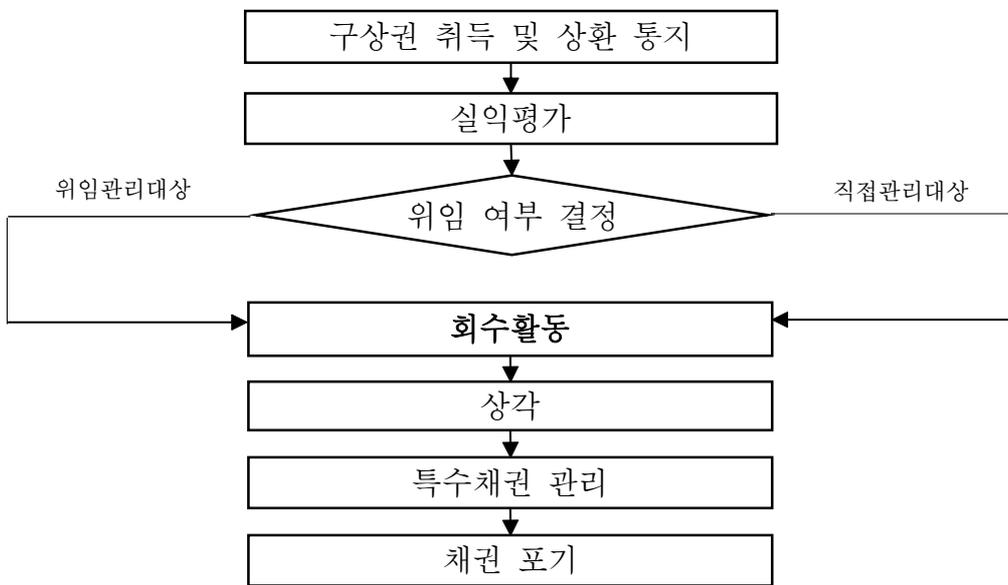
그림 2-4. 대손판정 업무 처리절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

그림 2-5. 구상권 관리 업무 처리절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표 2-22. 연도별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12년 이전	13년	14년	15년	16년	누 계	구성비
일반 보증	29,526	613	712	1,083	1,086	33,020	44.4
우대 보증	5,858	232	181	187	169	6,627	8.9
특례 보증	33,386	509	410	274	218	34,797	46.7
계	68,770	1,354	1,303	1,544	1,473	74,444	100.0
비율	-	1.44	1.28	1.40	1.21	-	-

주: 비율은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 실적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2-23.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 실적(2016)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보증금액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 금액
일 반 보 증	2천만원 이하	691 (45.3)	6,620 (6.1)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08 (20.2)	9,543 (8.8)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65 (4.3)	3,617 (3.3)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16 (7.6)	9,617 (8.9)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07 (20.1)	58,391 (53.8)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25 (1.6)	11,730 (10.8)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0.7)	6,544 (6.0)
	10억원 초과	3 (0.2)	2,530 (2.3)
	소 계	1,525 (100)	108,594 (100)
우 대 보 증	2천만원 이하	239 (40.4)	2,142 (12.7)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52 (42.6)	7,540 (44.6)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46 (7.8)	2,361 (14.0)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 (7.4)	3,480 (2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1.9)	1,391 (8.2)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 (0.0)	0 (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 (0.0)	0 (0.0)
	10억원 초과	0 (0.0)	0 (0.0)
	소 계	592 (100)	16,912 (100)
특 례 보 증	2천만원 이하	1,022 (70.2)	6,384 (29.2)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43 (23.6)	8,704 (39.9)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6 (1.8)	1,232 (5.6)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3 (2.3)	2,009 (9.2)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2 (2.2)	3,509 (16.1)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 (0.0)	0 (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 (0.0)	0 (0.0)
	10억원 초과	0 (0.0)	0 (0.0)
	소 계	1,456 (100)	21,838 (100)
합 계	3,573	147,34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2016년 기준 농신보의 대위변제 실적은 1,473억 원이며, 이 중에서 10.3%가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임. 건수 기준으로는 54.6%임.
 - 일반보증에서 7천만 원~1억 원 구간보다 1억 원~5억 원 구간에서 오히려 대위변제 건수가 높게 나타났음.
 -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일반보증에서는 6.1%, 우대보증에서는 12.7%, 특례보증에서는 29.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보증의 대위변제 실적은 1억 원~5억 원 구간에서 높고, 특례보증일수록 대위변제는 소액인 것으로 나타남.

- 농신보는 대위변제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2015년까지 구상채권의 회수액은 1조 7,461억 원이고, 회수율은 23.9%임.

표 2-24. 구상채권 회수율

(단위: 억 원, %)

구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15년	
구상·특수채권	잔액	55,281	55,501	55,914	56,331	56,970	
	회 수	연 도 중	1,366	1,121	1,016	967	991
		누 계(A)	13,366	14,487	15,503	16,470	17,461
대위변제 누계액(B)		67,515	68,770	70,124	71,427	72,970	
회 수 율(A/B)		19.8	21.1	22.1	23.1	23.9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제 3 장

농신보 여건 변화와 역할

1. 농신보 여건 변화

1.1. 농업환경 변화

□ 농업수익성 악화로 투자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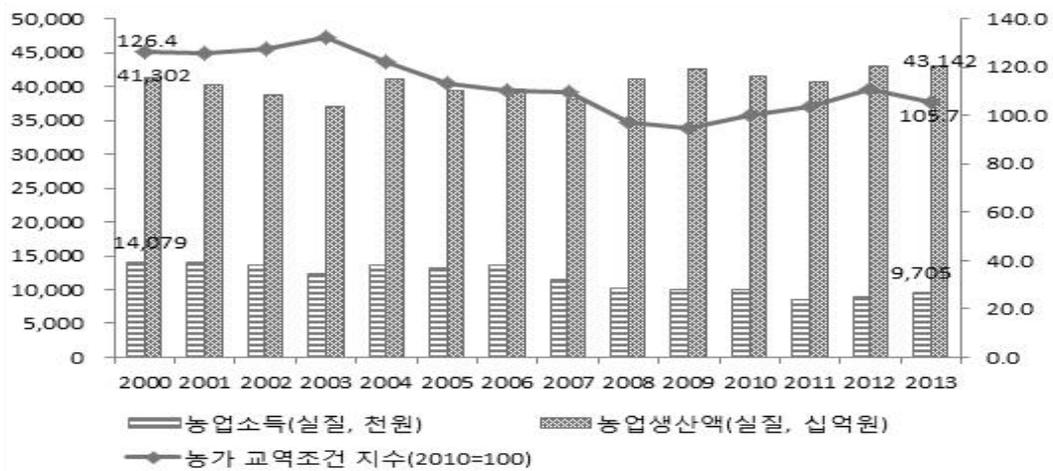
- 시장개방 확대 및 농업투입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투자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실질농업생산액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농가교역조건(2010년=100)은 2000년 126.4에서 2013년 105.7로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농업소득률은 2000년 47.1%에서 2013년에는 25.6%로 하락하였음.
 -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로 인해 호당평균 실질농업소득은 2000년 1,408만원에서 2013년에는 971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져 농업투자에 소극적이게 됨.
 - 농업수익성은 기존 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신규 투자에 특히 영향을 더 많이 미쳐 신규 농업금융수요를 감소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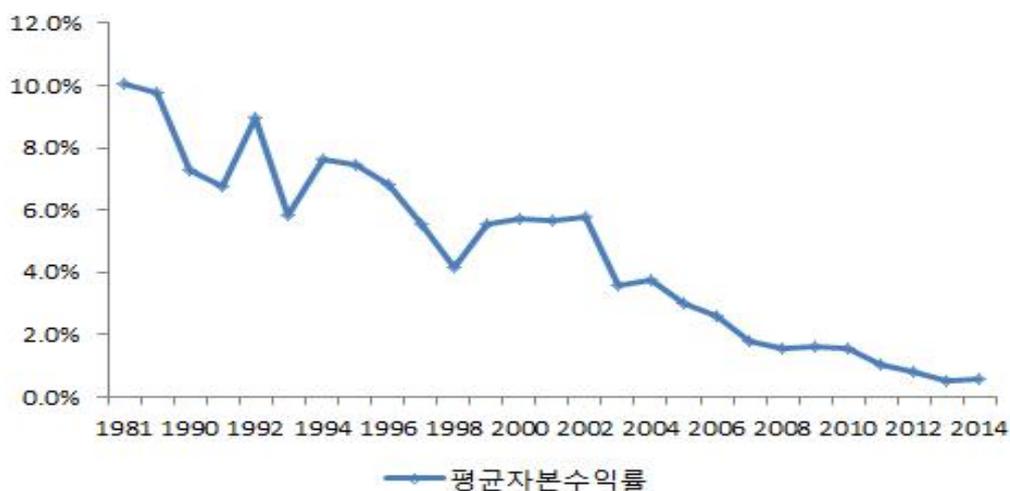
- 최근 쌀 관세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수익성은 더 악화될 전망
 - 시장개방의 확대 → 농업수익성 악화 → 농가의 투자위축 → 농업 GDP 정체 및 하락 → 농업성장의 장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그림 3-1.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3-2. 자본수익률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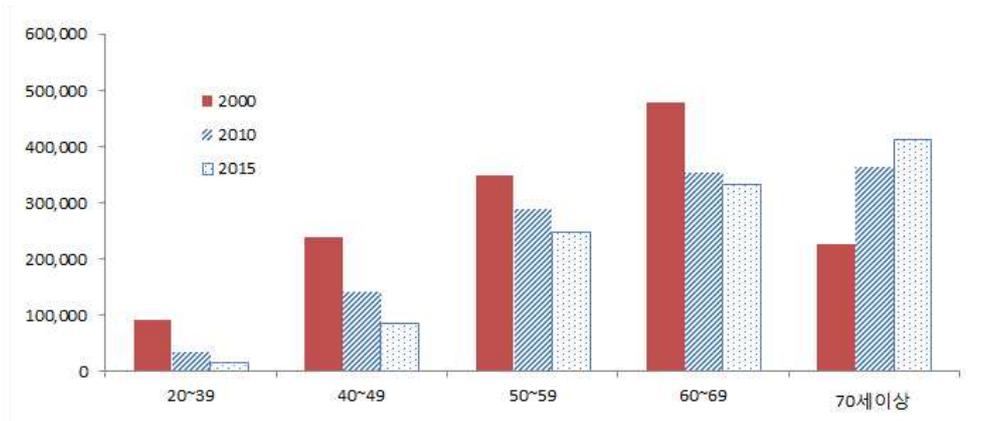
□ 고령화 심화로 생산 위축

- 농업부문의 고령화 심화는 농가의 금융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농업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보면, 영농은퇴 연령인 65세 이상의 농가비율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24.5%, 2010년 30.9%, 2015년 38.4%³로 증가하고 있음.
- 농가 경영주 연령의 최빈치가 70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 비중 증가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들 고령화는 활발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투자, 신규 투자수요가 매우 낮은 그룹임.

3 2015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잠정)

그림 3-3.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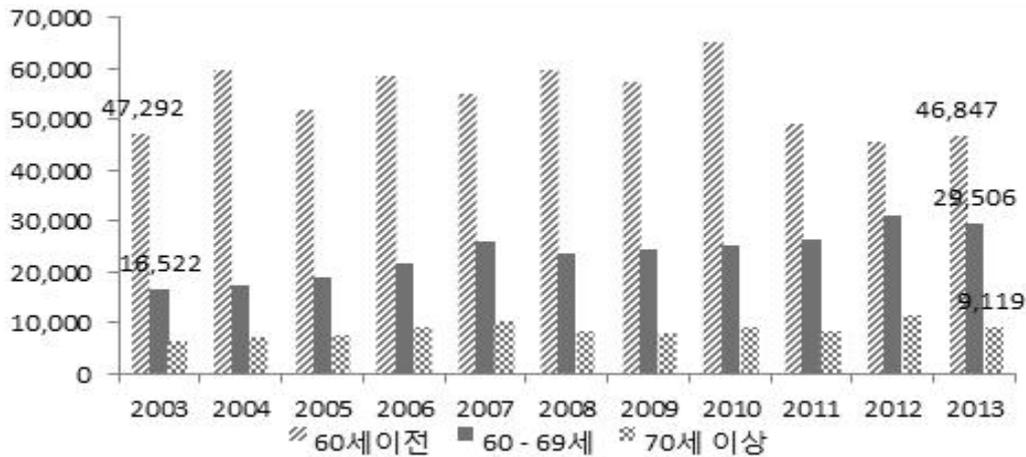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고령화로 농가의 자금차입이 감소하는 등 농업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
 - 실제로 농가의 평균 부채액을 보면, 2003년 2,600만 원 수준에서 2013년 2,70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 70대 이상의 부채액은 2003년 650만 원에서 상승하여 1,000만 원을 넘었다가 2013년 기준 919만 원에 불과함. 2015년 70대 이상 부채액은 60대 이하 부채액의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가계용 부채를 제외하고 실제 농업투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농업용 평균 부채액은 2013년 기준 60대 이상 평균이 660만 원 수준으로 60대 이하의 21% 수준임.
 - 60대 이하에서는 2003년 3,400만 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하락하여 2013년 3,100만 원
 - 70대의 농업용 부채액은 매우 작은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60세 이전 평균의 7.7%에 불과함.
 - 전체 부채액에서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2003년 51%에서 2013년 27%까지 떨어졌음.

그림 3-4.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규모화로 투자규모 확대

-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의 전업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고 농업에서 핵심농가인 그들의 영농기반 확대에 따라 자금 수요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음.
 -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핵심농가는 규모화, 전업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3ha 이상 경종농가 비중은 1995년 4.7%에서 2000년 6.3%, 2005년 7.4%, 2010년 8.2%로 증가함(2015년 기준).
 - 축산전업농의 경우도 젓소 50두 이상 비중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7%로 증가하였고 돼지 1,000두 이상 비중도 25.0%에서 43.8%로 크게 증가하였음(2015년 기준).
-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자산으로 부담하기보다 시장을 활용한 투자가 바람직함. 자부담이 확대될 경우, 적정투자규모보다 적게 투자될 가능성이 있음.
- 규모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2차·3차산업을 포함한 6차산업화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 범위가 확대됨.

□ 겸업화로 농가소득 지지

- 농업소득에 의존적인 전업농은 2000년 65.2%에서 2010년 53.3%로 11.9%p 줄었고,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2종 겸업농의 비중은 18.6%에서 30.3%로 11.7%p 증가
- 전·겸업별 농가의 소득의 크기는 2종 겸업농, 1종 겸업농, 전업농 순이나 10년 사이의 증가율은 전업농 13.0%, 1종 겸업농 32.5%, 2종 겸업농 31.9% 증가로 나타나 겸업화가 평균 농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했음을 보여줌.

그림 3-5. 전·겸업별 농가수 및 농가소득 변화

(단위: %, 천 원)



자료: 김미복·박성재(2014) 재인용.

□ 농림어업 범위 확대

- 식품산업은 가공·외식·식재료·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원료 농산물을 이용(구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국내외로 전파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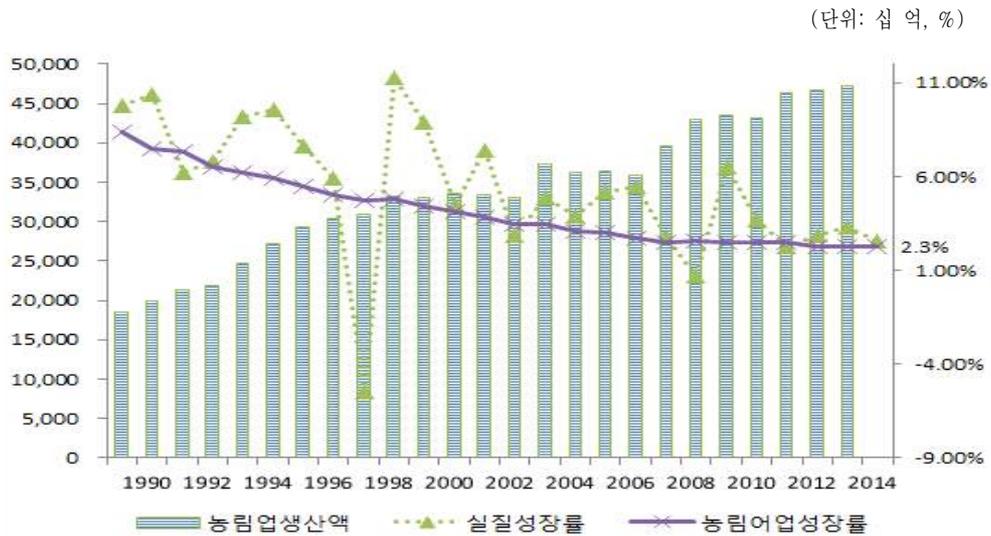
-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수요기반이며,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푸드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주체로서 농업과 상생의 거래관계를 지님.
 -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인 식품제조업, 식품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으로 구성됨.
 - 농산물의 가공촉진은 수급 및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가공원료 수요를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또한 농가의 가공사업 참여는 농촌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공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 원료 농산물 중 수입산 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식품가공산업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국내 농산물의 경우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주요 가공식품의 원료 중에서 국산의 투입비중은 매우 낮음.
 -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사용하는 원료 중 국산 원료의 비중은 31.3%이며,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20% 이하인 품목은 대두, 참기름 등 총 43종임.

1.2. 금융환경 변화

□ 저성장 추세

-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최근 들어 정체기임. 1990년 이래로 평균 5%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음.
 - 현재 농림업 생산은 47조 원으로 전년대비 명목성장률은 2.3%임.

그림 3-6. 생산액과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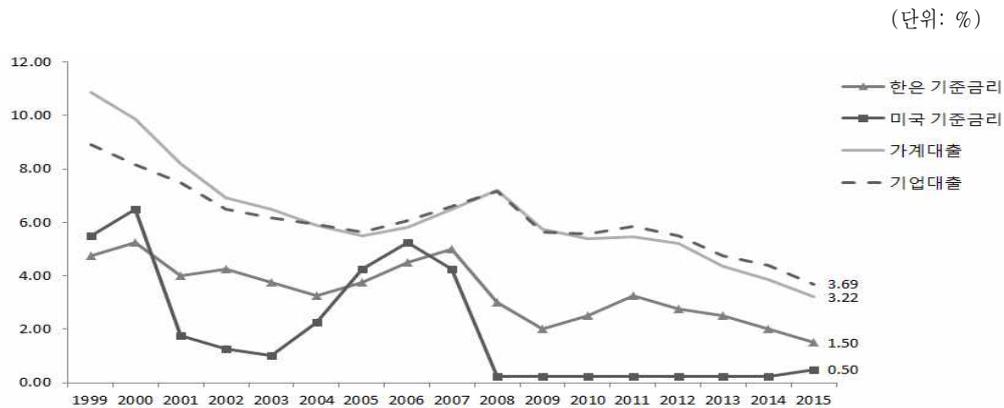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각 연도).

□ 저금리 기조의 지속

- 금융시장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림 3-7>, 한국은행(이하 한은) 기준 금리는 2008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여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6월 기준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1.5%로 내린 상태임.
 - 기준 금리의 하락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는 2013년 4.1%에서 2014년 3.93%로 하락하였고,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 역시 4% 이하로 하락하였음.
-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였음(농식품부 보도자료 2014, 2015).
 - 그럼에도 초저금리 수준으로 인해 여전히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농업정책금융의 확대로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효과가 낮아지게 됨.

그림 3-7. 중앙은행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기술금융기반 구축 요구

- 농업부문에서도 담보력 중심이 아닌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규인력의 창업농 육성 등을 위한 기술금융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용화·사업화 수준이 낮아 R&D 투자 효과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기반농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취농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신보의 사업평가 방식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업경영체들은 일반금융의 담보중심 공급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둔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농업부문 기술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기술평가 신용보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농업부문 신용보증기관인 농신보의 기술보증 역할이 요구되고, 새로운 창업농을 위한 신용보증이 요구됨.

2. 농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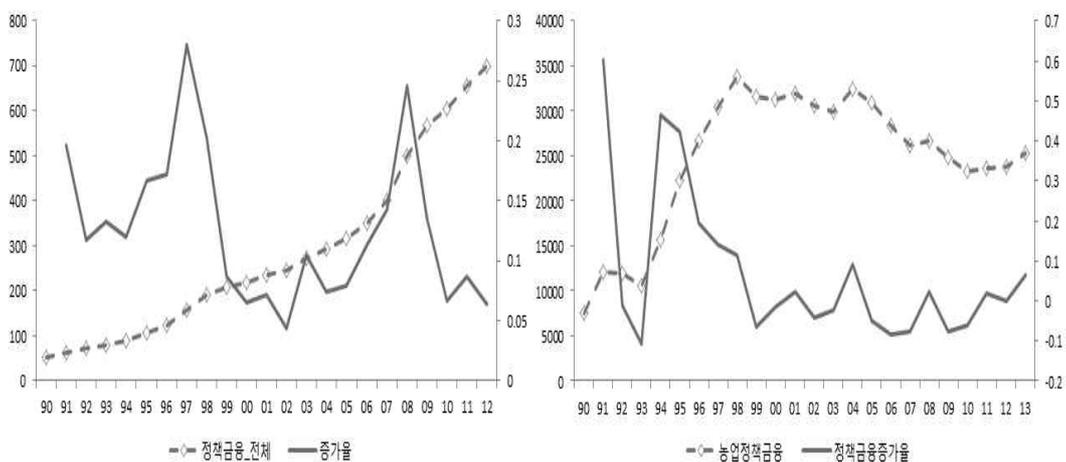
2.1. 농업경영체 유동성 제약 완화

□ 농업부문 투자 정체

- 농업성장을 위해서 농업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업인의 투자는 점차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고, 농업인의 평균 부채액도 정체되어 있음.
 - 지수함수 형태의 추세를 보이는 일반 정책금융 총잔액과 비교할 때 농업 정책금융의 총잔액 추세는 차이가 있음.
 - 실제로 농업인의 정책금융 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정책금융잔액정체와 부채정체는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3-8. 국내정책금융 및 농업정책금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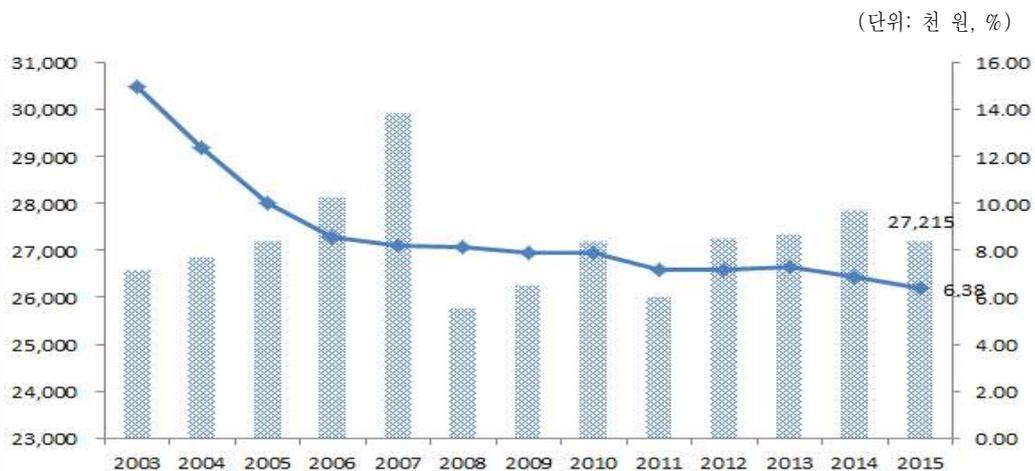
(단위: 조 원(좌), 십억 원(우), %)



자료: 김미복·황의식·임지은(2014) 재인용.

-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부채액은 2004년 2,689만 원을 상회한 이후 2015년 2,721만 원으로 정체되어 있음.
 - 가계부채액은 2015년 4,321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7.1% 증가하였음.

그림 3-9. 부채액 및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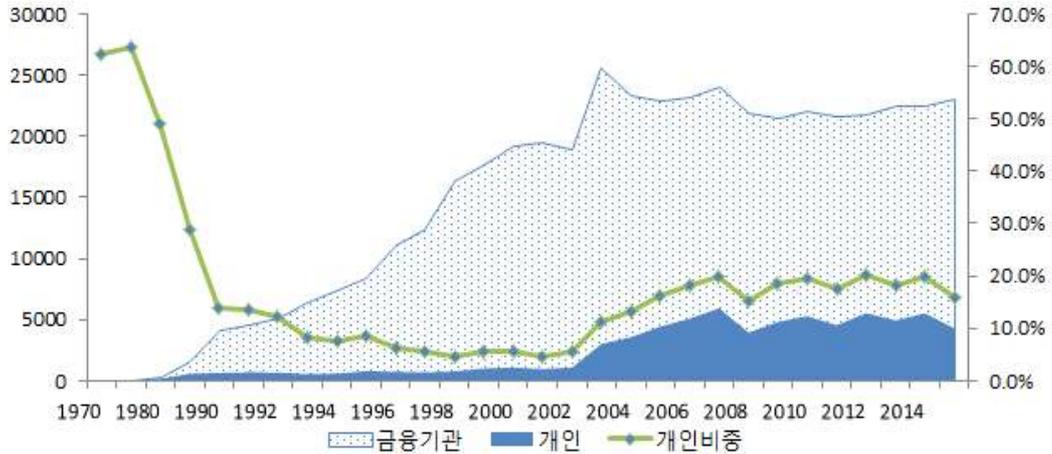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2007년까지 농가의 부채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하락하여 2,500~2,700만 원대에서 정체됨.
 -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함. 2008년 이후 1,300만 원대로 하락하여 현재 1,1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부채의 43%에 불과함.
 - 사채는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8년 감소하였으나, 사채규모는 2013년까지 금융위기 이전규모를 거의 회복하였음. 최근 사채규모 역시 정체됨.
- 농가부채비율은 부채대책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사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전체 부채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에 비하면 사채비율은 2008년 이전 수준에서 크게 박스권을 형성

그림 3-10. 차입처별 농가부채 추이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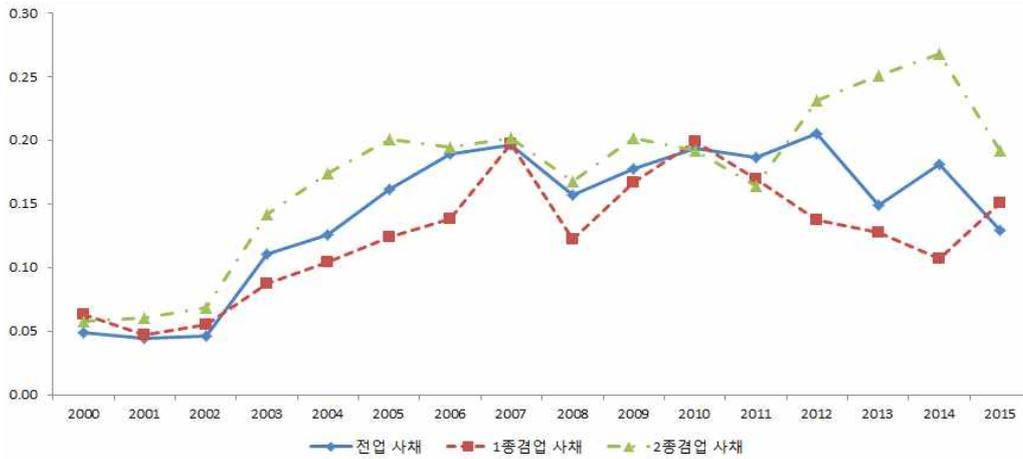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김미복 외(2014)에 의하면 미국과 비교한 결과, 2009년 미국 농가자료에서는 29.6%의 농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09년 우리나라 농가 경제자료에 따르면 약 1.8%의 농가만이 고위험군이고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겸업여부에 따른 유형별 농가의 개인 차입비율 검토 결과, 농업용 부채 비중이 높은 전·겸업농가의 사채 비중은 정채되어 있는데 반해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농업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동시에 귀농귀촌 등 신규 진입 농가인 2종 겸업농가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함.

그림 3-11. 농가유형별 사채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용자사업 저조

○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용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함.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용자방식을 이용해 왔음.

-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용자사업은 20.7%를 차지함.

표 3-1.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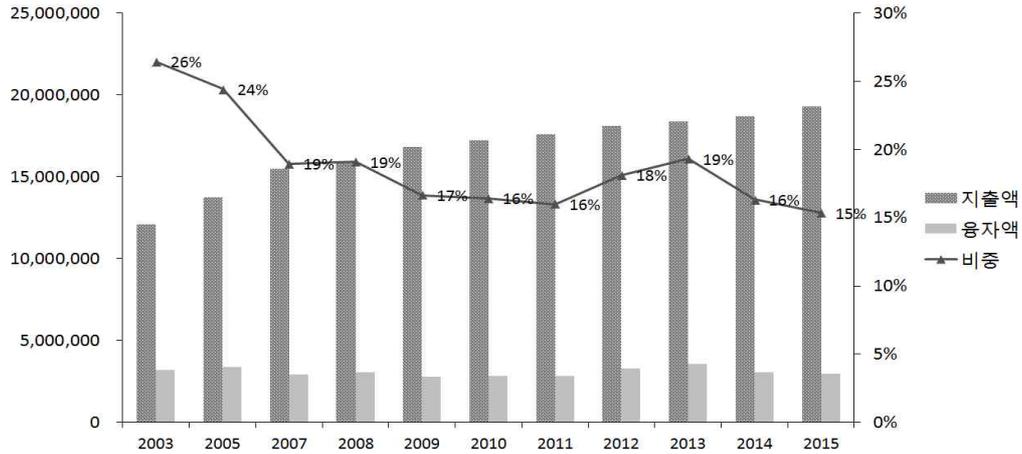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전체 예산	보조금		용자금	출연금	직접 사업 등
		지자체	민간			
예산	14,368,100	4,154,577	2,460,800	2,977,148	211,261	4,564,805
비중	100	46		20.7	1.5	3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2016).

그림 3-12.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용자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 원, %)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각 연도).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농가)들은 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

-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용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용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음.
- 용자방식지원의 사업집행 저조는 농업인이 유동성 제약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용자지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담보력 부족, 보증료 부담, 농신보의 후취담보⁴ 제한 등으로 다수 지역 농가에서 용자지원 이용이 제한되었음.
 -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용자 가능액이 낮아지는 효과
 - “용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함.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용자 담보를 설정해야 함(전남 영광군 V 법인).”
 -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온실시설은 담보설정을 해주고 평가액의 30~50%만 인정을 해주어도 도움이 될 것임.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침단화 되어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음(충북 진천군 I 농가).”

4 대출 대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농신보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상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해지면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임.

표 3-2. 농림수산물 분야 재원별 용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2007 (집행률)	2010 (집행률)	2012 (집행률)	2013 (집행률)	2014 (집행률)	2015 (집행률)
농특 회계	구조개선계정	231,048 (98)	103,892 (98)	127,999 (89)	26,870 (21)	23,187 (21)	16,911 (34)
	농특세계정	0 (0)	5,254 (100)	24,458 (100)	0 (0)	0 (0)	0 (0)
재특회계		0 (0)	0 (0)	0 (0)	0 (0)	0 (0)	0 (0)
에특회계		0 (0)	8,972 (68)	32,462 (100)	29,228 (100)	16,962 (100)	22,790 (97)
농안기금		1,375,620 (99)	1,312,073 (97)	1,466,501 (100)	1,579,481 (85)	1,222,243 (86)	1,162,107 (73)
농지기금		435,285 (100)	547,760 (100)	627,360 (100)	607,542 (93)	589,124 (100)	645,432 (100)
수산기금		490,257 (99)	459,085 (99)	516,988 (99)	511,806 (99)	397,117 (87)	371,606 (81)
FTA기금		47,066 (100)	135,342 (85)	227,629 (78)	290,453 (88)	177,753 (80)	187,217 (96)
축발기금		362,917 (82)	260,108 (89)	267,495 (88)	523,342 (90)	634,130 (85)	556,519 (90)
합계		2,942,193 (97)	2,832,486 (96)	3,290,893 (96)	3,568,722 (87)	3,060,516 (86)	2,962,582 (83)

주: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각 연도).

2.2. 농신보의 보수적 운용

□ 적정운용배수

- 기본자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을 운용배수율이라 하는데, 최대 20배까지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함(조태근, 2010).
 - 첫째,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원용한 것임. 현재 은행권 최소 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8%의 역수인 12.5배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보증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임. 신보의 경우 조정하게 되면 10배 정도이지만, 농신보의 경우 위험가중 보증잔액으로 볼 때 오히려 신보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므로 적정운용배수가 10배보다 커짐.
 - 둘째, 단기지급능력을 고려한 추정된 것임. 당기말 현금성 자산을 당기 현금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 때 적정운용배수는 10~11배임.
 - 셋째, 과거 보증운용 경험치를 고려하는 것임. 농신보의 경우 20~90배 까지 높았던 경험이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음.
-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는 첫 번째 방법을 준용하였을 때 10~12.5배로 볼 수 있음.
- 현재 운용배수율 4.4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용보증의 일반적 적정운용배수율 수준으로 평가되는 8~12배 수준과 비교하면 보수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부채대책의 실시와 농가부실화가 많이 발생하던 시기에는 운용배수율이 한도인 20배에 이르고 있었음.

- 신규보증을 축소하면서 점차 보증잔액이 감소하고 출연금 등으로 기본 자산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율이 크게 하락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는 4.4배 수준에 불과함.

표 3-3. 연도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단위: 억 원, 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본재산	6,463	8,182	15,971	21,157	17,633	22,504	26,132	24,513	25,252
운용배수	20	14.6	6.6	4.3	4.9	3.9	3.6	4.1	4.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3-4. 신용보증기관별 운용배수 한도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택신보	산업기반신보
법정 운용배수 한도	20배	20배	15배	20배	40배	20배

자료: 각 기금별 법령 정리.

표 3-5. 신용보증기관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추이

(단위: 억 원, 배)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보	기본재산	24,155	48,951	53,669	48,239	48,944	57,017	54,380
	운용배수	11.8	8.0	7.2	8.1	8.0	8.5	9.0
기보	기본재산	14,462	26,954	28,198	25,437	23,784	22,580	22,951
	운용배수	7.8	6.4	6.1	7.1	8.3	8.9	9.0
지역 신보	기본재산	14,816	20,956	24,624	26,925	27,216	30,375	32,219
	운용배수	3.1	5.3	5.5	5.0	5.0	4.8	5.0
주택 신보	기본재산	6,170	16,669	27,508	32,076	38,031	44,906	51,028
	운용배수	11.0	9.0	10.2	12.0	10.6	9.7	10.6
산업 신보	기본재산	3,044	4,294	5,271	5,683	6,025	6,462	6,884
	운용배수	12.84	11.25	12.86	13.52	14.08	12.61	12.04

자료: 1. 김태규(2013) 재인용.

2. 신용보증기관별 연차보고서(2014)(2015).

□ 보증거부

- 농신보의 보증거부율은 직접보증 거절건수 기준으로 2015년 2,419건으로 전체의 1.6%임.
- 신보 10,963억 원(2.8%)/3,910건, 기보 656억 원/166건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위탁보증 이외 직접보증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보증거부가 일어난 건수를 고려할 때 보증심사방법 및 기간 등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위탁보증 거절건수를 포함할 경우 2015년 14,768건으로 9.5%임.
-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증신청인 요청과 보증서 발급 전후 대출취소의 경우 단순변심 혹은 사업계획 변경일 가능성이 있음.

표 3-6. 타신용보증기관과의 보증거부 현황 비교

(단위: 억 원, 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신보	금액	1,161	1,693	2,328	1,192	1,285	1,310
	건수	14,597	26,897	31,241	13,362	13,101	13,841
신보	금액	10,267	19,644	21,520	16,176	11,148	10,963
	건수	2,921	9,719	7,064	5,022	4,481	3,910
기보	금액	2,729	2,285	1,693	522	376	656
	건수	685	601	349	179	124	166
지역신보	금액	3,046	3,772	6,344	4,074	4,790	5,015
	건수	10,334	18,065	33,116	20,273	14,402	15,884
주택신보	금액	6,336	7,224	8,758	9,282	17,541	18,085
	건수	35,728	32,828	34,860	29,897	49,438	46,510

자료: 김태규(2013) 재인용.

○ 2015년 기준 보증거절은 직접보증에서 16%, 위탁보증에서 84%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보증거절 사유로 대출 및 보증기관의 책임을 판정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보증거절 사유의 명확한 기술이 필요함.

- 직접보증에서 보증거절 사유가 금융기관 요청인 것은 약 40%를 상회하는데, 보증서 발급 후 대출취소, 금융기관 요청으로 거절 된 경우는 상호 금융의 보수적 운용이 문제일 수 있음.

표 3-7. 2015년도 보증거절 사유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계
금융기관 요청	1,005		1,005
대상자 위배	252	16	268
대상자금 위배	21		21
평점미달	214	43	257
보증신청인 요청		5,503	5,503
금융기관 대출취소(보증서 발급 후)		3,973	3,973
금융기관 대출취소(보증서 발급 전)		1,442	1,442
그 외	341	36	
기타(사유 입력분)	586	897	1,483
기타(사유 미입력분)		816	816
계	2,419	12,726	14,76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불명확한 거절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였음. 설문조사 결과(571응답), 농신보 보증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현재 농신보 이용자는 22.4%임.

-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무응답이 77%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부채 과다, 낮은 신용등급이 응답자 중에서는 높게 나타남.

○ 농신보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임.

표 3-8. 농신보 신용보증 거절(설문)

농신보 신용보증 거절			농신보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거절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없다	399	69.9	있다	74	13.0
있다	128	22.4	없다	490	85.8
무응답	44	7.7	무응답	7	1.2
합계	571	100	합계	571	1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자 설문조사.

- 또한 농신보 내부현황자료에 따르면<표 3-9>, 보증신청금액보다 심사 후 낮게 결정된 사례는 97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신청금액만큼 보증액이 결정된다는 의미는 가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보수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
- 가심사 과정에서 자발적 회수 건수가 많고 실제 보증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보수적으로 금액이 설정되어 100% 신청금액에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임.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25%가 심사 후 보증금액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답함.

표 3-9. 신규보증 내 보증신청금액보다 심사 후 낮게 결정된 사례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5년	
		건수 (%)	보증금액 (%)
신청 금액 보다 낮게 결정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50% 미만	131 (13.5)	85 (7.9)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50~74%	376 (38.7)	373 (34.7)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75~89%	256 (26.4)	332 (30.9)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90~99%	208 (21.4)	285 (26.6)
	낮게 결정된 사례 소계 (A)	971 (100)	1,075 (100)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100% (B)		153,912	52,657
합 계 (A+B)		154,883	53,7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기본재산 증가로 정부출연금 반환

- 대위변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농신보 기본재산이 크게 증가하여 정부출연을 중단하였으나 기금운용배수가 2012년 3.9배로 매우 낮게 유지되었음.
- 2014년부터 여유 재원을 정부회계로 환입하는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래 기금목적 달성이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기금운용배수가 5배를 넘지 못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구조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위변제율이 타 보증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보증채권의 위험도가 낮을 수 있음.
 - 보증료율을 인하하거나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농업투자활성화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표 3-10. 연도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금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72~'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출연금	52,996	1,200	0	0	0	-5,000	-1,000
금융기관출연금	7,961	1,710	1,742	1,913	2,010	2,199	1,237
대위변제금	62,477	3,240	1,797	1,255	1,354	1,303	1,544
과부족	-1,529	-330	-55	658	656	-4,174	-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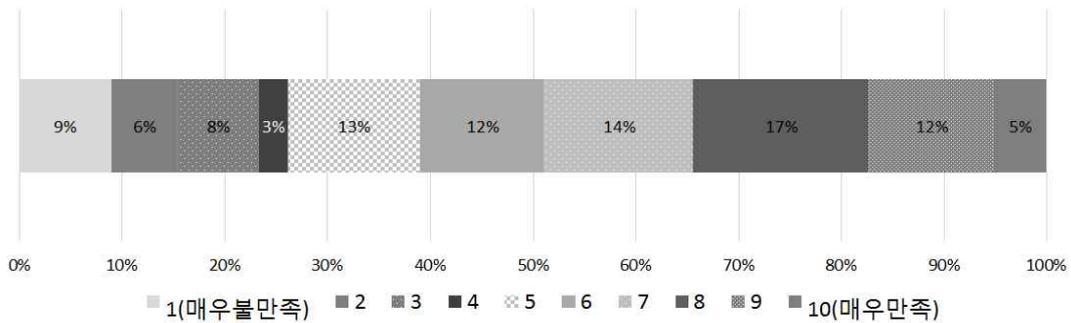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2.3. 농업인의 금융지원 접근성 확대

□ 보증제도 개선과 보완제도 견비

- 현재 농업인 기준 85%인 부분보증비율을 다소나마 확대하여 경색되어 있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함.
- 농업부문은 농지 이외에 담보 능력이 낮고, 중소농가의 경우 재무제표 등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자산평가 시에도 투자 금액에 비해 저평가되기 때문에 15% 부분보증이 농업경영체에 부담이 되기도 함.
 - 실제로 농가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어 있는데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부분보증 비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부분보증비율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 등 보증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소액보증 구간에서 부분보증 만족도가 낮아졌음. 전액보증을 제외하면 매우불만족 경향인 1~3구간 비중이 24%, 보통 구간 41%, 만족 경향 8~10구간 비중은 34%였음. 특히 1~3억 원 구간의 불만족 비중이 높았는데, 우대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3. 부분보증비율 만족도(설문)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자 설문조사.

○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 현재 개인 10억, 법인 15억 원의 총액한도를 다른 정책사업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총액한도 설정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경우 법인 지원 상한액이 50억 원인 것을 감안하여 예외보증을 두고 있음.
- 6차산업화 등의 확대로 보증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면 동일인 총액한도는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신보·기보의 경우 일반한도 30억 원이고, 이후 예외를 두어 70~100억 원까지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보증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예외·우대·특례보증 실효성 제고

- 법인 30억 원으로 총액한도를 올릴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증, 기술혁신중소기업보증,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에 대한 보증, 모태펀드 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등이 일반보증으로 흡수
- 우대보증제도에서 한도는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은 2억 원, 귀농(어) 창업 신용보증은 1억 원, 전문교육 이수자는 1억 5천만 원, 다문화가족 보증 1억 원임. 우대보증한도를 높여 실효성 제고 필요

- 총액한도와 연계하여 예외보증을 한도가 아니라 보증료율 우대로 하여 수요확대 필요
- 보증잔액이 10억 원 초과 건수는 전체 50만 건에서 187건에 불과함. 주로 대상이 되는 경영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증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일인 총액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 보증료율, 심사방법 등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포괄적 양도·양수>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청년사업자지원자금(후계농업인지원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영체가 법인 연장할 경우, 농신보 보증연장, 신규보증에 있어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농업인 지위와 법인 지위일 때 차이가 있어 정책자금 자격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격이 유지되는 사업조차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과다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림.
- (가평 농협 농업인 A): 신규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등이 새로 필요하고, 시설자금 등기 등이 모두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음.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보증한도는 확대되는 편익이 있지만, 보증기간을 새로 심사해야 하고, 이 때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보증한도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
- (포천 산란계 농업인 B): 현재 산란계 산업은 이미 장치산업화 되었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증가함. 적정규모를 10만 수라고 보았을 때 25억 원/년 수준이므로 회사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받았지만, 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 농업인의 보증이용 시 부담 완화

-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농림어업 농업인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0.3%로 저금리 기조에서 추가 이자부담으로 보아도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과거에 전체 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보증료 비율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적정수준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실제로 농신보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신심사와 비교하여 2~3가지 정도가 더 요구된다고 하지만, 농신보 이용 농업인의 경우 과도한 서류 요구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AgriX를 활용하는 등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보증심사기간, 보증심사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전문농가의 법인화가 많이 이루어졌음. 또한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 정책도 꾸준히 수행되어서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1차생산 이외에 투자도 필요하게 되었음.
- 즉, 농업경영체에 대한 신용보증 역시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7월 이후 농어촌 지역의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되는 등 농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5.7>

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5.7.7.)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6, 시행 7.7)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였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

- 보증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증상품 수요 대응
 - 농신보도 농업 및 식품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농업부문의 상거래채무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신용보증상품 개발이 검토될 수 있음.
 -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평가보증 및 보증연계 투자 등 농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기반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험제도 운용
 -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에 의거 신용보험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1997년 9월 부도난 어음을 보상하는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
 - 어음보험은 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어음만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매출채권보험은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상거래 위험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어음보험을 포괄하는 개념임.
- 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신용보완, 상거래 촉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짐.
 -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서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
 - 기업 간 거래에서의 신용위험을 완화하여 신용상태가 불투명한 기업 또는 신규 업체와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합리적인 손실분담 체계 구축으로 보험계약자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011년까지 총 4,338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2011년에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7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527억 원을 출연
 -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재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나 운용배수는 빠르게 높아졌음.
 - 기본재산은 1,000억 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운용배수는 2007년 6.7배이었으나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11년에는 12.2배로 운용되었음.

제 4 장

농신보 보증제도 과제별 분석

1. 부분보증비율 확대 검토

1.1. 현황

표 4-1. 연간 부분보증 운용 현황

(단위: 건, 억 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농신보	건수	130,006	131,860	136,288	133,753
	금액	24,532	26,253	30,426	50,917
	비율	90.6	83.1	85.9	94.8
신보	건수	214,091	213,440	210,371	226,739
	금액	290,933	296,246	297,441	353,360
	비율	80.6	83.4	84.3	90.5
기보	건수	56,103	63,210	69,612	85,227
	금액	133,830	137,375	149,343	176,873
	비율	79.0	82.6	83.6	84.8

주: 신규승낙 기준 부분보증 운용 현황으로, 비율은 신규보증공급금액 대비 부분보증금액임. 신보는 일반보증 기준, 대출 보증, 제2금융보증, 지급보증의 보증기준(어음보증 등은 100%전액 보증이므로, 공급금액 및 규모에서 제외)

자료: 1. 김태규(2013) 재인용.

2. 금융위원회 내부자료.

- 농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신규보증 기준으로 85:15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이상 비중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현재 90% 부분보증인 경우는 신규보증 중에서는 우대보증(부분보증비율 우대)인 경우와 기존 전액보증을 통한 갱신인 경우임.
- 부분보증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보증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부채대책 특례보증을 처음 도입되었음 (2000.3).
 - 부분보증제도가 점차 확대되었음. 전액보증이었던 것을 갱신할 때는 90% 보증비율을 적용하였고, 신규보증을 90% 부분보증 도입 후 점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입 초기 목표가 부실 방지인 만큼 이를 위해 제도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였음.
 - 부채대책을 펴면서 보증대상자별 부분보증비율이 확대되었다가 2011년 농업부문의 법인화·다양화로 인해 부분보증비율이 조정되었지만, 이 때 자연인 농어업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재 85%를 유지함.
- 이와 마찬가지로 전액보증 역시 부분보증 도입 초기 3천만 원 이하 전액보증에서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12년 2천만 원으로 다시 확대되었음. 현재 운용배수가 매우 낮고 정책자금 수요규모가 확대된 점, 대위변제율이 2천만 원 이하에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분보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4-2.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단위: 건, 억 원, %)

구간	대위변제		보증잔액		대위변제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천만원이하	1,952	151	275,262	21,166	0.7%	0.7%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903	258	145,011	35,000	0.6%	0.7%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37	72	18,361	8,902	0.7%	0.8%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93	151	18,979	13,780	1.0%	1.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50	633	21,056	33,556	1.7%	1.9%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25	117	711	3,302	3.5%	3.6%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65	477	2,993	2.1%	2.2%
10억원 초과	3	25	266	3,106	1.1%	0.8%
합 계	3,573	1,473	480,123	121,804	0.7%	1.2%

주: 2016년 12월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신규보증에서 우대보증을 이용한 농업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는 적은 반면 일반자금의 90% 부분보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4>.
- 신보·기보와 부분보증비율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보·기보에 비해 건당 보증금액이 낮고, 또한 최근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5~10%p 상향이 필요함.
- 이에 기금건전성을 점검하고, 조정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3.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부분보증비율	2016년 12월	
	건수	보증잔액
70%	80 (0.0)	161 (0.1)
75%	10 (0.0)	19 (0.0)
80%	5,721 (1.2)	11,798 (9.7)
85%	203,096 (42.3)	70,939 (58.2)
90%	119,142 (24.8)	22,794 (18.7)
95%	499 (0.1)	152 (0.1)
계	328,548 (68.4)	105,863 (86.9)

주: 비율은 전체보증건수(금액) 대비 부분보증건수(금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4-4. 정책자금 여부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구분	부분보증비율	2016년 12월	
		건수	보증잔액
정책자금	70%	21 (0.0)	63 (0.1)
	75%	10 (0.0)	19 (0.0)
	80%	1,789 (0.5)	5,314 (6.8)
	85%	142,459 (42.3)	42,563 (54.8)
	90%	67,240 (20.0)	16,821 (21.6)
	95%	412 (0.1)	127 (0.2)
	계	211,931 (63.0)	64,907 (83.5)
일반자금	70%	59 (0.0)	98 (0.2)
	75%	0 (0.0)	0 (0.0)
	80%	3,932 (2.7)	6,484 (14.7)
	85%	60,637 (42.2)	28,375 (64.4)
	90%	51,902 (36.1)	5,973 (13.6)
	95%	87 (0.1)	25 (0.1)
	계	116,617 (81.2)	40,957 (92.9)

주: 비율은 각각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내에서 전체보증건수(금액) 대비 부분보증건수(금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4-5. 보증종류별 부분보증 건수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 원, %)

구분	부분보증비율	2016년 12월	
		건수	보증잔액
일반	70%	79 (0.1)	158 (0.2)
	75%	10 (0.0)	19 (0.0)
	80%	5,445 (3.7)	11,731 (17.8)
	85%	84,296 (57.0)	43,614 (66.2)
	90%	35,265 (23.8)	8,058 (12.2)
	95%	5 (0.0)	9 (0.0)
	계	125,100 (84.5)	63,587 (96.5)
특례	70%	1 (0.0)	4 (0.0)
	75%	0 (0.0)	0 (0.0)
	80%	270 (0.1)	64 (0.3)
	85%	28,323 (14.3)	8,516 (35.1)
	90%	51,600 (26.0)	3,026 (12.5)
	95%	365 (0.2)	101 (0.4)
	계	80,559 (40.6)	11,711 (48.6)
우대	70%	0 (0.0)	0 (0.0)
	75%	0 (0.0)	0 (0.0)
	80%	6 (0.0)	4 (0.0)
	85%	90,477 (67.6)	18,809 (59.4)
	90%	32,277 (24.1)	11,710 (37.0)
	95%	129 (0.1)	42 (0.1)
	계	122,889 (91.8)	30,565 (96.5)

주: 비율은 각각 일반, 특례, 우대보증 내에서 전체보증건수(금액) 대비 부분보증건수(금액)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1.2. 타 기관 사례

□ 신보·기보

-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85% 범위 내에서 차등화
- 당초 여신의 경우 85%(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은 80%)까지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15%는 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6월 보증비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

표 4-6. 기준보증비율(신보)

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 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K1등급	70%(50%)	65%(50%)
K2	75%	70%
K3~K5	80%	75%
K6~K15	85%	80%

주: K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50%를, 그 외의 기업은 70%(65%)의 보증비율 적용

-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를 적용하였음(2016년 6월 30일 종료).
- 기보는 보증비율 85%를 적용하지만, 예외를 두고 운용하고 있음.
 - 핵심분야보증과 수출관련자금은 90%
 - 희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할 수 있고,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도 가능함.

표 4-7. 부분보증 금액 및 비율

(단위: 건, 억 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농신보	건수	130,006	131,860	136,288	133,753
	금액	24,532	26,253	30,426	50,917
	비율	90.6	83.1	85.9	94.8
신보	건수	214,091	213,440	210,371	226,739
	금액	290,933	296,246	297,441	353,360
	비율	80.6	83.4	84.3	90.5
기보	건수	56,103	63,210	69,612	85,227
	금액	133,830	137,375	149,343	176,873
	비율	79.0	82.6	83.6	84.8

주: 신규승낙 기준 부분보증 운용 현황으로, 비율은 신규보증공급금액 대비 부분보증금액임. 신보는 일반보증 기준, 대출 보증, 제2금융보증, 지급보증의 보증기준(어음보증 등은 100% 전액 보증이므로, 공급금액 및 규모에서 제외)
 자료: 1. 김태규(2013) 재인용.
 2. 금융위원회 내부현황자료.

□ 외국 보증기관의 부분보증

- (독일)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함.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이 부담함.
 -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
 - * 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 책임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
 - * 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 (일본)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하여,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의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을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농업신용보증기관은 농림신용기금협회와 농림어업신용기금임. 농업인 등 농업경영자금, 생활자금, 농외 사업자금을 포함한 자금을 대상으로 보증대출이 가능함. 가능한 자금, 보증료 등은 협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농업인이 도도부현 단위 47개 협회에서 보증대출을 받고 협회는 기금에 보증보험을, 사단법인 전국농협보증센터에 재보증을 하는 구조임.
 - 도도부현 단위 47개 협회에서 차입자의 채무보증을 100% 하더라도 보증기금의 보증보험(70%)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회는 30%의 채무부담을 짐. 일반 대출기관의 부분보증비율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금융기관 부담이 존재
 -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음.

- (미국) FSA(Farm Service Agency)는 일반은행 등 상업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가족농에게 농지구입자금과 운영자금을 직접대출을 하기 때문에 최후 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일반은행과 FCS(Farm Credit System)가 시행한 대출의 원리금 지급 보증기능도 수행함.
 - FSA의 역할 및 권한은 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에 근거함.
 - FSA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은 승인한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가족농과 목장주를 위한 것으로 FSA는 원금과 이자의 가능한 재정손실에 대해 95% 까지 보증함.

- 신규 창업농을 위한 대출 및 보증제도로 농장소유(Farm Ownership)와 운영자금 사업을 수행
 - 일정자격이 있는 신규 창업농에 대해 직접대출은 30만 불(소유·운영), 보증은 1,392천 불 한도
 - 농장주의 현금 다운페이아가 5% 이상이어야 하므로 95% 부분보증이라고 볼 수 있음.

- Land contract 보증대출은 90% 부분보증

1.3. 시나리오 분석⁵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 수입 및 지출 변동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음.
 - 첫째, 자연인인 농어업인의 부분보증비율을 5%p, 10%p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즉, 부분보증비율이 90:10, 95:5로 구성됨.
 - 둘째, 부분보증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확대하지 않는 경우와 현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고려함.
 - 셋째, 부분보증비율이 조정될 경우 농신보 보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추가 발생분의 손실률을 현재 보증잔액의 위험률과 동일하게 본 경우, 2배가량 위험하다고 본 경우, 신보·기보 평균을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였음.

표 4-8.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

	농업인 부분보증비율	적용제의 대상 보증한도	추가 보증금액의 손실 가정
시나리오 1	5%p 확대	-	1.4%, 2.8%, 3.8%
시나리오 2	10%p 확대	-	1.4%, 2.8%, 3.8%
시나리오 3	5%p 확대	i) 3천만 원으로 증액	1.4%, 2.8%, 3.8%
		ii) 5천만 원으로 증액	1.4%, 2.8%, 3.8%
시나리오 4	10%p 확대	i) 3천만 원으로 증액	1.4%, 2.8%, 3.8%
		ii) 5천만 원으로 증액	1.4%, 2.8%, 3.8%

주: 추가 보증금액의 손실 가정의 1.4%는 2015년 농신보 대위변제율이며, 2.8%는 농신보 대위변제율이 200% 증가했을 경우의 손실 가정이며, 3.8%는 2012년 신보·기보 평균 대위변제율을 의미함.

⁵ 시나리오 분석에는 농신보 보증실적자료 활용함. 보증실적자료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보증건수의 잔액이 아닌 이들의 초기 보증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 부분보증비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증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기금 손실이 발생함.
 - 부분보증비율이 90:10인 경우 보증료 수입이 약 7.9억 원 증가하였고, 대위변제율 1.4%를 적용할 경우 약 35억 원 추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료 수입은 시나리오별로 7.9억~17.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금 손실은 시나리오별로 35억~214억 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9.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기금 추가손실액 시뮬레이션

	보증료 수입		기금 손실	
	농업인 (증가분)	전체		
시나리오 1	19,825,395,356원 (+789,777,162원)	58,264,958,599원	1.4%	3,574,793,574원
			2.8%	7,149,587,148원
			3.8%	9,703,011,129원
시나리오 2	20,615,172,518원 (+1,579,554,324원)	59,054,735,761원	1.4%	7,149,587,148원
			2.8%	14,299,174,295원
			3.8%	19,406,022,258원
시나리오 3	i 20,014,545,276원 (+978,927,082원)	58,454,108,519원	1.4%	4,418,717,811원
			2.8%	8,837,435,622원
			3.8%	11,993,662,630원
	ii 20,228,504,680원 (+1,192,886,486원)	58,668,067,923원	1.4%	5,458,996,266원
			2.8%	10,917,992,532원
			3.8%	14,817,275,579원
시나리오 4	i 20,684,686,752원 (+1,649,068,558원)	59,124,249,995원	1.4%	7,470,940,016원
			2.8%	14,941,880,031원
			3.8%	20,278,265,757원
	ii 20,772,149,169원 (+1,736,530,975원)	59,211,712,412원	1.4%	7,912,618,503원
			2.8%	15,825,237,005원
			3.8%	21,477,107,364원

표 4-10. 부분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운용배수 변화

(단위: 억 원)

		보증료 수입 증가분	대위변제율	운용배수	보증잔액 증가분	증가 %
시나리오 1		7.9	1.4%	8배	82,438	74.9%
				12배	164,870	149.7%
			2.8%	8배	74,661	67.8%
				12배	143,816	130.6%
시나리오 2		15.8	1.4%	8배	82,238	74.7%
				12배	164,584	149.5%
			2.8%	8배	74,245	67.4%
				12배	143,245	130.1%
시나리오 3	i	9.8	1.4%	8배	82,391	74.8%
				12배	164,802	149.7%
			2.8%	8배	74,563	67.7%
				12배	143,682	130.5%
	ii	11.9	1.4%	8배	82,332	74.8%
				12배	164,718	149.6%
			2.8%	8배	74,441	67.6%
				12배	143,514	130.3%
시나리오 4	i	16.5	1.4%	8배	82,220	74.7%
				12배	164,558	149.4%
			2.8%	8배	74,208	67.4%
				12배	143,194	130.0%
	ii	17.4	1.4%	8배	82,194	74.6%
				12배	164,521	149.4%
			2.8%	8배	74,156	67.3%
				12배	143,122	130.0%

□ 기금건전성 평가

- 기금 수입·지출 구조에서, 기금 수입이 지출규모를 매년 초과하여 기본재산이 매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였음.
 - 과도한 수익발생과 재산누적 현상은 공적 기금의 수지구조로서 부적절 (제도개선 TF, 2013)
- 따라서 기금운용배수를 높이는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용할 경우 기금건전성을 검토하였음.

표 4-11. 부분보증비율 제도개선에 따른 기금건전성 변화 (단위: 억 원)

	자체수입(A)				지출(B)			차(A-B)		
	13년	15년	시나리오		13년	15년	시나리오	13년	15년	시나리오
금융기관출연금	1,915	1,237	1,338	대위변제	1,534	1,544	3,629	381	-307	-2,291
보증료 등	2,829	1,173	1,967	운영비 등	769	589	531	2,070	584	1,436
				농특회계반환		1,000			-1,000	
계	4,744	2,410	3,305		2,303	3,133	4,160	2,441	-723	-855

주: 구상권 회수율 23.9%적용 시 (+) 12억

- 시나리오 3-1(2.8%, 3천만 원 전액보증, 8배 운용배수)을 적용하였을 때 보증잔액은 67.7% 증가하는데, 이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기금건전성을 평가하였음.
- 기금재산은 11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상권 회수와 금융기관출연요율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기금 잠식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구상권 회수율 23.9%를 감안하면, 867억 원이 더해지므로 기금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확대

2.1. 현황

□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임.
- 현행 동일인 보증한도는 1999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 유지되고 있음.
 - * 1992.4~1992.10(개인 5천, 법인 1억), 1992.10~1994.10(개인 1억, 법인 2억), 1994.11~1999.6(개인 2억, 법인 5억), 1999.6~(개인 10억, 법인 15억)

표 4-12.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단위: 명, 만 원)

보증금액	2016년 11월	
	보증대상자 수	1인당 평균 보증잔액
2천만원 이하	146,708	1,458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02,755	3,419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6,043	5,540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5,863	8,611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6,104	16,707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708	36,878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683	47,191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69	63,942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71	103,693
15억원 초과	79	175,808
전 체	300,583	4,04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한정적이지만, 보증대상자 및 보증자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보증건수 당 금액이 증가하고 농업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5억 원 초과 보증잔액인 보증대상자는 1%내외로 1,402명임.
- 2016년 11월 기준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초과자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예외보증으로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개인 45명, 법인 55법인으로 나타남.

표 4-13. 개인과 법인의 보증금액 구간별 인원과 평균 금액

(단위: 명, 만 원)

	보증금액	2016년 11월	
		보증대상자 수	1인당 평균 보증잔액
개인	2천만원 이하	146,540	1,458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01,680	3,415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5,750	5,535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4,902	8,610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3,368	15,594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0	27,468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280	37,023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6	49,703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1	83,100
	15억원 초과	24	114,009
전 체		293,391	3,498
법인	2천만원 이하	168	1,453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075	3,802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93	5,793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961	8,624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2,736	22,14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58	42,659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03	54,256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93	72,496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0	106,576
	15억원 초과	55	202,775
전 체		7,192	26,459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규모가 있는 보증금액 구간의 자금용도는 주로 유통·가공업으로 이용자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표 4-14. 보증금액 구간별 자금용도

(단위: 건, 억 원)

		2천만 이하	2천만 초과 ~5천만 이하	5천만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농업	건수	102,173	67,918	9,647	6,086	398	147
	금액	9,616	16,345	5,301	9,121	2,504	1,982
임업	건수	15,819	13,810	9,782	5,751	272	10
	금액	1,717	4,212	6,852	8,999	1,099	93
수산업	건수	26,042	22,308	9,872	4,514	225	52
	금액	2,742	6,350	6,220	7,012	1,030	510
축산업	건수	5,027	5,348	1,932	474	13	2
	금액	607	1,565	1,288	652	70	32
유통/ 가공업	건수	35	206	276	816	83	25
	금액	5	74	211	1,845	504	282
일반 재해 자금	건수	5,879	2,581	530	222	2	0
	금액	581	784	332	327	7	0
부채 관련 자금	건수	118,743	30,888	3,360	335	11	3
	금액	5,899	5,158	1,291	330	39	25
피해 복구 자금	건수	3,269	1,565	643	405	1	0
	금액	162	355	277	274	2	0
기타	건수	1,146	943	1,103	2,205	174	26
	금액	64	288	775	4,644	968	238

주: 2016년 11월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표 4-15. 보증금액 구간별 산업

(단위: 건, 억 원)

		2천만 이하	2천만 초과 ~5천만 이하	5천만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농업	건수	202,366	88,490	11,358	4,616	85	40
	금액	14,646	19,690	5,788	5,846	369	464
임업	건수	7,767	5,303	1,467	362	9	1
	금액	672	1,388	962	503	42	11
수산업	건수	21,455	16,065	10,269	5,682	244	7
	금액	2,005	4,686	7,065	8,527	918	62
축산업	건수	45,402	33,788	11,987	5,129	242	67
	금액	3,966	8,751	7,214	7,140	1,186	820
유통업	건수	67	288	346	1,155	135	24
	금액	9	99	266	2,680	804	284
제조 가공업	건수	249	1,049	1,454	3,627	438	118
	금액	28	372	1,087	8,046	2,767	1,418
기계 및 기자재	건수	21	60	72	165	18	3
	금액	3	20	50	330	103	41
기타	건수	826	526	192	72	8	5
	금액	64	125	115	132	33	62

주: 2016년 11월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현재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은 주로 생산과 연계된 자금임.
- 개인 기준 30억 원 한도 적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INNO-BIZ, 수출 및 규모화, 모태펀드, 원양어업경영자금 국적선사, 축사시설현대화, 첨단온실, 양식시설, 연근해노후어선, 원양어선, RPC 원료곡매입 자금임.

□ 정책자금 연계 우대보증지원 한도

- 선도농업인 2억 원, 청장년 귀농귀어 1억 원, 전문교육 1억 5천만 원, 다문화 1억 원으로 우대보증(간이신용조사)의 한도가 정해져 있음.
- 선도농업인 지원을 제외하면 귀농귀어 자금이 가장 활발하고, 다문화, 전문교육자금의 경우 실적이 저조함.
 - 평균 보증잔액이 1억 원 이하로 낮은 편임.
 - 정책자금에 개인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정책자금 활성화가 필요함.

표 4-16. 정책자금 중 우대보증

(단위: 건수, 원)

구분	건수	보증잔액	평균보증잔액
다문화	46	1,762,695,501	38,319,467
전문교육	11	521,343,630	47,394,875
귀농귀어	681	30,196,387,083	44,341,244
선도농어업인	123,039	2,974,199,500,033	24,172,819

주: 2016년 11월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귀농귀어 자금 중에는 농지구입이 약 30.3%를 차지하지만, 평균 4천만 원 지원에 그쳐 귀농귀어자 입장에서는 농림어업에의 진입장벽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7. 귀농귀어 우대보증 자금용도

(단위: 건, 원)

	건수	보증잔액
농지구입	236	9,150,829,651
영농자금	111	5,144,355,035
기타(농업)	74	2,937,628,851
영농자재	35	1,582,781,355
기타	29	1,120,081,780
기타(수산업)	26	1,752,698,401
농기계(5천이하)	25	527,691,000
어구	22	1,701,480,603
어선건조자금	20	1,460,154,600
축산자금	19	782,632,550
화물자동차	16	245,751,700
선박구입	14	819,086,085
농기계	12	715,913,000
어구(5천이하)	11	258,260,040
양식시설	9	607,503,960
과수식재	6	291,798,000
영어자금	4	327,600,000
기타(축산업)	3	171,413,999
임산물시설	3	247,824,473
어업양식기계	2	173,502,000
정책지원농어가부업자금	1	90,000,000
어업양식기계	1	19,900,000
가축증식	1	49,500,000
기타(산림업)	1	18,000,000
전 체	681	30,196,387,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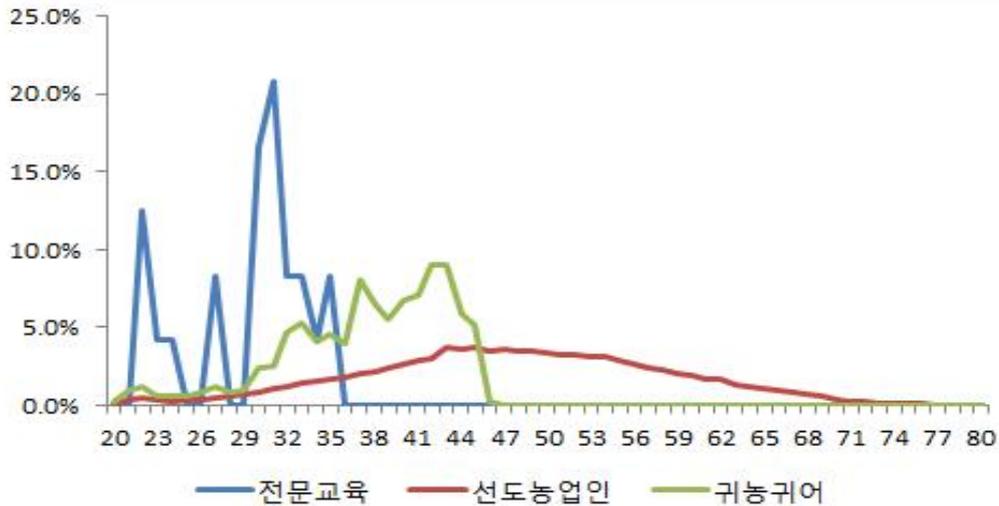
주: 2016년 11월 기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귀농가구의 연령 분포는 2015년 기준 50대가 40.2%를 차지
 - 30대 이후 9.6%, 40대 20.0%, 50대 40.2%, 60대 24.4%
 - 현재 우대보증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우대를 받고 있다고 추정되며, 만일 50세 이하로 할 경우 30%, 55세 이하 가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약 50%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우대보증을 적용받은 농어업인의 연령분포로 미루어보아, 귀농귀어 우대보증의 경우 5~10세 확대한다면 현재와 같이 보증대상자에 대한 급격한 끊김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 우대보증 연령별 지원 현황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자료.

2.2.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농업정책금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투자규모가 커지는 배경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식품산업육성,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투자의 수요처가 1차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건당 보증규모가 커지는 것이 예상됨.
 - (1안) 보증대상자 범위 확대에 있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가 높은 사업자에 한정할 수 있음. 또한 보증대상자금을 유통·가공업에서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지역한정을 두는 등 보증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농신보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
 - * 보증대상 범위 확대는 법 개정사항임.
 - (2안) 보증대상 범위 확대를 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6차산업 인증자인 경우 예외보증한도를 30억 원 적용할 수 있음.

그림 4-2. 6차산업 전국 인증사업자 현황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http://www.6차산업.com/portal/cont/companyCurrent.do>)

<농식품모태펀드>

- 10년부터 운용되어 14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업에 1,908억 원(정부 966억 원, 민간 942억 원)을 투자
-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 2,868억 원(수산펀드제외)
 - 10년(502억), 11년(420억), 12년(420억), 13년(426억), 14년(600억), 15년(500억)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14년 12월말 기준)
 - 농식품투자조합 30개, 총 4,670억 원(정부 2,492, 민간 2,178) 규모의 농식품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2,178억 원의 민간자금 유치
 - 연도별 : 10년(4개; 970억), 11년(5; 970), 12년(6; 840), 13년(6; 750), 14년(9; 1,140)

(단위 : 개, 억 원)

투자분야별		연도별	펀드결성금액(펀드개수)				
			'10	'11	'12	'13	'14
일반 펀드	농식품일반	200(1)	-	-	450(3)	610(4)	1,260
	농림축산업	200(1)	400(2)	320(2)	-		920
	식품산업	250(1)	370(2)	320(2)	-		940
특수 목적 펀드	8대프로젝트	320(1)	200(1)	-	-		520
	소규모경영체	-	-	200(2)	200(2)	100(1)	500
	6차산업	-	-	-	100(1)	100(1)	200
	R&D	-	-	-	-	100(1)	100
	AgroSeed	-	-	-	-	100(1)	100
	수출펀드					130(1)	130
계		970(4)	970(5)	840(6)	750(6)	1,140(9)	4,670

- 투자실적(14년 12월말 기준) : 155건, 총 2,258억 원(결성금액의 48.4%)
 - 농식품분야 투자가 125건, 1,908억 원(총투자금액의 84.5%)이고, 비농식품분야 투자는 30건, 350억 원(총투자금액의 15.5%)

□ 농신보 보증대상 범위 확대와 WTO 규정 검토

- 현재 유통·가공업은 1차 가공에 한하고 있지만, 전처리 농산물을 원물로 보았을 시 실제적으로 2차 가공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전 식품산업이 대상자금으로 포함되는 과급효과가 있음.
- (문제점) 국내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이 원료인 식품업까지 포함되어 국내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농신보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남.
- 국내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국내·외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WTO 규정과 맞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국내 농산물 일정 비중 포함” 과 같은 규정 역시 마찬가지임.
 - 브라질과 미국 간 계속 법정 분쟁 중인 문제도 local requirement limit에 관한 것임(wine산업).
- (해결방안) 품목별 접근 가능
 - 곡류, 채소류로 한정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간의 차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⁶
 - 품목보조라 하더라도 쌀의 경우 변동직불예산 증가로 허용치를 넘길 수 있지만, 기타품목의 경우 미미한 수준이라 농신보 지원을 보조라 보더라도 허용치를 넘기기는 어려움.

□ 농식품 벤처기업 보증지원

- 농식품분야는 벤처창업 촉진 정책에 있어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왔으며, 최근 3년 동안 해당분야의 신규 창업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신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 (2012) 144건 → (2013) 108건 → (2014) 63건

⁶ 품목보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KREI전문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2015년 6월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에서는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윈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자본 및 시장 진출 등 세 가지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할 계획임.
 - 또한 2016년 9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농식품 벤처기업은 아직 영세한 규모로 상용직 고용인원은 평균 21명이며 9인 이하는 46.9%를 차지함(김세움·이정희, 2015).
 - 2015년 연간 매출액은 50억 원 미만이 73.6%임.

- 창업 후 초기단계에 충분한 자금을 동원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홍보·판로확대 등에 투자해야 함에도, 미약한 자금력과 개발된 상품의 시장성 부족, 홍보부족, 판로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성장·발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창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해석됨.

- 벤처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식품 벤처기업이 타 분야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김세움·이정희, 2015).
 - 농식품 벤처기업 중 94.1%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거나 기술평가대출기업인데, 벤처투자기업(1.9%)과 연구개발기업(4.0%)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 분야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매출액에서 벤처사업 비율은 평균 58%이며, 50~70% 미만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농식품 벤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증대상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 기술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활성화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9.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RD를 기반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마련함.
 - 참여대상을 창업 또는 벤처 인증 5년 미만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및 매출액 50억 미만의 농식품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제한경쟁 RD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 올해는 2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사업' 형태로 추진
 -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화 목표 및 기업의 역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연구기간은 2년 이내로 한정할 계획
- 올해는 시범으로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기술과 생명자원 생산관리 기술 및 ICT 융복합 접목기술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
- 사업내용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 : 농생명자원(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기존제품의 성능개선, 고소득 작물품목 발굴 등
 - 생명자원 생산 관리기술
 - : 농생명자원의 안전안정생산기술, 품질 관리기술, 생산성 제고 또는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등
 - ICT 융복합
 - : 생산-유통-소비분야에 있어 ICT 기술을 접목(스마트팜 포함)한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기술 등
- 농식품 RD 바우처사업은 창업벤처기업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연구과제와 달리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제출 등 별도의 추진체제로 운영
 - 과제선정평가도 산업체, 벤처 창업·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여, 기술성 보다는 사업화 성공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

3. 보증료율 체계

3.1. 현황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0.2%p를 가감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등급 우수자는 0.2%p~0.1%p 차감

표 4-18. 보증료율 체계

구 분	보증금액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원 이하	연율 0.3%	연율 0.4%
	1억 원 초과	연율 0.4%	연율 0.6%
	5억 원 초과	연율 0.6%	연율 0.9%
법 인	1억 원 이하	연율 0.5%	연율 0.8%
	1억 원 초과	연율 0.7%	연율 1.0%
	5억 원 초과	연율 1.0%	연율 1.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보증료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소 축소되었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4-19. 보증료율 체계 변화 추이

일 자	내 용																										
제도창설시	●보증금액의 연 1/100																										
1995.06.17	●보증부 대출금액의 연 3/1,000 (단, 보증 약정기간 3년 이상은 연 2/1,000)																										
1999.06.21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농어업</th> <th>비농어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 이하</td> <td>연 0.2%</td> <td>0.3%</td> </tr> <tr> <td>1억 초과</td> <td>0.4%</td> <td>0.5%</td> </tr> <tr> <td rowspan="2">법 인</td> <td>1억 이하</td> <td>0.4%</td> <td>0.5%</td> </tr> <tr> <td>1억 초과</td> <td>0.6%</td> <td>0.8%</td> </tr> </tbody> </table>			항 목		농어업	비농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이하	연 0.2%	0.3%	1억 초과	0.4%	0.5%	법 인	1억 이하	0.4%	0.5%	1억 초과	0.6%	0.8%						
항 목		농어업	비농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이하	연 0.2%	0.3%																								
	1억 초과	0.4%	0.5%																								
법 인	1억 이하	0.4%	0.5%																								
	1억 초과	0.6%	0.8%																								
2004.01.01	●기준 보증료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3%</td> <td>0.4%</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4%</td> <td>0.6%</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6%</td> <td>0.9%</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5%</td> <td>0.8%</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7%</td> <td>1.0%</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0%</td> <td>1.2%</td> </tr> </tbody> </table>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5%	0.8%	1억원 초과	0.7%	1.0%	5억원 초과	1.0%	1.2%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5%	0.8%																								
	1억원 초과	0.7%	1.0%																								
	5억원 초과	1.0%	1.2%																								
2006.07.01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5%</td> <td>0.6%</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6%</td> <td>0.8%</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8%</td> <td>1.1%</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7%</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9%</td> <td>1.2%</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2%</td> <td>1.4%</td> </tr> </tbody> </table>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5%	0.6%	1억원 초과	0.6%	0.8%	5억원 초과	0.8%	1.1%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5%	0.6%																								
	1억원 초과	0.6%	0.8%																								
	5억원 초과	0.8%	1.1%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2011.04.27	●개인에 대한 기준 보증료율 0.2%p 인하 (0.3% ~ 0.9%)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3%</td> <td>0.4%</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4%</td> <td>0.6%</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6%</td> <td>0.9%</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7%</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9%</td> <td>1.2%</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2%</td> <td>1.4%</td> </tr> </tbody> </table>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계요람(2014)

- 보증금액 규모별 보증료 부담을 살펴본 결과, 2천만 원 이하 보증금액 구간에서는 평균 약 3만원의 보증료 부담이 있음.
- 해당 보증금액의 건수(296,314)를 곱한 총 보증료는 89억 원으로 전체 총 보증료에서 15.5%를 차지
- 1억~3억 원 구간의 해당 평균 보증료는 85만 원이지만, 총 보증료 비율은 24.2%로 높은 편임. 보증금액으로 보았을 때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20. 보증금액 구간별 보증료 부담 현황

구분	평균 보증료(원)	총 보증료(백만 원)
2천만원 이하	30,126	8,927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92,451	13,627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66,777	2,929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49,484	4,176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854,950	13,912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3,282,679	4,894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5,940,162	3,332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002,217	2,593
10억원 초과	16,499,982	3,085
계		57,47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자료.

- 산업별로 보았을 때, 1차 산업보다는 유통, 제조가공업 등 2, 3차 산업의 보증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축산업의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축사자금, 시설자금의 경우 농신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표 4-21. 산업별 보증료 부담 현황

구분	평균 보증료(원)	총 보증료(백만 원)
농업	63,231	20,516
임업	92,907	1,104
수산업	159,841	7,531
축산업	124,241	10,717
유통업	2,346,929	3,584
제조가공업	1,915,449	10,326
기계 및 기자재	1,921,321	1,518
기타	204,790	249
계		55,54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자료.

표 4-22. 용도별 보증료 부담 현황

구분	평균 보증료(원)	총 보증료(백만 원)
농업	99,397	19,504
임업	150,698	649
수산업	195,551	8,238
축산업	143,603	9,116
유통/가공업	2,969,748	5,037
일반 재해 자금	63,577	690
부채 관련 자금	45,755	7,135
피해 복구 자금	74,833	1,232
기타	1,019,844	5,875
계		57,47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자료.

- 특례, 우대보증의 경우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 부담이 낮아 실제 보증료를 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 보증유형별 보증료 부담 현황

구분	평균 보증료(원)	총 보증료(백만 원)
일반보증	236,504	33,586
특례보증	56,377	12,523
우대보증	85,653	11,366
계		57,47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자료.

3.2. 타기관 사례

□ 신보·기보 사례

○ 신용보증기금

-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용도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보증료 역시 변화함.

표 4-24. 보증료율 운용체계

① 보증심사등급별 보증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RS 적용기업 : K1(0.6%) ~ K15(2.5%) - SBSS 적용기업 : SB1(1.1%) ~ SB10(2.5%) 	
② 가산요율	보증비율 미충족	0.2%p
	일부해지기준 미충족	0.1 ~ 0.4%p
	장기분할해지보증 해지 미이행 등	최대 0.5%p
	기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등)	0.1 ~ 0.6%p
③ 차감요율	0.5%p	최고일자리기업, 퍼스트뱅크기업, Best-Value 서비스기업, IPO100 후보기업
	0.4%p	좋은일자리기업, 가젤형기업, 신생기업보증
	0.3%p	창업초기보증, 라이징스타기업, 우수 경영혁신형기업(10-100 선정기업), 핀테크사업화자금보증,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0.2%p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창업성장보증, 혁신형중소기업(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프런티어스타기업, 고부가 서비스기업 우대보증 대상기업, 우수 경영 혁신형기업 중 경영성과 우수기업, 지식재산보증, SMART 융합보증, V-Plus 보증, 장기분할해지보증, Best-Partner 선정기업,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0.1%p	창업 5년 이내 여성기업, 국가유공자기업, 의사상자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지역협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영위기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전시대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기업, 뿌리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3년 이상 5년 이내 기업, 전자상거래보증(K8등급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
④ 조정요율	차감	최대 0.2%p

자료: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혹은 차감됨.
- 기술평가 등급별 보증료율은 0.8~2.2%이고, 여기서 가감을 하게 되면 결정 보증료율은 0.5~3.0%임.

표 4-25. 보증료율 감면 대상

구분	보증한도
가. 기금특화영역에 대한 보증	-0.3%p이내
1. 기술평가보증(B등급이상)	-0.1%p
2. 기금주관 창업교육 수료자(수료일로부터 3년이내)	-0.2%p
3. 창업후 5년이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0.1%p
나. 정부시책분야에 대한 보증	-0.4%p이내
1. 벤처·이노비즈기업	-0.2%p
2. 장애인기업*	-0.3%p
3. 지방기술유망기업	-0.3%p
4.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0.1%p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0.2%p
6.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자금에 대한 보증	-0.2%p
7. 신기술사업자로서 5년이내 여성창업기업*	-0.1%p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지정기업	-0.1%p
9. 일자리창출기업**	-0.4%p
10. 재해경감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	-0.1%p
11.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0.2%p
12. 가족친화 인증기업	-0.1%p
13.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기업	-0.1%p
14.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수감	-0.1%p
15.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World Class 300" 기업	-0.2%p
16.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0.2%p
17.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0.2%p
18.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0.2%p
다. 상품영역에 대한 보증	-0.2%p이내
1. Network Loan보증	-0.2%p
2. 전자상거래보증	-0.2%p
3. 공공구매론협약보증	-0.2%p
라. 기타영역에 대한 보증	-0.1%p이내
1. 경영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	-0.1%p
2. 혁신마일리지 우수기업(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이상)***	-0.1%p
마. 한시적 협약·특례 등에 대한 보증	-0.5%p이내
1. 대외협약·특례보증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보증	-0.5%p이내

주: * 장애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여성기업의 범위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일자리창출기업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름.

***보증료 감면 1건당 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차감.

자료: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표 4-26. 보증료율 가산 대상

구분	가산사유	가산요율
공통	1. 고액보증기업 가. 보증금액이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기업 나. 보증금액이 30억원 초과 기업	+0.1%p +0.2%p
	2. 장기이용기업 가. 보증이용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나.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다. 보증이용기간이 15년 초과 기업	+0.1%p +0.2%p +0.3%p
	3.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가. 중소기업 졸업 후 1년 이하 나. 중소기업 졸업 후 1년 초과 2년 이하 다. 중소기업 졸업 후 2년 초과 3년 이하 라.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초과 5년 이하 마. “가”호 내지 “라”호를 제외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0.1%p +0.2%p +0.3%p +0.4%p +0.5%p
	4.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른 “경영개선지원보증”	+0.1%p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5. 「부분보증운용기준」의 보증비율인하 대상보증으로서 보증비율인하가 불가능한 경우	+0.2%p
	6. 신용도하락기업(“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제외), 보증제한 대상 업종 영위기업 가. 당초보증금액의 10%미만 해지 나.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20%미만 해지 다. 당초보증금액의 20%이상 해지	+0.3%p +0.2%p +0.1%p
	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가. 약정체결 거부 나. 약정이행율 30% 이상 다. 약정이행율 30% 이상 70% 미만 라. 약정이행율 70% 이상 100% 미만 마. 약정이행율 100% 이상	+0.5%p +0.4%p +0.3%p +0.2%p -
	8. 장기분할해지보증의 분할상환금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0.3%p
	9.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이 보증해지계획 미이행시	+0.3%p

자료: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3.3. 보증료 체계 변화 시나리오 분석⁷

□ 개요

- 보증료율 체계는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각도로 제도개선이 가능함.
 - 부분보증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증료율을 다소 높임으로써 농가의 책임분담이 가능함.
 - 신보·기보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차등을 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구간별로 보증료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유지함. 단, 구간을 추가하여 기존의 단순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음.
- 보증료 체계를 변화시킬 때, ① 보증료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② 이용자 부담은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후생변화를 확인하여 시나리오별 안정성 및 실효성을 평가함.
-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실효성을 살펴보았음.
 - 시나리오 A는 기존 보증료율 체계에서 구간을 추가하고, 농업인의 보증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료율을 전반적으로 0.1%p 정도 낮추었음.
 - 시나리오 B는 구간을 추가하였지만, 보증료율의 상·하한은 기존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시나리오 C는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구간을 추가하고 소액보증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 금액기준을 높였음.

⁷ 시나리오 분석에는 농신보 보증실적자료 활용

표 4-27.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A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율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2	0.3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3	0.5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4	0.7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4	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6	0.8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8	1.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9	1.1
	10억원 초과	1.0	1.2

표 4-28.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B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율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	0.6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5	0.8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5	0.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7	1.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0.8	1.0
	7억원 초과	1.0	1.2

표 4-29. 보증료율 체계 시나리오 C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율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0.3	0.4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0.4	0.6
	7억원 초과	0.5	0.8
법인	2억원 이하	0.5	0.8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0.7	1.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1.1
	10억원 초과	1.1	1.2

□ 보증료 수입 변화

- 전반적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는 방향에서 보증금액 기준 소액구간은 보증료율 인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고액구간에서는 보증료 수입이 급감되지 않도록 구간을 추가하였음.
- 시나리오 A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증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억 원에서 417억 원으로 감소함.
 - 1억 원 이하 소액구간에서 보증료 수입은 농업인 기준 80억 원 정도 감소하고, 법인 기준 3억 원 감소하였음.
 - 신설된 구간인 7억 원,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보증료 수입은 약 35억 원임.
 - 기존 보증료율 체계의 마지막 구간에서의 보증료 수입을 변화 전후로 비교하면, 개인은 15.7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법인은 46.6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시나리오 B는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45억 원에서 555.12억 원으로 근소하게 감소함.
- 시나리오 C는 추산된 총보증료 수입이 기존 555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0. 보증료를 체계 변화에 따른 보증료 수입 변화
기존 보증료 수입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 수입		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 인단체	1억원 이하	27,035	374	27,4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7,609	1,135	8,745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599	103	702
	7억원 초과	708	164	872
법인	1억원 이하	307	716	1,023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689	7,887	9,576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528	2,025	2,553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67	1,625	1,992
	10억원 초과	1,025	1,647	2,672
합계		39,868	15,677	55,545

시나리오 A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 수입		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 인단체	1억원 이하	18,867	335	19,2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6,037	1,089	7,127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17	99	515
	7억원 초과	784	197	981
법인	1억원 이하	202	519	72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23	5,676	6,899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393	1,561	1,954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19	1,413	1,732
	10억원 초과	979	1,600	2,579
합계		29,220	12,489	41,709

시나리오 B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 수입		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28,300	346	28,64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8,050	1,307	9,357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521	113	633
	7억원 초과	784	197	981
법인	1억원 이하	252	692	944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426	7,095	8,522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393	1,561	1,954
	7억원 초과	1,333	3,142	4,475
합계		41,060	14,453	55,512

시나리오 C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금액	보증료 수입		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원 이하	32,747	953	33,700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2,538	631	3,169
	7억원 초과	653	175	828
법인	2억원 이하	696	2,283	2,979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1,148	6,667	7,816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55	1,413	1,768
	10억원 초과	1,077	1,600	2,677
합계		39214	13723	52,937

□ 보증이용자 후생변화

- 시나리오 A대로 보증료율 체계를 바꾼 결과, 보증료 부담이 늘어난 보증대상자 비중은 8.1%이고, 78.5%는 보증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은 8.2%는 부담이 늘었지만, 78.2%는 부담이 감소하였음. 1억 원 이하 소액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개인이 이 구간에서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1억 원 이하, 1억 원~5억 원 구간의 8.3%, 7.6% 보증대상자는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판단됨.
 - 신규 구간인 7억 원 초과에서 보증료 부담이 감소한 것은 0.2%p 가산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보임.
 - 법인의 경우 3.4%는 부담이 늘었지만, 94.7%가 부담이 감소하였음. 최고 구간인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후생이 감소한 법인이 많은 것은 우대요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이 구간에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C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감소한 보증대상자 비중은 자연인 21.7%, 법인 68.5%임. 특히 소액구간에서 보증료 부담 감소로 후생이 증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1. 시나리오별 보증이용자 후생변화

시나리오 A

(단위: 명, %)

구분	동일인별 보증금액	후생			합 계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자연인 및 비법 인단체	1억원 이하	15,375 (8.3)	26,971 (14.5)	143,947 (77.3)	186,293 (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124 (7.6)	2,325 (8.3)	23,475 (84.1)	27,924 (10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72 (8.6)	32 (3.8)	736 (87.6)	840 (100)
	7억원 초과	126 (27.3)	12 (2.6)	324 (70.1)	462 (100)
	소 계	17,697 (8.2)	29,340 (13.6)	168,482 (78.2)	215,519 (100)
법인	1억원 이하	49 (3.5)	6 (0.4)	1,334 (96.0)	1,389 (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8 (2.4)	50 (2.1)	2,299 (95.5)	2,407 (10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6 (1.5)	1 (0.2)	401 (98.3)	408 (1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 (3.3)	10 (3.6)	257 (93.1)	276 (100)
	10억원 초과	42 (13.4)	23 (7.3)	248 (79.2)	313 (100)
	소 계	164 (3.4)	90 (1.9)	4,539 (94.7)	4,793 (100)
합 계		17,861 (8.1)	29,430 (13.4)	173,021 (78.5)	220,312 (100)

시나리오 B

(단위: 명, %)

구분	동일인별 보증금액	후생			합 계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자연인 및 비법 인단체	1억원 이하	60,658 (32.6)	91,317 (49)	34,318 (18.4)	186,293 (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5,123 (54.2)	5,241 (18.8)	7,560 (27.1)	27,924 (10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560 (66.7)	58 (6.9)	222 (26.4)	840 (100)
	7억원 초과	310 (67.1)	26 (5.6)	126 (27.3)	462 (100)
	소 계	76,651 (35.6)	96,642 (44.8)	42,226 (19.6)	215,519 (100)
법인	1억원 이하	81 (5.8)	866 (62.3)	442 (31.8)	1,389 (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53 (10.5)	452 (18.8)	1,702 (70.7)	2,407 (100)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34 (8.3)	16 (3.9)	358 (87.7)	408 (100)
	7억원 초과	85 (14.4)	84 (14.3)	420 (71.3)	589 (100)
	소 계	453 (9.5)	1,420 (29.6)	2,920 (61)	4,793 (100)
합 계		77,104 (35)	98,060 (44.5)	45,148 (20.5)	220,312 (100)

시나리오 C

(단위: 명, %)

구분	동일인별 보증금액	후생			합 계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자연인 및 비법 인단체	2억원 이하	68,381 (33.3)	94,724 (46.2)	42,048 (20.5)	205,153 (100)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4,719 (47.6)	766 (7.7)	4,419 (44.6)	9,904 (100)
	7억원 초과	166 (35.9)	39 (8.4)	257 (55.6)	462 (100)
	소 계	73,266 (34)	95,529 (44.3)	46,724 (21.7)	215,519 (100)
법인	2억원 이하	107 (4.3)	907 (36.5)	1,471 (59.2)	2,485 (100)
	2억원 초과~7억원 이하	146 (8.5)	221 (12.9)	1,352 (78.7)	1,719 (100)
	7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2 (8.0)	21 (7.6)	233 (84.4)	276 (100)
	10억원 초과	55 (17.6)	30 (9.6)	228 (72.8)	313 (100)
	소 계	330 (6.9)	1,179 (24.6)	3,284 (68.5)	4,793 (100)
합 계		73,596 (33.4)	96,708 (43.9)	50,008 (22.7)	220,312 (100)

4. 보증심사

4.1. 현황

□ 신용조사방법

- 신용조사방법은 크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로 구분됨.
 - 일반보증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특례·우대보증의 경우 1억~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함.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의 경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표 4-32. 일반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구분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자연인인 농어업인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법인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창업 (자연인·법인)	5천만원이하	3억원이하	

주: 보증신청금액이 50백만 원 이하이나 부채특례보증 및 경영회생특례보증 잔액합산 시 50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신용조사 적용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표 4-33. 특례·우대보증의 신용조사 구분

구분	간이(위탁)	간이(직접)	일반	정식
선도농 우대보증	1억원이하	2억원이하	-	-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	1억원이하	-	-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	1억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	-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우대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	-
부채대책 특례보증	1억원이하	-	3억원이하	3억원초과
재해대책 특례보증	1억원이하	3억원이하	-	-
경영회생 특례보증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1억원이하	2억원이하	-	-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간이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 필수확인사항

1. 보증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3. 최근 3월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5.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7. 보증조건(특약사항)
8. 보증서류의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10. 갱신신용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 확인서류

- 조합원확인서
- 농지원부
- 어업면허장
- 영농확인서(현지출장복명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대출 상담서
- 정책자금 배정 문서
- 기타 대출서류 등
- 신용보증 원장조회표
- 신용보증 고객종합 정보조회표
- 신용보증 종합신용 정보보고서
- 여신관련조회표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 신용정보조회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주(출자자)명부
 - 사업계획서
 - 기타 시설자금 관련 증빙서류
 - 보증원장조회표
 - 기대출 서류
- 간이신용조사의 필수확인사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농업인이 직접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기 대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계획서, 기타 시설자금 관련 증빙서류임. 조합원 확인서, 주주명부 등은 타 조합일 경우에만 농업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역 농협에서 대리 신청하거나,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상담서, 신용보증 원장조회표, 신용보증 고객종합 정보조회표, 신용보증 종합신용 정보보고서, 여신관련조회표, 신용정보조회표, 보증원장조회표임.

- 일반·정식신용조사는 필수확인사항의 주요 심사항목 외에 CB평가등급제한 및 차입규모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부적정 항목이 없으면 보증지원

- 심사항목

I. 보증대상	1) 보증심사기준 적용의 적정성 2) 보증대상자의 적정성 3) 보증대상자금의 적정성
II. 보증금액	1) 보증심사기준별 2) 총 보증한도
III. 금융거래 신뢰도	1) 대출금 또는 상거래채무 연체 2) 신용관리대상거래처 3) 대위변제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4) NICE CB평가 결과 9~10등급 해당 여부
IV. 사업장·주택의 안정성	1) 부속토지 확보의 적정성(시설자금) 2) 휴·폐업 여부 및 영업 중일 것 3) 경영분규 여부 4) 사업장 권리침해 여부 5) 거주주택 권리침해 여부
V. 채권보전	1)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2) 시설자금 보증조건 부여의 적정성 3) 기타 보증조건 부여의 적정성 4) 기 부여된 보증조건 이행의 적정성
VI. 차입규모(일반신용조사 생략)	1) 총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600% 이내 2) 운전자금차입금은 매출액의 1/2 이내
VII. 부실 가능성 VIII. 예외보증 지원기준 충족 여부	

□ 신용평가방법

-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구분하고 있음.
 - 일반보증 및 농어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 적용
 -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의 경우 간이평가모형으로 우대

- 신용평가모형은 표준평가모형과 창업평가모형으로 구분
 - 표준평가모형은 간이평가모형, 일반평가모형, 정식평가모형, 법인평가모형
 - 창업평가모형은 소호창업, 법인창업으로 구분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적용

표 4-34. 사업성평가 표준평가모형

보증대상	금액	모형구분 및 신용조사 방법		비고
		평가모형	신용조사	
자연인/법인	5천만원이하	간이평가모형	간이신용조사	
자연인	3억원이하	일반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3억원초과	정식평가모형	정식신용조사	최근 2개년 이상 재무제표 필수
법인	5천만원초과	법인평가모형	정식신용조사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표 4-35. 사업성평가 창업평가모형

보증대상	금액	모형구분 및 신용조사 방법		비고
		평가모형	신용조사	
자연인	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소호창업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최근 2개년 이상 재무제표 보유 시 표준모형 적용
법인		법인창업평가모형	일반신용조사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 일반보증과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의 신규신용조사 수행 시 사업성 평가 수행
 - 신규보증일지라도 간이신용조사일 경우 사업성 평가 제외
 - 표준평가모형, 창업평가모형으로 구분

표 4-36. 표준평가모형

보증대상	신용조사구분		
	간이	일반	정식
개인	-	개인 사업성 평가모형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성 평가모형	
법인	-	-	법인 사업성 평가모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표 4-37. 창업평가모형

보증대상	신용조사구분		
	간이	일반	정식
개인	-	창업 개인 사업성 평가모형	
개인사업자	-	창업 개인사업자 사업성 평가모형	
법인	-	-	창업 법인 사업성 평가모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해설서(2016).

표 4-38. 신용평가모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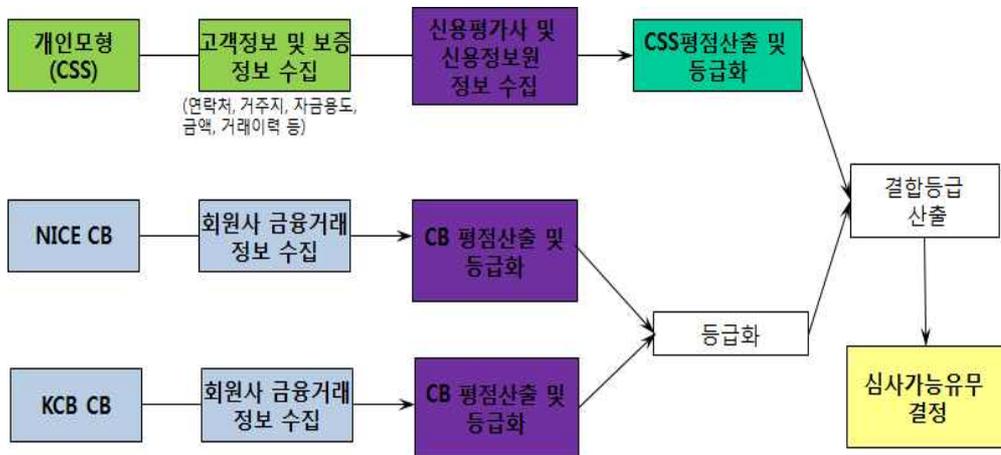
구분	개인(CSS)	소호	법인
cut-off	개인정보+보증정보+신용평가사정보	좌동	재무정보+비재무정보
기초한도	CSS등급	좌동	기업가치+법인등급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농신보 보증심사모형

- 개인모형(CSS)은 5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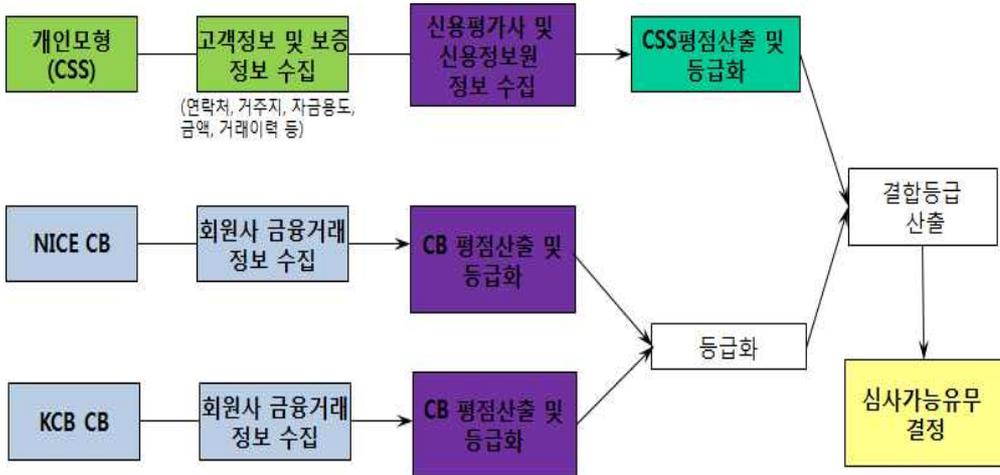
그림 4-3. 개인모형 구조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소호모형은 5천만 원 초과 고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
- 소호모형 구조도는 개인모형(CSS)과 동일하나, 연체기일 등 세부항목에서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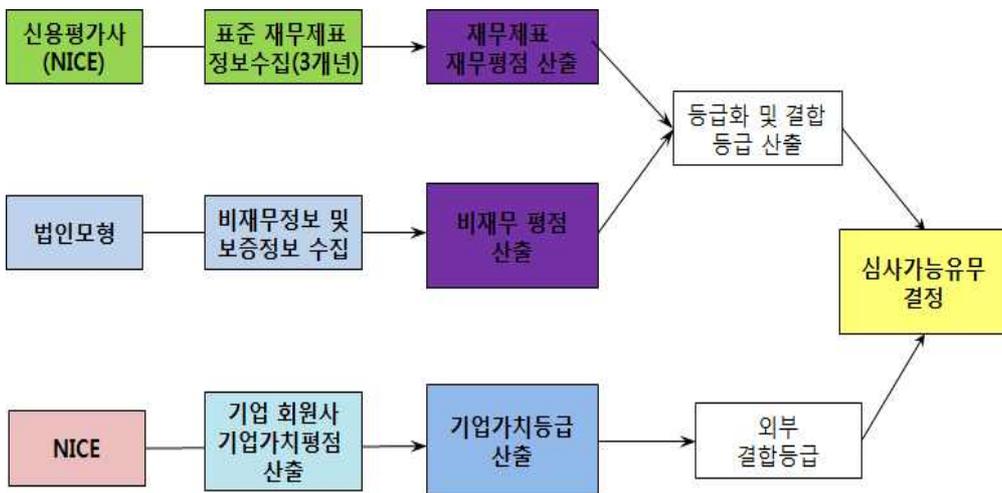
그림 4-4. 소호모형 구조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 법인모형은 법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초과 고액보증심사 시 심사가능 유무 및 기초 신용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4-5. 법인모형 구조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내부현황자료.

4.2. 타기관 사례

□ 일반 금융기관

- 일반 금융기관 역시 비재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기술성’, ‘미래사업성’보다 경영자 능력, 여신거래 성실도 등과 같은 비재무 항목 평가에 치중한 경향이 있음.

표 4-39. 일반 금융기관의 업종별 순수비재무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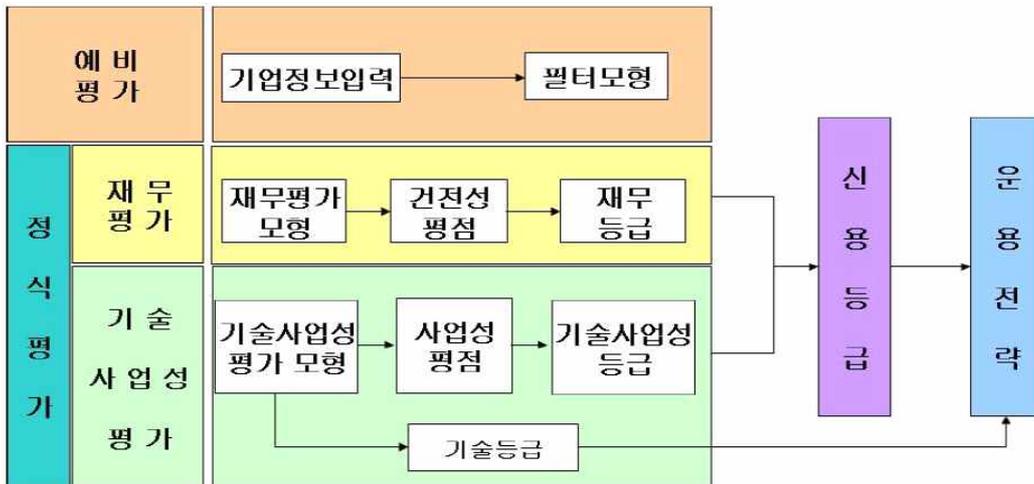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사업성	성장전망	성장전망	성장전망
	산업등급	산업등급	산업등급
경쟁력 (경영능력)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자의 경영능력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능력
영업위험	판매안정성	판매안정성	판매안정성
	주거래처의 신용도	주거래처의 신용도	주거래처의 신용도
	매출채권의 건전성	매출채권의 건전성	매출채권의 건전성
	노사 및 복리후생	노사 및 복리후생	노사 및 복리후생
재무위험	자금조달능력	자금조달능력	자금조달능력
	우발채무발생가능성	우발채무발생가능성	우발채무발생가능성
	재무제표 신뢰성	재무제표 신뢰성	재무제표 신뢰성
	-	공사의 안정성	서비스경쟁력
	-	이월공사/수주잔량	입지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 중진공

- 중진공은 총자산 10억 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평가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인데 이어 10%까지 축소하는 대신, 비재무평가 비중은 90%까지 확대하여 ‘기술성’과 ‘미래사업성’ 위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2009)

그림 4-6. 중진공 기업평가 구조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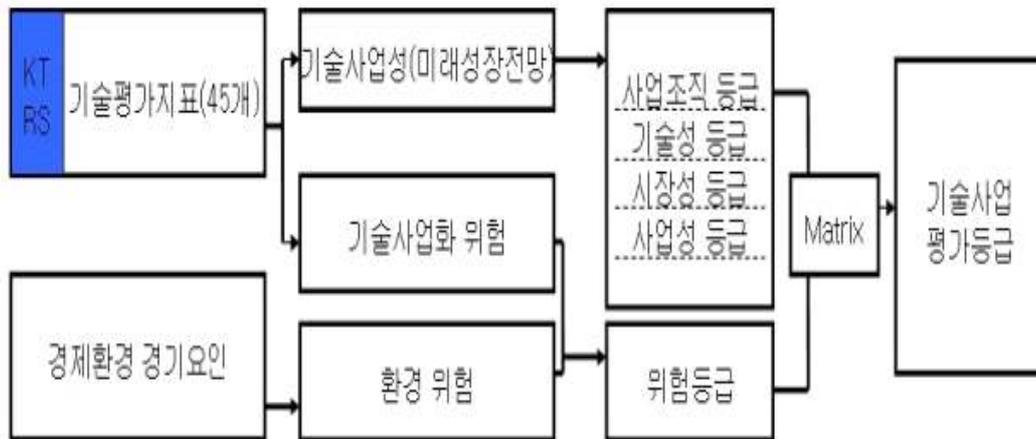
- 재무평가모형은 재무정보를 통하여 부실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측정함.
 - 재무평가항목에는 총자산 증가율(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률(수익성),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자기자본회전율(활동성), 총자본투자효율(생산성), 현금흐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재무등급은 통계적 기법에 의해 도출된 재무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등급별 추정 부실률과 점유율을 고려하여 13등급으로 나눔.
 - 일반적으로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신용평가 시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 기술사업성 평가는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구축된 기술사업성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자들의 판단을 평점화하여 등급을 구간화하였음.
 - 기술사업성 평가는 기술성(30%: 기술개발기반, 기술수준, 생산기술), 시장성(30%: 시장지위, 제품경쟁력), 경영능력(30%), 미래재무(10%) 등으로 총 25개 항목을 가중 평균하여 사업성을 평점으로 매긴 후 13등급으로 나눔.
- 이후 재무요인과 기술사업성요인 평가에서 각각 산출된 등급을 Matrix화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함.
- 한편, 기술등급은 기술사업성 중 기술성 부문과 시장성 부문만을 고려하여 15개 등급의 기술등급을 도출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운용전략으로 이용

□ 기보

- 기술평가모형(KTRS)은 기업의 부도예측이 주요목적인 일반신용평가시스템과 달리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사업성 항목에 재무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장래 성장전망과 평가대상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등으로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산출하여 Matrix 결합을 통해 10개의 기술평가등급을 매김.
 - 기술평가지표는 16개의 기술평가항목 및 45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지표의 심사항목은 각각 계량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심사항목별 평가입력 및 Balance Matrix에 의해 평가항목이 자동 평가됨.
 - 기술평가모형은 6개 업종(일반산업용, S/W용, 바이오산업용, 환경산업용, 전문디자인산업용, 닷컴산업용)과 3개의 기술수준(High, Middle, Basic)으로 구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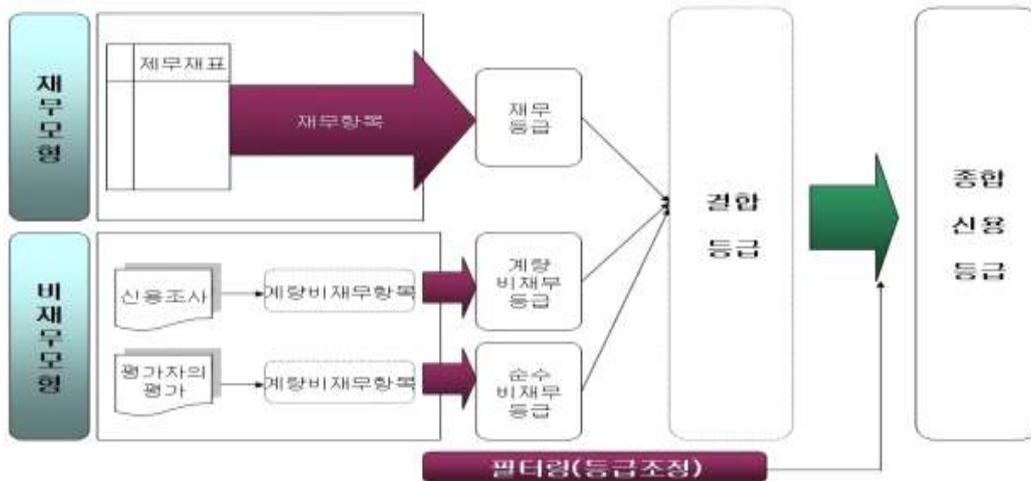
그림 4-7. 기보 기술평가모형 구조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 기보의 기업평가모형은 재무, 계량비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에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통해 등급을 조정함.
 - 로짓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모형별로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함.
 - 재무모형은 업종, 자산규모 등 모형별로 재무변수를 선정하고, 통계적 모형에 의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하여 재무등급을 산출함.
 - 계량비재무모형은 기업조사서 항목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비재무 요소 및 외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자의 개인 CB정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예측
 - 순수비재무모형은 계량화가 어려운 비재무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자동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해 전문가(평가자)가 직접 평가하는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재무 평점 및 계량비재무 평점과, 100점 만점의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한 평점을 규모별 결합가중치에 따라 결합평점과 결합등급을 산출

그림 4-8. 기보 기업평가모형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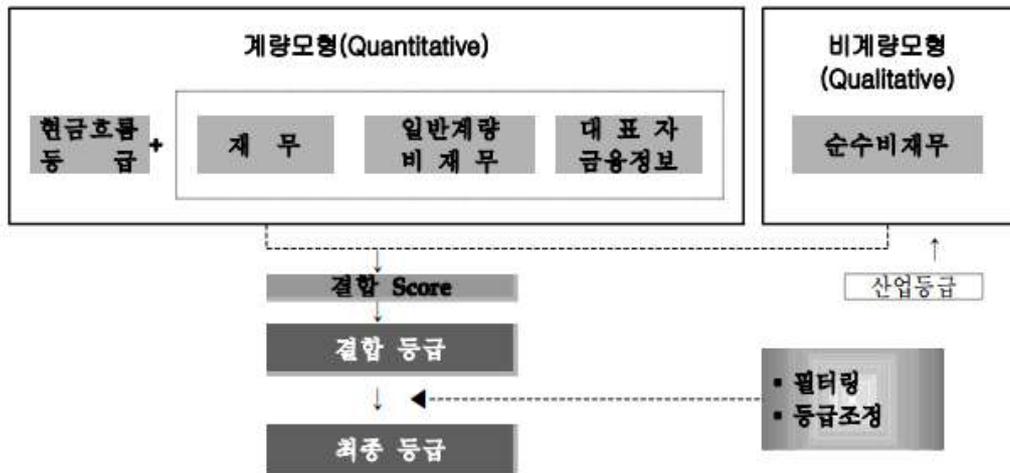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 신보

- CCRS 하에서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 계량재무, 순수비재무 부문으로 항목별 결합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짐.
 - 재무항목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정도, 변동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 8개 범주에 43개의 재무비율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자산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
 - 계량비재무의 항목은 기업현황 정보(종업원 수, 주 사업장소유 등), 기업 운영 정보(설립운영기간, 자사제조비율 등), 대표자 특성(동종업계에 종사한 연수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정보(최장 연체일 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계좌 수 등), 각종 대표자 금융정보 등 5개 범주 내에 3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산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순수비재무항목은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 등 4개 범주에 13개 지표를 설정하여 기업자산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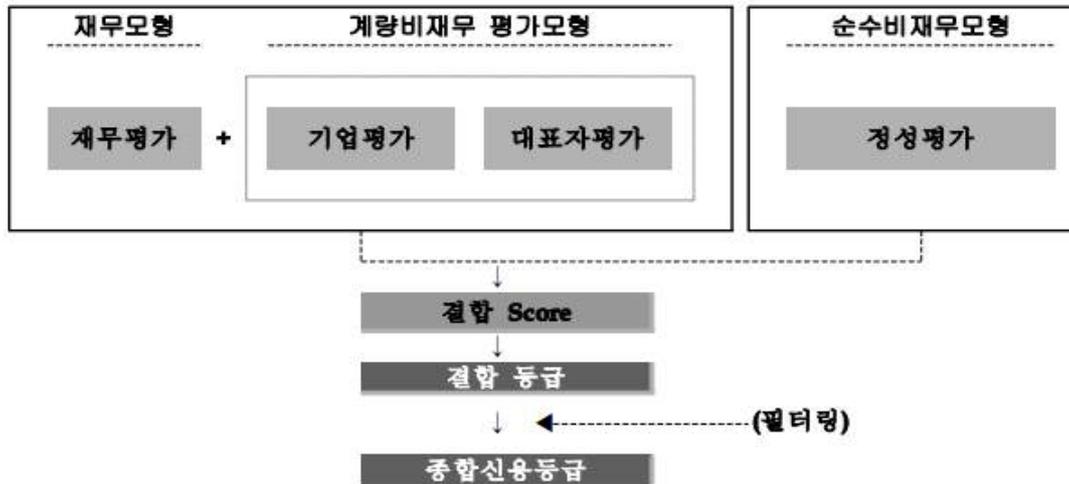
그림 4-9. 신보 CCRS 결합구조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 SBSS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6월 도입
 - 재무평가모형, 계량비재무평가모형, 순수비재무모형으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하고 필터링을 거쳐 최종 종합 신용등급을 산출함.
 - SBSS에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의 비중(외감기업 30%, 비외감기업 20%, 영세·재무미보유기업 20%)이 CCRS에 비해 높음.
 - 계량모형의 경우도 정성평가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가중치 중 재무비중은 외감기업 20%, 비외감기업 20%, 영세·재무미보유기업 10% 등으로 CCRS에 비해 낮은 반면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음.

그림 4-10. 신보 SBSS 결합구조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09).

- SBSS 하에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부문별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음.
 - 재무항목의 경우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계량비재무항목의 경우 기업개황과 대표자 업력 및 금융거래성향에 대하여 평가함.
 - 순수비재무항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기술력, 성장성 등의 정성평가를 실시함.

4.3. 농신보 보증심사 검토

- 보증심사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자료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농신보 이용자들이 판단하기에 농신보의 사업성 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농신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가의 자금 차입 시 마주하는 애로사항으로 용자조건 개선이 높게 나타났지만,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금규모 확대보다도 많은 농가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는 정책자금 이용 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농가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22.4%), 담보보다 신용·사업성 평가를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14.4%임.
- 농신보 이용 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농신보 신용평가 방법 개선’이 23.1%를 차지하였음.
- 농신보의 심사방법 중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는 그룹에 있어서는 사업성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이신용조사, 일반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20%만 적용되고 있어 개인 신용이 부족한 농업인의 경우 적절한 금액을 평가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사업성 평가모형에서 운전자금은 기술경영, 사업성, 성장성 평가를 하고 시설자금은 기술경영, 시장성, 투자적합성, 투자안정성 평가를 하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외부충격에 약한 농어업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과도한 구비서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음. 현재 소액보증에 적용되는 간이신용조사라 하더라도 필수확인사항인 체크리스트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직접 준비해야 하거나 지역 농협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편임. 농업경영체 DB 등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갱신과 신규보증 간의 구비서류는 차이 없는 보증관리 시스템이므로 이용자의 불편함 체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농신보의 보증서 관리는 다음과 같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므로 약정서만 작성하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새로 구비할 필요가 없음.
 - 신용보증기간 만료 전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보증서 관리는 매 3년마다 진행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5년 이상 장기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는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임. 따라서 신규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는 새로 구비되어야 함.

표 4-40. 농가의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설문)

	빈도	비중(%)
1. 대출금리 인하	186	32.6
2. 거치기간/상환기간의 연장	49	8.6
3. 자금 공급 규모의 확대	60	10.5
4.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	22	3.9
5.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128	22.4
6. 담보보다는 신용/사업성 평가 위주의 대출	82	14.4
7. 영세농, 고령농 위주의 제도 보완	24	4.2
8. 기타	1	0.2
9. 무응답	19	3.3
합계	571	100

주: 기타의견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의 생각(농업인 중심의 지원책)이 있었음.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자 설문조사.

5. 기술보증제도 활성화

5.1. 기술금융의 필요성

- 농업부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낮은 비판이 제기됨.
- R&D 투자의 효과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농업생산현장에 전달되어 실용화되어야 발생함.
 - 농업부문 기술은 농가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개선된 투입재 형태로 보급되는 과정을 통해 실용화되는 것임.
 - R&D를 통해 얻어진 개선된 기술은 제품의 사업화를 통하여 성과가 나타나는데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여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데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바탕이 되어야 함(기술금융의 중요성).

5.2. 기술금융의 유형

-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재무, 신용정보 배제), 미래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하는 방식임.
 -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유형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형태임.
 -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관리요소가 많아, 은행이 소극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유형으로, 국유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많이 시행함.
 - 지식재산권은 가치산정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담보로서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
 -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이 출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직접투자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금융유형임.
 -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이익을 공유하는 출자 및 투자방식으로 직접금융이 적합하여 정부에서는 모태펀드 결성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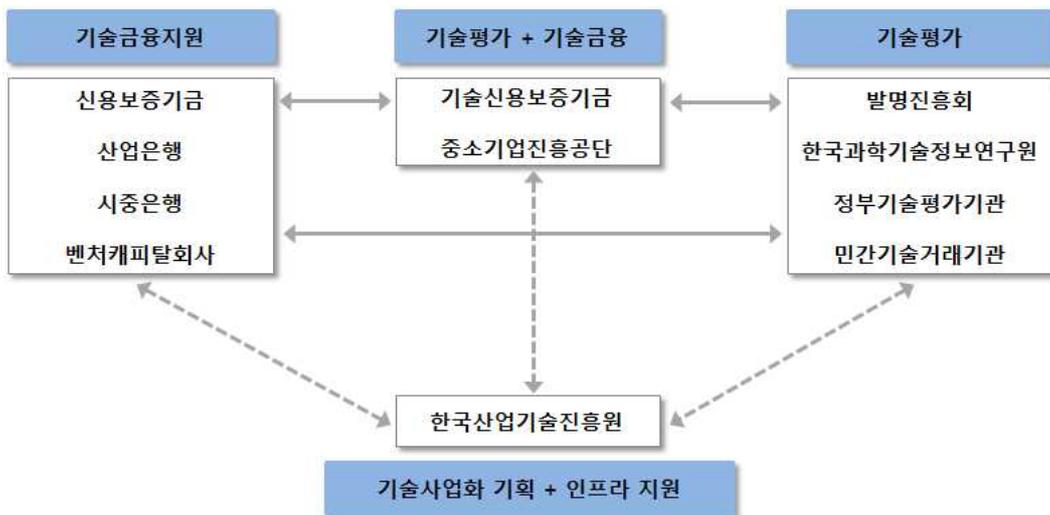
○ 기술금융 관련 조직

- 기술금융은 기술력평가와 금융지원이 상호연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기술금융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동의하는 미래 기술가치 흐름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고 있음.
- 정부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 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기술평가기관으로는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기술평가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있음.

- 기술평가와 함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 및 대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벤처캐피탈회사가 있음.

그림 4-11. 산업분야 기술금융 관련주체



5.3.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와 문제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으로써 기술금융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임.
 - 청장년 창업 우대보증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을 0.1%로 인하하는 수준이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 특례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임.
 -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는 보증심사 시 최고 2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농식품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대출지원실적은 사업계획(매년 1,000억 원)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지원 실적이 낮고, 보증지원은 더 낮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 평가된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에 대해 대출지원을 하는 자금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기술, 신기술농업기계, 이노비즈,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인증업체 등에 대해 지원함.
 -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5년)로 운전자금을 농협은행이 대출함.
 - 매년 1,000억 원의 지원규모를 책정하였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약 30% 수준으로 성과가 낮음.

○ 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

- 농식품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식품전문모태펀드에 의한 투자지원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규모는 총 790억 원(2014년)
- R&D 분야 투자사업: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경영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사업화(려)는 농식품 경영체에 지원
- 애그로씨드 투자조합 분야: R&D 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타산업과의 융·복합, 경영혁신, 사업의 기업화 등을 계획하여 새로운 가치창조를 모색하는 사업준비단계 또는 개시 후 1년 미만의 농식품경영체로서, 투자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보육시스템을 이수한 업체임. 보육시스템을 이수한 경영체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생산 등 최소한의 시장 검증을 위한 자금을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투자함.

○ 기술평가기능의 부족과 기술금융과 연계성 부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에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래 수익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의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어 기술금융과 연계되지 못함.
-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하여 농신보 등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함.

○ 기술보증제도의 미약

-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어느 정도 사업 성숙기에 도달하는 기술기업에 대해 투자지원을 하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전 단계에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부족함.

- 사업화 촉진자금의 미약
 - R&D 이후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촉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술가치 평가가 아닌 농협은행의 신용평가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음.

5.4. 농식품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과제

□ 농식품분야 특화된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자금 지원

- 기술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공신력 있는, 금융시장이 동의한 기술력 평가에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것임. 기술력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TF구성 후)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력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타 기관과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낮음.
- 연구개발자 등이 기술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술가치 평가자금을 보조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적합함.
 - 기술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 농신보가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기술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인증된 농업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인 비율을 90~10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보증료율(0.7~1.4%)도 최대한 낮추어 유리하게 신용보증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기업은 담보능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보증비율이 높으면 신용대출부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보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농신보에 농식품 전문 자금을 마련

-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 기술가치 연계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농식품 기술보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임.
- 농업부문 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에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출연 없이 금융기관출연으로만 유지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해 적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에 의해 추진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 계리할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에서 R&D 개발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연구 개발 결과를 사업화·실용화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R&D 투자의 낮은 성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R&D 투자지원과 결과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분야 신기술산업화 사업 확대

- 농진청 및 IPET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실용화하고자 하는 농식품 관련 경영체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사업
- 제도적 기반으로 농식품부 기술실용화 촉진 제도를 구축
 - 농식품분야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진청, 특허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농업신기술관리회사(TLO)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대출중심의 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과는 다른 성격의 가진 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창출된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 5 장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1. 개선방향

1.1. 농신보와 정책금융과의 관계정립⁸

- 농업정책금융과 농신보의 신용보증이 합리적으로 역할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에서는 정책금융이 큰 이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필요함.
- 농업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는 측면에서 농신보가 집중해야 하는 유형의 농가가 존재함.
 - 농가를 담보력(신용력)과 개별 농가의 사업성 수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⁸ 황의식·임지은(2014)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농가의 사업성은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될수록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나타냄.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임.
-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농신보가 담당하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은 미래의 위험성 때문에 사업정보다는 상환 가능성, 확실성이 보장된 담보력에 의존하여 자금을 공급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수 있음.
- 농신보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사업성(정책목표)은 높으나 담보능력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즉, 사회적으로 생산성·사업성이 높은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사업성(정책목표)	
		낮음(L)	높음(H)
담보능력(신용력)	높음(H)	민간금융시장 영역	정책금융 영역 농신보 영역
	낮음(L)	퇴출영역	농신보 영역

- 사업성이 높고, 담보능력이 높은 농가는 일반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지만 농업경쟁력 제고 대상 농가이므로 정책금융에서 지원대상으로 보는 유형임.
 - 정책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농가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 영역임.

- 사업성은 낮으나 담보능력을 갖춘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도록 하는 영역임.
 -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성도 낮고, 담보능력도 낮은 농가는 퇴출대상 농가로서 복지대책이나 회생대책이 필요한 농가임.

- 신용보증은 광의의 정책금융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 금융에서는 협의의 정책과 신용보증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정책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신용보증의 특례를 주면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임. 하나의 정책옵션만을 선택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주고자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업부문은 중소기업과 달리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이 서로 연계되어 지원되는 것이 적합함.
 - 창업농 육성, 첨단유리온실단지의 조성 등 정책추진에 있어서 신용보증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농신보의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함.

1.2. 개인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신보 설립목적인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개인의 유동성 제약 등을 완화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개인의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제도 완화가 필요함.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 예외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등 소액보증을 활용하는 농어업인의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함.
- 둘째, 현재 동일인 총액한도, 정책자금 재원 우대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셋째, 저금리 기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농신보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1.3. 법인

-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림어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자금보증보다는 일반보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전통적인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농림어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따라서 동일인 총액한도 등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 둘째, 정책방향인 농림어업 경영체의 법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승계 등과 더불어 보증승계 역시 해결되어야 함.
- 셋째, 기술보증과 보험 등 다양한 보증상품의 개발은 단기적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신보·기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함.
- 결국, 정책자금 활용을 확대하여 보증잔액을 높이고 운용배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농신보 분야별 개선방안

2.1. 부분보증비율 확대

- 최근 농업투자가 정체되는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배경에서 실제 농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차입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임.
- 반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4.4배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분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금 차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개인 85% 부분보증비율은 2006년 제도개선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 시기는 기금운용배수가 매우 높았던 시기로 최근의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운용배수가 20배 이내로 접어들며 안정기임.
 - * 2006년: 96배, 2008년: 14.6배
 -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2011년 제도개선에서 상향조정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비율은 우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부분보증비율을 5%p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대보증제도에서 보증비율 우대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 기존 전액보증의 갱신인 경우, 95:5로 상향조정을 제안함.

그림 5-2. 부분보증비율 개선방안

현행		개선안
부분보증비율 85:15	⇒	부분보증비율 90:10 *우대보증비율 95:5

2.2. 부분보증 적용 예외범위 확대

- 전액보증한도는 부분보증 도입 초기에는 3천만 원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어온 기금자산 부족에 따라 2005년 1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음. 2009년부터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들어오면서 2012년 다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기준 기금 기본재산은 2조 5천억 원, 보증배수는 4.4배로 자산이 충분하고, 기금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액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보증공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증금액 구간별 대위변제율 검토 결과<표 2-23>, 소액보증 구간에서의 대위변제율이 금액과 건수로는 각각 0.7%에 불과하여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약성채권의 유입으로 기금건전성이 낮아지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액보증한도의 확대는 소액보증 수요자인 영세농어업인의 단기 영농자금의 유동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5-3. 부분보증제도 예외한도 개선방안

현행	개선안
총 보증잔액 2천만 원 이하인 자금	총 보증잔액 3천만 원 이하인 자금

2.3. 보증대상자금 범위 확대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됨. 즉, 농업생산 뿐 아니라 생산 이후의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겸업활동과 결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역시 2015년 농어촌지역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됨.
 - 농업부문 창업지원에서도 농촌비지니스가 포함(농가 레스토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되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은 제외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을 말함.
 - * “농가 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의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신보 신용보증도 농업생산 중심에서 2, 3차산업부문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2016년 사업비: 3,156억 원)
 - *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 일률적 확대에 의한 부실방지 및 농업인 지원에 대한 기금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레스토랑 및 농업생산 중심 체험장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 고려
 - 6차산업 인증자
 - 6차산업화 자금(100%융자, 이차보전)지원 사업자 등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법인 중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보증 30억 원이 적용됨. 대상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식품분야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보증여부 심사 고려
 - 농식품분야 125건, 비농식품분야 30건

- 곡류, 채소류 등 전처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업의 보증대상자금 포함

<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용자)지원사업 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및 체험관광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 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3.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 3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산업(가공) 또는 3차산업(직거래·체험 등)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산업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4. 동일인 총액한도 확대

- 농신보는 법인보다는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 농어업인을 우선하여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보증총액한도가 신보·기보에 비해 낮은 편임.
- 그러나, 농어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규모화·전문화가 요구되었고, 개방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인 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
 -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확대

2.5.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 2015년 농업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38.4%로 꾸준히 늘고 있고, 농가경영주 연령 기준 최빈(最頻) 연령대가 2010년 이후 70대로 바뀌는 등 농가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인력의 투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귀농·귀어, 농고, 농대 졸업생 등 청장년층이 농림어업부문 진입 시 영농어기반을 갖추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관련 농신보 보증지원이 확대될 경우 농림어업분야 창업은 증가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신규 청장년 농어업인의 경영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창업관련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 0.1% 뿐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 0.1%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영위험을 낮추는 등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관리가 필요함.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해 자금지원(연 2% 고정 혹은 변동금리, 이차보전)
 - 현재 2억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5%p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해당 정책자금에 한해 운용 중임.
- 선도농업인 지정을 해당 사업 뿐 아니라 타 정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자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대부분보증비율 95:5로 상향
 - 보증료율 0.1% 우대

□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 정부는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선정된 만 45세 이하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해 자금지원
 - 현재 1억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5%p 부분보증비율 우대, 기준보증료 0.1% 단일요율 적용 중임.
-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서 세대당 지원한도는 3억 원이지만 우대보증은 1억 원 한도에 불과하여 신규 귀농인, 예비 귀농인의 금융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3억 원으로 확대 필요함.
 - 해외에서도 신규 창업농에 대한 지원은 직접융자, 보증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강화되고 있음.

- *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급부금, 유럽의 청년 농업인 직불제
- * 신보·기보는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창업활성화 지원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 농어업계 고졸·대졸자로서 동종업계에 3년 이상 종사한 만 35세 이하의 자에게 1억 5천만 원 한도로 간이신용조사 적용 우대, 기준 보증료율 0.1%로 우대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교육 이수자 및 농수산물식품 창업아이디어 콘테스트 입상자 등이 창업자금 확보, 조기 영농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 창업자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현행 전문교육 이수자 뿐 아니라 창업아이디어 수상자 포함
 - 시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확대
 - 졸업 후 5년 이내 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추가 부분보증(100%) 고려
 - 보증료율 0.1% + 컨설팅비용 0.1% 부과*
 - * 농식품 기술 전문평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사전컨설팅 및 사업성 검증제 도입

그림 5-4. 창업관련 보증지원 개선방안

현행			개선안	
선도농업인	정책자금 90:10		일반자금으로 확대 95:5	
귀농·귀어	1억 원 90:10	⇒	3억 원 95:5	
전문교육	1억 5천만 원 90:10		3억 원 95:5	
공통	보증료율 0.1%		컨설팅 비용 0.1% 부과	

* 창업관련 보증지원 통합하여 한도를 설정

2.6. 개인의 보증료율 부담 완화

- 보증료율은 제도 도입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1년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소 낮아졌음. 반면, 법인에 대한 보증료율은 높아지는 추세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전반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보증료 수입 감소폭이 클 수 있으며, 일괄적 인하는 농업인 개인 보다 법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저 보증료율은 신보·기보 대비 약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과도한 인하 시 수지 불균형,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기관의 지적 우려(감사원, 국회 등)
 - 1억 원 이하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2%p 추가 인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지원에서의 보증료 우대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는 한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 보증료율 체계 기준 구간을 확대

그림 5-5. 보증료율 개선방안

	현행			⇒	개선안		
	구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구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개인	1억원 이하	0.3	0.4		2억원 이하	0.3	0.4
	1~5억원 이하	0.4	0.6		2~7억원 이하	0.4	0.6
	5억원 초과	0.6	0.9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5	0.8		2억원 이하	0.5	0.8
	1~5억원 이하	0.7	1.0		2~7억원 이하	0.7	1.0
	5억원 초과	1.0	1.2		7~10억원 이하	1.0	1.1
					10억원 초과	1.1	1.2

2.7. 컨설팅 강화로 부실방지 및 경영지원

- 보증료 수입 중 일부를 컨설팅 그룹 구축 예산에 활용
 - 연간 보증료 수입 500억 원 중 10%를 컨설팅 관련 계정으로 적립하여 컨설팅 그룹 운용, 컨설팅 제공으로 농업경영체에게 환원하는 동시에 부실위험을 낮춰 기금건전성에 기여
 - 특히, 창업관련 보증지원의 경우 보증금액, 부분보증에서 우대함과 동시에 보증료를 이외에 추가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신보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전략과 마케팅, 생산관리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중임. 260여 외부 전문 인력이 신보와 제휴를 맺어 한 기업당 45일 간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60~100% 신보 부담으로 하고 있음. 연간 예산은 약 7억 원 정도임.

□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시 우대보증료율 ~ 0.2% 한도로 감하는 등 정부정책 자금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

2.8. 기술금융 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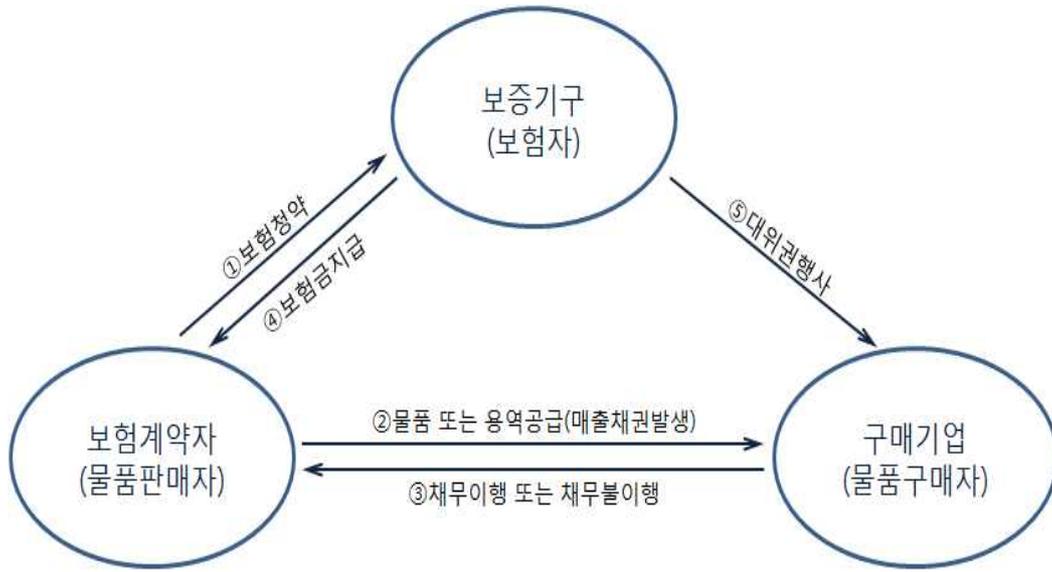
- 사업성숙기에 도달한 기술기업에 대해 투자지원을 하는 농식품모태펀드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전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는 부족함.
-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술가치 평가가 아닌 농협은행의 신용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농신보는 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해 보증심사 시 가점으로만 우대하고 있어 실제 우수기술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래 수익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면 농식품 R&D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R&D 투자의 결과지식을 실용화·사업화하는 데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함.
- 농림어업부문 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금융기관인 농신보에 별도 자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농신보는 정부의 추가 출연이 없고,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가치 평가와 같은 중장기 계획은 정부출연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음.

2.9. 매출채권보험상품 도입

- 농가가 산지유통인 및 가공기업과 계약재배, 시설이용 등 장기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음. 농어가의 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계약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완전계약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위한 계약거래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사업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시설설치 이행보증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6. 매출채권보험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신보 18개 권역센터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목적: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에 대한 농가의 수요 이용 실태 파악
- 내용: 총 32문항(기본 현황, 농가부채 현황,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현황)
- 기간: 2016년 9월~10월
- 대상: 18개 권역센터당 30 경영체 내외
- 방법: 농신보 권역센터 방문자에 한해 현지 면접조사
- 응답: 571 경영체 응답

부표 1-1. 권역센터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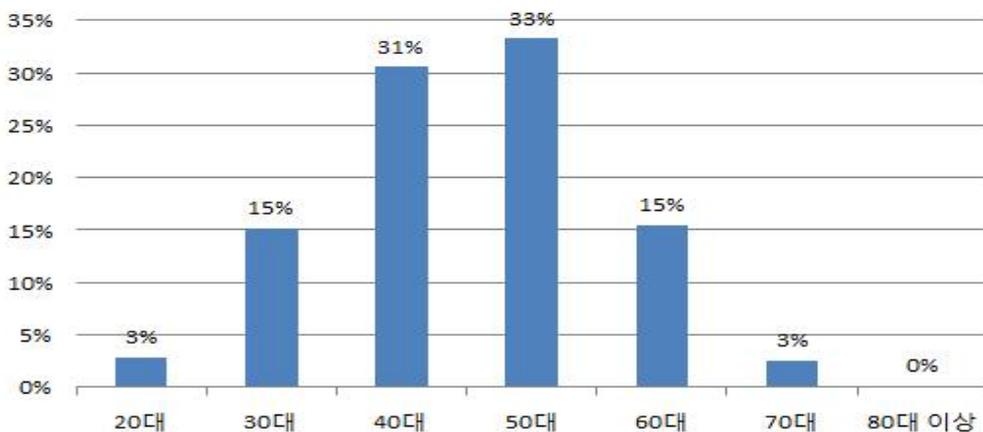
정읍	강릉	홍성	안동	통영	광주
30 (5.3)	30 (5.3)	31 (5.4)	32 (5.6)	40 (7.0)	35 (6.1)
의정부	상주	나주	해남	천안	원주
40 (7.0)	30 (5.3)	29 (5.1)	39 (6.8)	30 (5.3)	30 (5.3)
순천	포항	양산	인천	진주	남원
30 (5.3)	30 (5.3)	32 (5.6)	30 (5.3)	26 (4.6)	27 (4.7)

2. 응답자 일반 특성

2.1. 연령 및 자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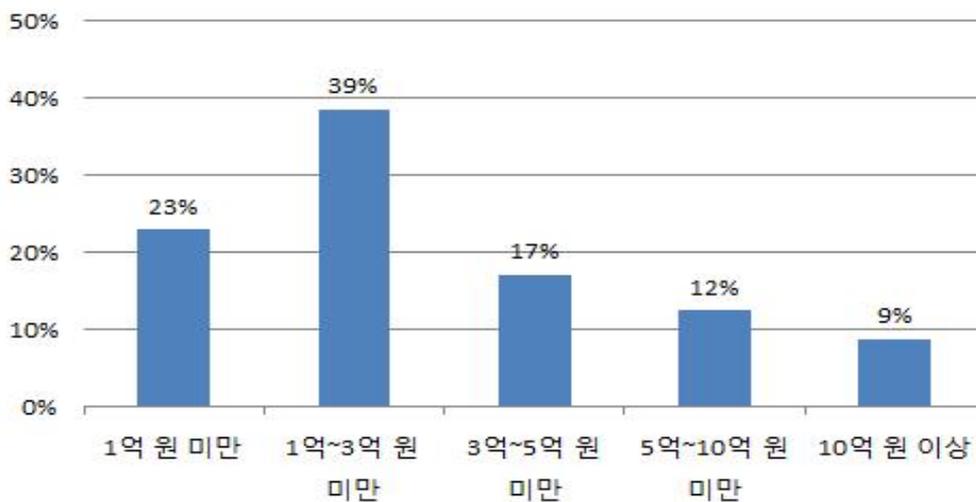
- 전체 571개 경영체 중 연령 문항을 응답한 556개 경영체의 경영주 연령은 21세부터 83세에 분포하며, 평균 연령은 49.5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50대 경영체가 33.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 (30.6%), 60대(15.5%), 30대(15.1%), 20대 (2.9%), 70대(2.5%), 80대 이상 (0.2%) 순임.
- 전국 통계와 비교해보면, 설문조사 내 경영주의 연령 비중과 전국 농가 경영주의 연령 비중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농림어업 경영주의 연령비중은 60대가 30.5%로 가장 높고, 이어서 70대(29.2%), 50대 (22.7%), 80대(8.6%), 40대 (7.7%), 30대(1.2%), 20대 (0.1%) 순이었음(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부그림 1-1. 조사 응답자의 연령



- 다음으로 조사 응답자의 토지, 건물, 현금 및 적금 등을 포함한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1억~3억 원 미만인 응답자가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570명 중 220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미만 131명(23%), 3억~5억 원 미만 98명(17.2%), 5억~10억 원 미만 71명(12.5%), 10억 원 이상 50명(8.8%) 순임.

부그림 1-2. 응답자의 자산규모



2.2. 영농현황

- 영농경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2)을 제외한 569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경영주가 162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130명(22.8%), 10~14년 102명(17.9%), 15~19년 89명(15.6%), 5~9년 86명(15.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설문조사 경영체 중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부표 1-2. 조사 응답자의 영농경력

(단위: 명, %)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합계
130 (22.8)	86 (15.1)	102 (17.9)	89 (15.6)	162 (28.5)	569 (100)

- 무응답과 다중응답을 제외한 559명 경영주의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축산이 36.3%로 가장 높으며, 채소 109명(19.5%), 수도작·전작 95명(17%), 과수 71명(12.7%), 특용작물 55명(9.8%), 화훼 26명(4.7%) 순으로 나타남.
- 농림업총조사(2015)와 비교하면, 축산(4.9%)과 수도작·전작(54.4%)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부표 1-4>와 같이 정읍, 홍성, 천안, 남원의 센터에서 축산 경영자에 편중되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부표 1-3. 조사 응답자의 영농형태

(단위: 명, %)

수도작·전작 (복합영농)	과수	채소	화훼	축산	특용작물	합계
95 (17)	71 (12.7)	109 (19.5)	26 (4.7)	203 (36.3)	55 (9.8)	559 (100)

부표 1-4. 권역센터별 조사 응답자 영농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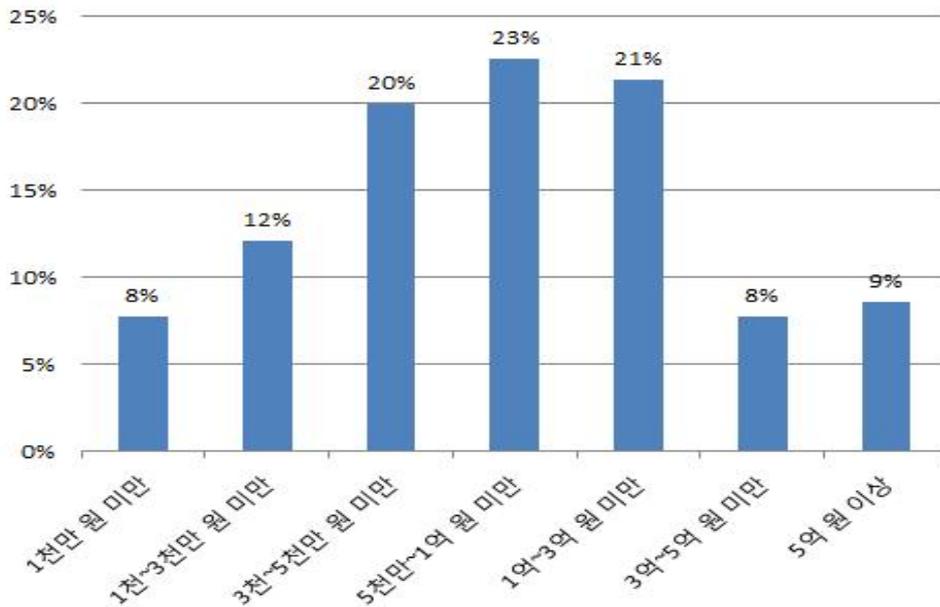
(단위: 명, %)

	수도작·전작 (복합영농)	과수	채소	화훼	축산	특용작물
정읍	1	0	0	0	29	0
강릉	10	2	5	2	3	6
홍성	1	1	5	1	21	2
안동	7	6	3	1	9	5
통영	9	4	10	2	7	8
광주	9	3	5	0	12	3
의정부	5	9	5	7	9	5
상주	5	10	5	0	6	3
나주	11	6	5	0	5	1
해남	14	4	5	1	10	5
천안	4	1	4	0	20	1
원주	2	3	15	0	5	5
순천	7	7	5	0	9	2
포항	3	7	10	0	9	1
양산	5	4	13	0	9	0
인천	1	1	1	12	14	1
진주	0	2	11	0	7	6
남원	1	1	2	0	19	1
합계	95	71	109	26	203	55

- 경영체의 영농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농축산물 총 판매액을 설문조사했으며, 조사결과는 <부그림 1-3>과 같음. 전체 571명의 경영주 중 작년 한 해 동안 농축산물 총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영주는 356명(62.3%), 1억 원 이상인 경영주는 215명(37.3%)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조사 참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임.
- 판매금액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5천 만~1억 원 미만인 경영체는 129명(2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억~3억 원 미만 122명(21.4%), 3천~5천 만원 미만 114명(20%), 1천~3천만 원 미만은 69명(12.1%)임.

- 이러한 수치는 전국 농가의 농축산물판매 금액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큼. 2015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중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농가는 86.1%,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2.7%, 판매액이 없는 농가는 11.2%임.
- 금액 구간으로 보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5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1천~3천만 원 미만 농가 18.16%, 3천~5천만 원 미만 농가 6.2%, 5천 만~1억 원 미만인 농가 5.2% 순임. 5억 원 이상인 농가는 전국 농가의 0.26%를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비율임.

부그림 1-3. 조사 응답자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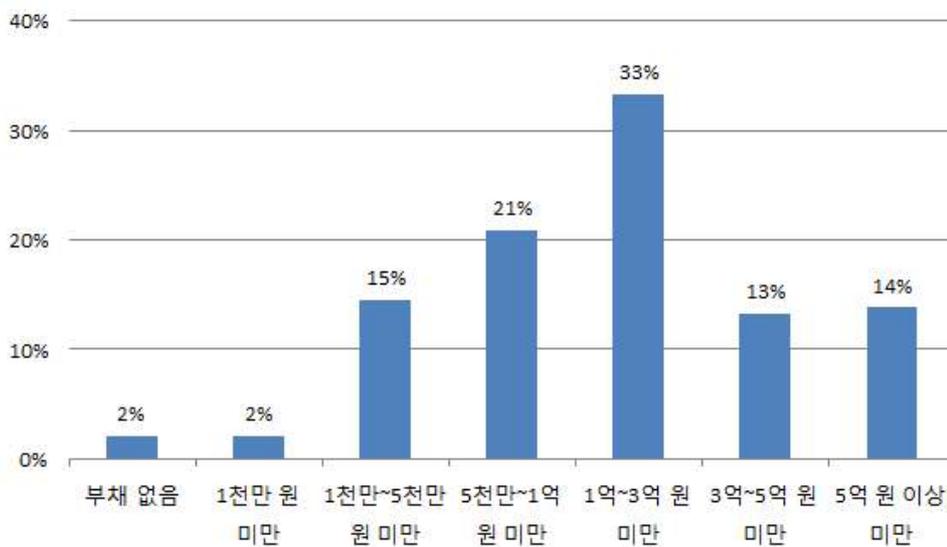


- 따라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3. 부채 규모

-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565명의 경영주 중 농가부채가 없는 경영주는 전체의 2.1%이며,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부채규모는 1억~3억 원(33.3%)임. 그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20.9%), 1천만 원~5천만 원(14.5%), 5억 원 이상(13.8%), 3억 원~5억 원(13.3%), 1천만원 미만(2.1%) 순임.

부그림 1-4. 조사 응답자의 부채규모



- 부채규모가 없는 경영주의 농사경력을 살펴보면<부표 1-5>, 5년 미만 3명(25%), 5~9년 3명(25%), 20년 이상 4명(33.3%)임. 전반적으로 경영주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5억 원 이상의 부채규모 비중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경력이 낮아질수록 1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의 비중이 높아졌음.
 - 특히 신규 취농으로 예상되는 농사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는 다른 경영주보다 5억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비중이 가장 낮음.

부표 1-5. 조사 응답자의 부채규모별 영농 특성

(단위: %, 명)

구분		부채규모						
		없음	1천만 미만	1천만 ~ 5천만	5천 ~ 1억	1억 ~ 3억	3억 ~ 5억	5억 이상
전체 응답자 수 (명)		12	12	82	118	188	75	78
농사 경력	5년 미만	25.0	50.0	31.7	22.0	25.0	21.3	6.4
	5~9년	25.0	0.0	14.6	14.4	17.6	9.3	17.9
	10~14년	16.7	41.7	13.4	13.6	15.4	24.0	24.4
	15~19년	0.0	0.0	9.8	22.9	14.9	14.7	17.9
	20년 이상	33.3	8.3	30.5	26.3	27.1	30.7	32.1
	무응답	0.0	0.0	0.0	0.8	0.0	0.0	1.3
영농 형태	수도작·전작	41.7	33.3	19.5	30.5	14.4	6.7	1.3
	과수	33.3	0.0	15.9	17.8	12.2	8.0	5.1
	채소	0.0	16.7	29.3	23.7	17.0	14.7	15.4
	화훼	8.3	16.7	7.3	1.7	4.8	8.0	0.0
	축산	8.3	16.7	17.1	14.4	36.2	52.0	73.1
	특용작물	8.3	16.7	9.8	8.5	12.8	10.7	2.6
	무응답	0.00	0.00	1.20	3.40	2.70	0.00	2.60
농축산물 판매액	1천만원 미만	25.0	16.7	18.3	5.1	8.0	2.7	1.3
	1~3천만원 미만	16.7	41.7	30.5	12.7	9.6	4.0	1.3
	3~5천만원 미만	25.0	25.0	28.0	40.7	14.9	10.7	1.3
	5~1억원 미만	8.3	8.3	20.7	33.9	28.2	13.3	9.0
	1~3억원 미만	25.0	8.3	2.4	6.8	31.4	42.7	16.7
	3~5억원 미만	0.0	0.0	0.0	0.8	7.4	21.3	15.4
	5억원 이상	0.0	0.0	0.0	0.0	0.5	5.3	55.1

- 부채규모별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경영주는 수도작·전작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 농가도 수도작·전작 종사 비중이 높았음.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의 비중이 높았음. 따라서 565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수도작·전작을 경영하는 농가보다는 축산 경영 농가가 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채가 큰 응답자의 경우 농축산물 판매액 또한 높았음.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영농 경영체의 경우 부채가 적었으며,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대규모 영농 경영체의 경우 높은 부채금액을 보임.

부록 2

농업정책금융 수요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표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1-1. 올해로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_____세

1-2. 귀하는 농사를 지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5년이 안 됐음 ② 5-9년 ③ 10-14년 ④ 15-19년 ⑤ 20년 이상

1-3. 귀하는 주로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수도작·전작(복합영농) ② 과수 ③ 채소
④ 화훼 ⑤ 축산 ⑥ 특용작물

1-4. 작년 한 해 동안 귀 농가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은 얼마였습니까?

-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3천만 원 미만 ③ 3천~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1억 원 미만 ⑤ 1억~3억 원 미만 ⑥ 3억~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2-4. 정부자금을 이용한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낮아 유리해서 ② 일반자금보다 거치 및 상환기간이 길어서
 ③ 일반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서 ④ 기타: _____

2-5.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현재 귀하가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빌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없음 ② 2천만 원 미만 ③ 2천만~5천만 원
 ④ 5천만~1억 원 ⑤ 1억~3억 원 ⑥ 3억~5억 원
 ⑦ 5억 원 이상

⇒ 농신보 신용보증 이용규모: 약 (_____)원

2-6. 귀하는 빌린 자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단기 농업경영(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등)
 ② 중장기 농업투자(기계/시설비, 대가축 구입비 등)
 ③ 재해피해복구
 ④ 농업 이외의 사업자금
 ⑤ 가계비(주택자금, 학자금, 생활자금 등)
 ⑥ 다른 부채(빚)를 갚는 데 사용

2-7. 귀하는 자금을 주로 어디에서 빌리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지역농협
 ② 시중은행(농협중앙회 등 포함)
 ③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④ 사채 이용(개인 간 거래)

2-8. 귀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만큼의 금액을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 괄호 안에는 대출받지 못한 금액이 신청 금액 가운데 약 몇 %를 차지하는지 적어주십시오.

- ① 없다. ② 일부 금액을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
- ③ 전액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

⇒ 신청대출금 가운데 대출받지 못한 금액은 약 (_____)%를 차지

2-9. 귀하가 신청한 만큼의 금액을 모두 빌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택하여 주십시오.(우선순위로 2가지)

- ① 기존 부채 과다 ② 연체 기록 ③ 낮은 신용등급(신용불량 등)
- ④ 담보 능력 부족 ⑤ 기타: _____

2-10. 귀하는 농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11. 귀하가 농신보 신용보증을 거절당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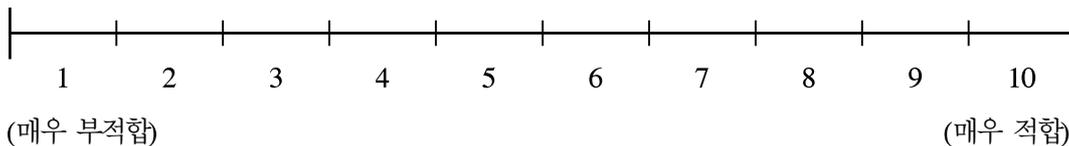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기존 부채 과다 ② 연체 기록
- ③ 낮은 신용등급(신용불량 등) ④ 영세한 영농규모
- 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받음 ⑥ 기타: _____

3. 정책금융 및 농신보 이용 실태 및 의견

3-1. 귀하는 농신보 심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적합함은 10점, 매우 부적합함은 1점으로 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3-12. 농업인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 귀하는 농가가 대출금의 최소 몇 % 정도를 정부 공급자금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3-13. 귀하는 농가에서 대출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금의 최소 몇 % 정도를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3-14. 귀하는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중 어느 경우에 농신보 보증 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정책자금 대출 시 더욱 도움 ② 일반 금융기관 대출 시 더욱 도움

3-15. 귀하는 농신보 이외의 보증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16. 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증액 ② 농신보 보증심사 시 서류가 많아서
 ③ 보증료율 ④ 농신보 보증심사 시 기간이 오래 걸려서
 ⑤ 보증한도 ⑥ 농신보를 잘 몰라서

부록 3

농신보 보증료율 체계 변화

일 자	내 용																		
제도창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액의 연 1/100 																		
1973.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액의 연 1/1,000 																		
197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부 용자금 (근보증은 보증금액의 연 5/1,000) 																		
1992.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약정기간 3년 이상은 연 3/1,000 																		
1995.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부 대출금액의 연 3/1,000 (단, 보증약정기간 3년 이상은 연 2/1,000) 																		
1999.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보증료율 : 기준료율 + 신용도별 가감요율 ($\pm 0.2\%$) 기준요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농어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농어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0.2%</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법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6%</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신용도별 가감요율은 보증금액 1억 초과 경우 적용)</p>	항 목	농어업		비농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이하	연 0.2%	0.3%	1억 초과	0.4%	0.5%	법 인	1억 이하	0.4%	0.5%	1억 초과	0.6%	0.8%
항 목	농어업		비농어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 이하	연 0.2%	0.3%																
	1억 초과	0.4%	0.5%																
법 인	1억 이하	0.4%	0.5%																
	1억 초과	0.6%	0.8%																
2001.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중 부분보증 적용대상에 대한 할증보증료율 적용 - 보증료징수준칙에 의한 보증료율 + 연 0.2%p의 할증요율 적용 																		
2002.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 1억 원 초과외의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시 할증보증료율 적용 - 보증료징수준칙에 의한 보증료율 + 연 0.2%p의 할증요율 적용 																		

일 자	내 용																								
2004. 1. 1	<p>[보증료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료율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율 최저 0.3%, 최고 1.6% 범위 내에서 기준보증료율에 신용도별 가감보증료율을 합산 - 보증금액 5억 원 초과 기준보증료율을 신설하고, 민간 RPC 원료곡매입 정책자금에 적용하는 별도 기준보증료율 제도는 폐지 • 기준보증료율 <table border="1" data-bbox="477 779 1305 102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3%</td> <td>0.4%</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4%</td> <td>0.6%</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6%</td> <td>0.9%</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5%</td> <td>0.8%</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7%</td> <td>1.0%</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0%</td> <td>1.2%</td> </tr> </tbody> </table>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5%	0.8%	1억원 초과	0.7%	1.0%	5억원 초과	1.0%	1.2%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5%	0.8%																						
	1억원 초과	0.7%	1.0%																						
	5억원 초과	1.0%	1.2%																						
2006.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보증료율 0.2%p 인상 (0.5% ~ 1.4%) <table border="1" data-bbox="477 1169 1305 141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5%</td> <td>0.6%</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6%</td> <td>0.8%</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8%</td> <td>1.1%</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7%</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9%</td> <td>1.2%</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2%</td> <td>1.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연대보증인 미 입보로 인한 0.2% 할증 보증료율 제도 폐지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5%	0.6%	1억원 초과	0.6%	0.8%	5억원 초과	0.8%	1.1%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5%	0.6%																						
	1억원 초과	0.6%	0.8%																						
	5억원 초과	0.8%	1.1%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2011. 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대한 기준보증료율 0.2%p 인하 (0.3% ~ 0.9%) <table border="1" data-bbox="477 1572 1305 1814">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농림어업 (1차 산업)</th> <th>비농림어업 (2·3차 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연인 및 비법인단체</td> <td>1억원 이하</td> <td>0.3%</td> <td>0.4%</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4%</td> <td>0.6%</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0.6%</td> <td>0.9%</td> </tr> <tr> <td rowspan="3">법 인</td> <td>1억원 이하</td> <td>0.7%</td> <td>1.0%</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0.9%</td> <td>1.2%</td> </tr> <tr> <td>5억원 초과</td> <td>1.2%</td> <td>1.4%</td> </tr> </tbody> </table>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구 분		농림어업 (1차 산업)	비농림어업 (2·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 인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2012.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보증료율 : 0.1% (단일요율 적용) 																								

부록 4

신용조사 세부내용

1. 간이신용조사(신규)

가. 심사방법

- 필수확인사항에 대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
- 필수확인사항에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1. 보증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3. 최근 3월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5.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경매신청 등) 여부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7. 보증조건(특약사항)
8. 보증서류의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10. 갱신신용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나. 간이신용조사 필수확인 사항

1) 보증 대상의 적정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등 - 직장인 보증제한 : 연소득 37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확인서 • 농지원부 • 어업면허장 • 영농확인서 (현지출장복명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업에 소요되는 자금 - 가계, 생활자금 등 비농어업용 자금은 보증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상담서 • 정책자금 배정 문서 • 기타 대출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당 보증 총한도(타 신보 보증잔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원장조회표 • 신용보증 고객종합정보조회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기준별 보증대상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기준별 간이신용조사 대상 보증금액 이내 여부 확인 	

3) 최근 3월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의 등록 사실 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 구상채권의 채무자 또는 당해 채권의 연대보증인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인과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경영을 하는 가족까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고객종합 정보조회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상거래 연체채권 포함)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보증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여부 및 타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종합신용 정보보고서 • 여신관련조회표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관리대상거래처 등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해당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의하여 특수채권보유자 또는 여신취급주의 대상자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종합신용 정보보고서 • 신용정보조회표

4)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인과의 면담, 제출서류, 현장확인 등을 기초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5) 주택 및 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의 권리침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최종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를 함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대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신청인 소유의 주사업장 - 주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인 경우 보증신청인 소유의 사업장 중 장 규모가 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 • 어업면허장 • 영농확인서 •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주사업장이 보증신청인 소유가 아닌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경영인 가족의 소유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도 부적정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6)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조사내용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 연대보증 제도 폐지 ○ 법인 : 경영실권자 1인 입보(단, 경영실권자인 대표가 2인 이상 시 모두 입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 보유자 - 배우자, 인척 포함 총 지분 30% 이상 보유자 -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출자자)명부

7) 보증조건(특약사항)

조사내용	확인서류
○ 보증조건(특약사항) 부여의 적정성 - 등기등록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증 : 근저당권 설정과 본보증 우선해지 - 등기등록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증 : 확정일자부 양도 담보 취득 - 특약조건부여를 생략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여코자하는 경우 보증센터에 보증특약조건 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기타 시설자금 관련 증빙 서류
○ 기 부여된 보증조건 이행의 적정성 - 금차 보증취급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보증인의 기보증에 부여된 보증조건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원장조회표 • 기대출 서류

8) 보증서류의 작성

조사내용	확인서류
○ 시설자금 투자분석표 작성 내용의 적정성 - 시설자금 보증의 경우 작성	

9)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조사내용	확인서류
○ 면접 또는 상담과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검토	

2. 일반/정식 신용조사(신규)

가. 심사방법

- 간이신용조사 필수확인사항의 주요 심사항목 외에 CB평가등급제한 및 차입규모에 대한 심사항목 추가
- 보증심사항목에 부적정 항목이 없는 경우 보증지원 가능

- I. 보증 대상
 - 1) 보증심사기준 적용의 적정성
 - 2) 보증대상자의 적정성
 - 3) 보증대상자금의 적정성
- II. 보증 금액
 - 1) 보증심사기준별
 - 2) 총 보증한도
- III. 금융거래 신뢰도
 - 1) 대출금 또는 상거래채무 연체
 - 2) 신용관리대상거래처
 - 3) 대위변제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 4) NICE CB평가 결과 9~10등급 해당 여부
- IV. 사업장·주택의 안정성
 - 1) 부속토지 확보의 적정성(시설자금)
 - 2) 휴·폐업 여부 및 영업 중일 것
 - 3) 경영분규 여부
 - 4) 사업장 권리침해 여부
 - 5) 거주주택 권리침해 여부
- V. 채권보전
 - 1)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 2) 시설자금 보증조건 부여의 적정성
 - 3) 기타 보증조건 부여의 적정성
 - 4) 기 부여된 보증조건 이행의 적정성
- VI. 차입규모 (일반신용조사 생략)
 - 1) 총차입금은 자기자본의 600% 이내
 - 2) 운전자금차입금은 매출액의 1/2 이내
- VII. 부실 가능성
- VIII. 예외보증 지원기준 충족 여부

나. 심사 검토항목

1) 일반신용조사

- NICE-CB 등급의 제한 : 9~10등급
 - 자연인에 대한 일반보증으로 신규신용조사를 적용할 경우
- 사업장의 권리침해 여부
 - 간이신용조사와는 달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2) 정식신용조사

- 차입규모 제한
 - 금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함)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차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
 - 한도거래여신은 조사일 현재의 잔액을 계상하되, 마이너스대출은 약정한도 전체를 차입금으로 계상
 -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의 순수 가계자금대출은 계상제외
- 예외보증지원기준 충족여부
 - 민간 RPC: 보증한도는 매출액의 1/2과 자기자본의 600% 해당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등급 3등급 이상으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에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규제 및 권리침해 사실이 없을 것
 - 운전자금 심사의 경우 총차입금(금차 포함)은 당기매출액 이내일 것
 - 최근 2년간 순손실이 시현되지 않았을 것

<참고. 예외보증 대상>

-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하며 아래 1,5,6,7의 대상 중 법인은 50억 원으로 확대
- 1. 민간 RPC의 원료곡매입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
-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자금 및 원료매취자금에 대한 보증
- 3.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법인에 대한 보증
- 4. 「수출 및 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증
- 5.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증
- 6.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증
- 7. 「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증
- 8. 농수산물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법인에 대한 보증

부록 5

해외사례 조사

1. 독일

1.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신용보증은 보증은행에 의해 이루어짐.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이며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함.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름.
 - 현재 전국에 걸쳐서 각 주마다 1개씩 설립된 총 16개 민간보증은행이 각 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의 보증은행은 정부의 출자나 출연 없이 수공업협의회, 동업자 연맹, 은행협회, 보험회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금융기관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 민간사업주체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보증은행들은 일반은행의 대출 및 수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업무영역이 보증업무로만 국한됨.

- 보증은행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보증 지원과 부흥은행의 저리자금지원으로 신용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짐.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의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보증액의 일부를 재보증하여 보증은행의 손실 발생분을 보완해줌.

- 중소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은 보증은행에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보증금액분에 대해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이며(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나머지 20%는 대출중개기관의 부담
 - 주정부은행이나 연방정부은행, KfW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있음.

부표 5-1. 독일 보증제도의 공적 지원방식 및 지원효과

공적지원방식	지원내용	지원효과
재보증	민간보증기관에 보증제공	보증기관의 신용위험감소 및 보증여력 증가
저리자금 대출	저리의 정책자금을 보증기관에 대출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경감 보증료율 인하로 중소기업 보증이용의 접근성 증대
무상출연	무상출연에 의한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	재보증, 저리자금 대출에 비해 비용부담이 큼
세금혜택	보증기관의 세금감면 혹은 면제	이익의 재투자 가능

-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 보증신청하고 이를 다시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은행에 직접보증을 신청함.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은행은 보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80%의 부분보증을 지원함. 나머지 20%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인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함.
- 보증대상 기업, 업종,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 유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증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보증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보증 업종은 수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업종 등 다양함.
 - 보증은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투자목적대출, 기업인수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짐.
- 대부분의 거래중개기관은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역은행, 즉 저축은행, 협동은행 등임.
- 보증제도의 운영재원은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료 및 등록료 수입 외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부표 5-2. 독일 보증협회의 업종에 따른 업체 수 및 보증잔액(10년말 기준)

(단위 : 개, 백만 유로)

구분	전체	수공업	도·소매	제조업	원예업	숙박업	운송업	서비스업	전문직
업체수	7,983	2,015	1,785	1,110	52	567	162	1,755	537
비율(%)	100.0	25.2	22.4	13.9	0.7	7.1	2.0	22.0	6.7
보증잔액	1,301.0	238.8	281.7	304.1	4.5	83.0	35.8	284.3	253.2
비율(%)	100.0	18.3	21.6	23.4	0.3	6.4	2.8	21.9	19.5

부표 5-3. 독일 보증협회 산하 총 보증기업 수 및 총보증액

(단위 : 개, 백만 유로)

연도	보증기업		총보증	
	기업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년	6,950	1.4%	1,095.6	-0.9%
2007년	7,212	3.8%	1,151.9	5.1%
2008년	6,766	-6.2%	1,072.8	-6.9%
2009년	7,745	14.5%	1,261.3	17.6%
2010년	7,983	3.1%	1,301.0	3.1%

○ 초기자본비용이 적게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보증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음.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보증은행이 2010년 말 현재 총 보증잔액의 25.3%와 총 보증기업의 31.7%를 보유하고 있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종업원 20명 이상의 기업체가 8,800개로 금속공학, 기계공학 등 초기자본비용이 적게 필요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여 독일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활발한 주임.

부표 5-4. 지역보증은행별 보증업체 및 잔액분포(2010년말 기준)

(단위 : %)

주 명	보증업체	보증잔액	평균 보증비율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31.7	25.3	62.3
바이에른(Bayern)	6.4	9.1	68.9
베를린(Berlin)	4.7	3.9	78.3
브란덴부르크(Barndenburg)	5.3	7.0	77.3
브레멘(Bremen)	1.3	1.3	58.6
함부르크(Hanmburg)	7.7	6.5	66.1
헤센(Hessen)	3.8	4.9	71.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n)	2.7	2.6	78.0
니더작센(Niedersachen)	5.4	5.8	73.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6.7	10.5	77.9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1.5	1.3	65.2
자를란트(Saarland)	1.0	0.9	72.0
작센(Sachsen)	4.7	4.6	78.2
작센-인할트(Sachsen-Anhalt)	4.1	5.1	79.7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lg-Holstein)	8.9	5.2	66.9
튀링겐(Thüringen)	4.2	5.9	77.8
합계	100.0	100.0	-

2. 일본

2.1. 신용보증(중소기업)

□ 신용보증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 일본의 신용보증제도는 52개 지역별 신용보증협회(CGIC)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공고(JFC)가 신용보증리스크를 재보증(신용보험)의 형태로 보완해주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과 중앙정부의 신용보험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이원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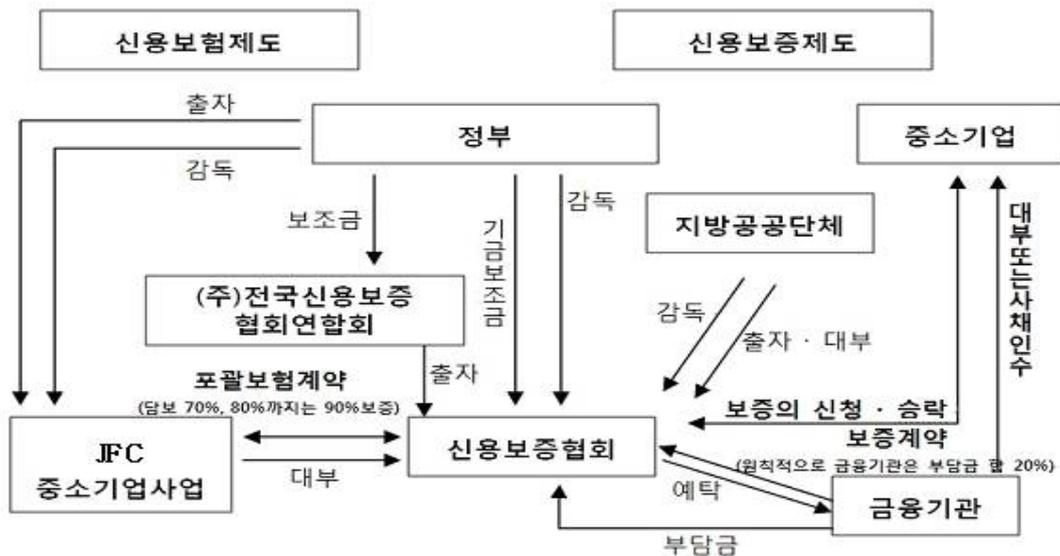
- 일본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된 52개의 신용보증협회를 통해서 수행됨.
 - 신용보증협회가 신용보증을 승인한 이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동 대출은 일본공고의 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됨.

- CGIC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JFC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구조로, 재보증(신용보험)에 의해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액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공고에 대위변제금액의 70~90%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용보증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해서는 일본공고가 신용보험(재보증)의 보험금 형태로 손실금의 70~80%를 보전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재보증기관인 JFC에만 출연하고 원보증기관인 신용보증협회(Credit Guarantee Corporation: CGC)에는 직접출연하지 않음.
 - 다만 보증협회기금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CGC에 출연하게 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보증 중 경영안정화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손실보전금을 교부하고 경영안정화 관련보증의 손실발생시 10%를 보전하는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음.

- 보증기관인 CGC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부그림 5-1. 일본의 신용보증제도



-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저리의 대출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 지원을 받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등은 신용보증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자, 출연, 직접지원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
 -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

- 신용보증협회의 재원은 JFC의 저리대출 및 재보증, 지방정부의 출연, 금융기관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출연비중은 지방정부가 78%, 금융기관이 22% 수준이며, 지방정부출연의 약 50%는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
 - 저리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에 의해 신용보증부 대출의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촉진하게 됨.
 - 중앙정부는 JFC의 재보험준비금 충당,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보증제도를 지원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보면, 2억 엔과 10년 이내가 기본이며, 일반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엔, 조합의 경우 4억 엔임.
 - 신용보험의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인 경우에는 해당보증에 한해 일반보증(개인 및 법인 2억 엔, 조합 4억 엔)과 무담보 보증한도액(8천만 엔)을 합산한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증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0년 이내임.
 - 장기자금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이용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상환보증방식으로 보증제도를 운용

부표 5-5.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

최고보증한도	보증금액	담보	재보험 부보율
2억 8천만 엔	2억 엔	유	70%
	8천만 엔	무	80%

부표 5-6. 신용보증협회의 보증기간

구 분		자금용도	보증기간
개별보증	대출보증	운전·시설	원칙적으로 10년이내 다만, 장기경영자금의 경우 운전 15년 이내, 설비 20년 이내
	어음보증	운전	30일 이상 6개월 이내(어음할인)
근보증		운전	1년 또는 2년 이내

- 일본 정부는 차등보증료 시스템과 부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의 기업신용등급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음.
 - 정책성이 강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
 - 2006년 4월부터는 이전의 단일 보증료 체계에서 신용보증료를 보증의 성격,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보증료 체계로 전환
 - 동경신용보증협회의 경우 일반보증에 대해 연 0.3%~1.9%로 차등 적용
-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 간 책임공유제도 및 80%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게도 20%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책임공유제를 운용하여 80%의 보증비율이 적용
 - 창업관련보증, 소액영세기업보증 등 정책성이 강한 경우에는 전과 같이 100% 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의 보증공급은 19조 5,8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3%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14조 1,723억 엔을 공급
 - 신용보증잔액은 2001년 37조 120억 엔에서 2007년에는 29조 3,682억 엔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35조 8,507억 엔으로 크게 증가

- 대위변제액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임.
 - 운용배수는 25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1년 3월말 전체 중소기업의 약 37.5%에 해당하는 약 157만개 기업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약 14%가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

부표 5-7. 일본 52개 신용보증협회의 운용실적

(단위 : 억 엔)

구 분	기본재산 (A)	보증잔액 (B)	보증공급	대위변제	운용배수 (=B/A, 배)	보증이용률(%)	
						업체수	금액
2001년	14,002	370,120	132,258	12,350	26.4	44.9	11.7
2002년	13,670	331,885	140,427	12,604	24.3	42.7	11.3
2003년	13,445	311,022	151,964	10,217	23.1	39.8	11.9
2004년	13,437	297,433	131,629	8,279	22.1	37.5	11.7
2005년	13,637	287,964	129,802	6,871	21.1	35.3	11.3
2006년	13,949	292,661	136,591	6,852	21.0	37.3	11.3
2007년	14,278	293,682	130,273	7,943	20.6	37.5	11.4
2008년	14,388	339,192	195,811	10,358	23.6	37.4	13.4
2009년	14,263	358,507	166,252	11,420	25.1	37.9	14.2
2010년	14,856	350,683	141,723	9,366	23.6	37.5	14.0

2.2. 신용보증(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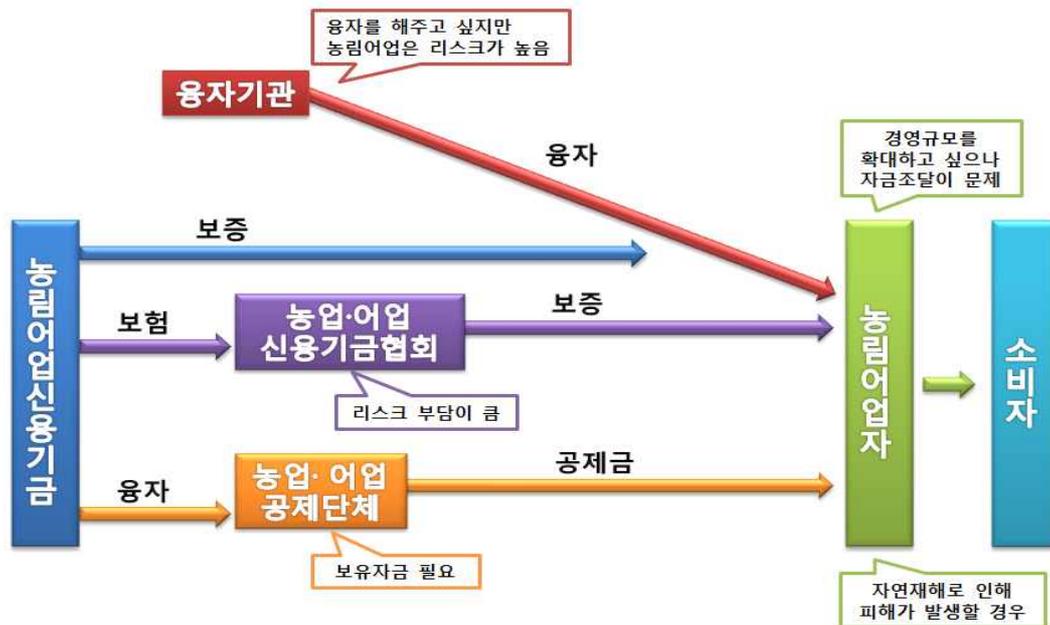
□ 농업 신용보증 보험제도의 구조

- 이 제도는 농업협동조합, 신용조합연합회(信連),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 등이 농업인 등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입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고,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신용보완 제도
-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농업신용기금협회(약칭 ‘기금 협회’)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농업인 등의 채무를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약칭 ‘신용기금’)이 승인하는 보증보험에 의해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협회는 업무방법서에서 피보증인에 관하여 보증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음.
 - (1) 특정 자금
 - 해당 자금이 정하는 대출 한도액
 - (2) 특정 자금 이외
 - ① 개인 3,000만 엔
 - ② 개인 외 농업을 영위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 5,000만 엔
 - ③ ① 및 ② 이외의 자 15,000만 엔
- 협회의 보증범위는 도도부현 협회마다 차이가 있음.
-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을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함.
 - 협회가 대위변제를 하여 대출기관은 채무상환되기 때문에 불량이 없음.
 - 보증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낮은 보증료율을 부담

- 협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차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구상권 회수는 차입자의 경영상황·생활상황에 따라 무리 없는 회수를 도모
- 또한 협회는 대위변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기관의 농림어업신용기금 및 전국농협보증센터에 보증보험 및 재보증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구조임.
 - 즉, 신용기금에 70%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채무부담이 30%에 불과함.
-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유통이 어려운 농림어업자의 신용도를 보완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 <부그림 5-2>와 같이, 국가의 시책과 연계하여 농업신용기금협회 및 어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무보증보험, 임업자 등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보증 실시
 - 또한 뜻하지 않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공제조합 등이 공제금 등을 빠르고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대해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실시
- 신용기금의 보험금은 대출금의 미회수 금액의 70%임(이자, 지연손해금은 미포함).
- 대출기관은 원칙적으로 부분보증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보증이용자 부담은 다양한 출연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용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조합, 금고 등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보험을 실시할 경우, 각 대출기관의 이용액에 따라 교부금을 받는 구조
 - 구체적으로는 농업대출보험에 대출액의 20분의 1을 신용기금에 납부하고, 해당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경우 교부금을 되돌려줌.
 - 대출기관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보험금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음.
 - 대출기관은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한 대출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부그림 5-2. 신용기금의 역할



주: 이 외에도, 저리대출업무 및 기탁(寄託)업무도 실시하고 있음.
 자료: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http://www.jaffic.go.jp>)

○ 홋카이도협회

부표 5-8. 정회원을 위한 농업·생활자금

자금명	지불방법	일괄 선불 분할 선불	
		일반요율	비율
농업 근대화 자금		0.34	0.24
일본 정책 금융 공고 자금		0.34	0.24
	농업경영 기반 강화자금	0.40	0.30
	중·청년 등 취농 자금	0.29	0.19
	중·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0.45	0.35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		0.34	0.24
축산 특별 자금		0.50	-
농업 경영 부담 경감 지원 자금		0.50	-
가축 질병 경영 유지 자금		0.42	-
홋카이도 농업 재해 자금		0.34	-
농가 경제 개선 자금(농업자금)		0.40	0.30
농가 경제 개선 자금(생활자금)		0.40	-
단기 운전 자금(최고 대출 제외)		0.40	0.30
단기 운전 자금(최고 대출)		0.40	-

부표 5-9. JA의 준 조합원의 생활 관련 자금

자금의 종류	설명
JA 모기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거주용 주택·토지의 취득 또는 중개촉에 필요한 자금
JA 개선 용자	조합원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의 중개촉, 보수 등의 주거 시설에 필요한 자금
JA 임대 주택 대출	조합원의 임대 주택(포함 점포 병용 임대주택)건설, 개축 및 보수 수리에 필요한 자금
JA 무료 대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자금 (사업자금, 부채정리 자금 제외)
JA 자동차 용자	조합원 및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구입 등의 자금 (영업용 자동차 제외)
JA 학자금 대출	취학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비 및 아파트 집세 등
JA 카드로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부표 5-10. 농업인 등 농업경영자금·생활자금·농의사업자금

자금의 종류	설명	
농업 근대화 자금	농업 근대화 자금 융통법에 규정된 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 자금	일본정책 금융공고에서 정하는 다음의 자금 소요 전대 자금 (1) 진흥 산촌·과소 지역 경영 개선 자금 (2) 담당자 육성 농지 집적 자금 (3) 농립 어업 시설 자금 (공동 이용 시설·주무 대신 지정 시설) (4) 농업 기반 정비 자금 (5)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 (6)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7) 농업 개량 자금	
특정 농산 가공 자금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개선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산간 지역 활성화 자금	국가가 정하는 요강 (계통 등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산간 지역 활성화 자금 융통에 관한 조치 요강)에 따라 융통 자금	
홋카이도 농업재해 자 금	농업 재해 용자 촉진 규칙에 따른 피해 농민에 대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농가 경제 개선 자금	정 조합원의 경영 개선, 생활 개선에 필요한 자금	
단기 운전 자금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일정한 한도액(누계액)을 정하여 융통 자금	
가축 질병 경영 유지 자금	1) 경영 계속 자금	가축 전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축의 살처분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축산 경영의 계속, 재개 및 유지에 필요한 가축의 도입, 사료, 영농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하는 자금
	2) 경영 재개 자금	
	3) 경영 유지 자금	
축산 특별 자금	농업 경영의 안정과 후계자의 원활한 경영 승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축산 사업단의 보조 또는 이자 보급이 주무 대신의 지정 기금에서 특별 융통 조성사업 실시요강에 정하는 자금	
농업 경영 부담 경감 지원 자금	홋카이도 농업 경영 자원 활용 종합대출 취급요령에 따라 농업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과거 채무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말 경영 기반강화 자 금	말 경영 기반강화 자금 융통사업에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이 곤란해지고 있는 경종마 경영에 대한 상환 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자금	
임대 주택 자금	정 조합원의 임대주택(포함 점포 병용 임대주택)건설, 개축 및 보수 수리에 필요한 자금	

○ 오카야마현 협회

부표 5-11. 제도 자금

자금 이름	주요 사용처	보증료율
농업 근대화 자금	농업 시설, 농기구, 가축 도입 자금	담보 0.19%~0.29% 무담보 0.45%~0.55%
농업 개량 자금	신작물에 대처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농가 경영 자금	담보 0.19%~0.29% 무담보 0.45%~0.55%
신규 취농자 등 농지 취득 자금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의 취득 자금	무담보 0.45%~0.55%
금융공고자금 (슈퍼 L 자금 등)	농지 취득, 농업 시설 및 농기구의 개량취득 자금	담보 0.19%~0.29% 무담보 0.45%~0.55%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	농업 경영 개선 계획 또는 종합화 사업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운전 자금	담보 0.19%~0.29% 무담보 0.45%~0.55%
청년 등 취농 자금	새로운 농업 경영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	무담보 0.19%~0.29%

부표 5-12. 제도 자금 이외

자금 이름	주요 사용처	보증료율
JA 농기계 하우스 대출	농업용 하우스 및 농기구 취득 자금	무담보 0.60%~0.70%
JA 종합 계획	농업 시설, 농기구, 가축 도입 자금	담보 0.20%~0.30% 무담보 0.60%~0.70%
JA 영농 대출	영농 자금	무담보 0.80%

부표 5-13. 농외 사업 자금

자금 이름	주요 사용처	보증료율
JA 임대 주택 대출	① 임대주택의 건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임대 업무용 건물의 건설 자금 및 임대 주택 자금 차환에 필요한 자금	0.195%
JA 종합 계획 (農外)		0.25%
JA 종합 계획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자금)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자금	담보 0.20% 무담보 0.25%

부표 5-14. 주택 관련 자금

자금 이름	주요 사용처	보증료율
JA 모기지	① 주택신축·구입(중고주택 토지가 있는 주택 및 콘도 포함)자금 ② 주택매매용 부지(5년 이내의 신축예정에 한함)자금 ③ 주택의 증개축·개조·보수자금 ④ 기타금융기관에서 대출 중 주택자금의 차입금	0.10%~0.26%
JA 주택 지원 계획	JA 모기지에 준한다.	0.19%~0.29%
JA 개선 용자	① 주택의 증개축·개조·보수자금 ② 주택에 부대시설 등의 주거 시설 자금	0.35%~0.50%
JA 종합 계획	① 주택신축·구입(중고주택 토지가 있는 주택 및 콘도 포함)자금 ② 주택매매용 부지(5년 이내의 신축예정에 한함)자금 ③ 주택의 증개축·개조·보수자금 ④ 기타금융기관에서 대출 중 주택자금의 차입금 ⑤ 주택에 부대시설 등의 주거시설 자금	0.35%~0.50%

부표 5-15. 생활 관련 자금

자금 이름	주요 사용처	보증료율
JA 자동차 용자	① 자동차·오토바이구입(중고차 포함) 및 구입에 따른 비용 ② 정비·차량·면허취득자금, 자동차용품의 구입 자금 ③ 주차장 건설 자금(100 만원 이내)	0.50%~0.70%
JA 학자금 대출	취학 자녀의 입학금·수업료·학비·아파트 집세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자금	0.50%~0.90%
JA 종합 계획	① JA 자동차 용자에 준한다. ② JA 학자금 대출에 준한다. ③ JA 무료 대출에 준한다.	1.20%~1.30%
JA 카드론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1.40%~1.60%
JA 와이드 카드론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1.40%~1.60%

부록 6

타기관 우대보증 사례

1. 신보

1.1. 금융기관 특별출연

□ 추진배경

-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업무협약 주요내용

-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정운용배수 내 신용보증 공급
 - 참여 현황은 국민은행, 농협 외 10개 은행의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 우수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9개의 업무협약 총 4,500억 원 규모

□ 특별출연 협약보증 주요내용

- 대상기업 : 출연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
- 대상자금 : 각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운용기한 : 출연금 대비 협약보증한도 공급시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출연금이 소진될 때 까지

□ 우대사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보증비율 90% 적용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 차감 적용	대출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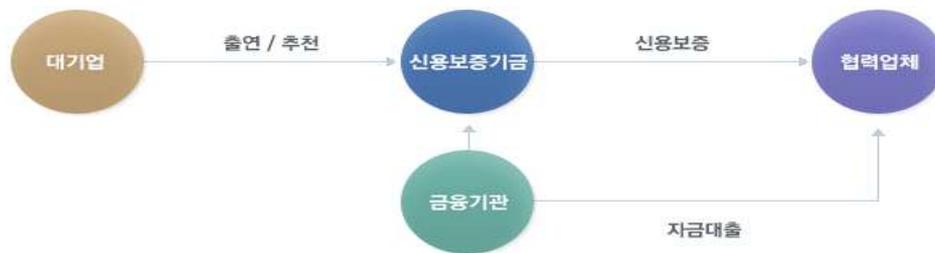
1.2.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상생보증 프로그램)

□ 추진배경

- 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특별 출연에 따른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보증을 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모델 개발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기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모범제시

□ 업무협약 기본구조

- 대기업·금융기관의 출연금은 총 916.5억 원(1차 420억 원, 2차 496.5억 원)이며, 주요 참여자는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 외 6개 기업과 우리, 기업, 신한, 외환 은행이 있음.
- 보증기관은 16.5배 범위 내(약 1조 5,200억 원)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 대상기업

- 출연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출연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업체 및 2·3차 협력업체 포함
- 「보증심사운용요령」상 선별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가능

□ 우대사항

- 「부분보증 운용기준」에 불구하고 100% 적용
- 차감보증료율 : -0.3%p

□ 보증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1.3. 대기업·금융기관 특별출연(동반성장 협약보증)

□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성장 지원

□ 업무협약 기본구조

- 대기업이 신보에 특별 출연하며, ‘금융성 보증’과 ‘비금융성 보증’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





□ 협약보증 출연기업

- 금융성 보증
 - 두산인프라코어, SK건설, 만도 외 9개사에서 43.8억 원 출연
- 비금융성 보증
 - 롯데케미칼 20억 원, SK종합화학 3억 원 출연

□ 대상기업 및 대상채무

-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
- 운전자금(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제외)

□ 우대사항

- 금융성보증 : 보증비율 90%, 보증료 0.3% 차감
- 비금융성 보증 : 보증료 0.3% 차감

□ 보증운용기한

- 출연기업별 보증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2. 기보

2.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

□ 대상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 분야

분야	지원 대상(해당 업종 등)
지식문화 창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퀵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 창업	대표자가 만 40~59세 이하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보증금액 5억 원까지)
 - 보증금액 1억 원까지는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운용(2억 원 이내)
 - 지식재산권 건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한도 가산 가능

대상 지식재산권(2년이내)	건별 추가한도
특허권	30백만 원
특허출원	20백만 원
실용신안권	15백만 원
기타 지식재산권	10백만 원

2.2.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지원대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대상채무

- 사업재편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식재산(IP)인수, 연구개발(R&D)·사업화·양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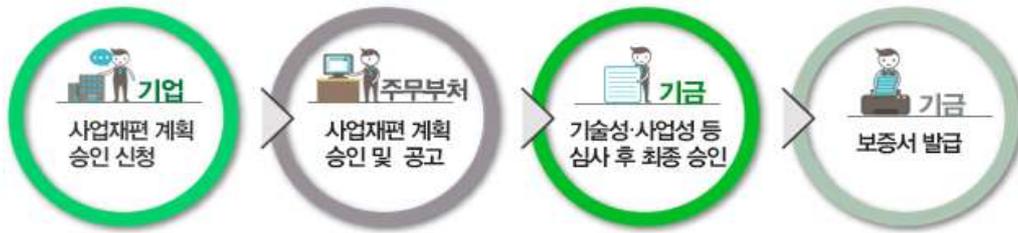
지원한도 : 최대 100억 원

- 운전자금 : 최대 30억 원
 - 지식재산(IP)인수자금은 30억 원 이내에서 최대 인수가액까지 지원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 0.2% 감면, 보증비율 : 90% 이상 적용

□ 지원절차



참고문헌

- 기술보증기금. 2015. 「연차보고서」.
- 기획재정부. 각 연도.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 김미복·박성재. 2014. 「농업구조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제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 김미복·황의식·임지은. 2014. 「농업정책금융과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R7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세움·이정희. 2015.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 김태규. 2013. 「보증기금사업 평가」. 통권 281호. 국회예산정책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6. 「업무해설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4. 「통계요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신용보증기금. 2015. 「연차보고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5. 「연차보고서」.
- 조태근. 2010.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운용배수 추정.” 「Journal of SME Finance」 319: 31-60.
- 중소기업연구원. 2009.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 황의식·임지은. 20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건변화와 발전방안」. R7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6차산업.com/portal/cont/companyCurrent.do).
-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 홈페이지(www.jaffic.go.jp).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